

최종보고서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22.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22년 5월 12일 ~ 2022년 12월 12일
- 참 여 연 구 원 :
 - 연 구 책 임 자: 심현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 여 연 구 원: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헌희 (경상국립대 일반대학원 교수)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 일반	 7
제1절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7
제2절 기술경찰의 연혁	42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현황	47
 제3장 기술경찰의 현황 분석	 54
제1절 정책환경 분석	54
제2절 기술경찰 설문조사	57
제3절 문제점	66
제4절 개선방안	71
 제4장 기술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	 72
제1절 기술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방안	72
제2절 기술보호 집행의 효율성 확보 방안	83
제3절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115
 제5장 심층분석 주제	 123
제1절 디지털포렌식 수사 강화 방안	123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137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산업스파이 처벌규정의 신설 검토	167
제4절 특허법상 간접침해의 형사처벌 규정 신설의 검토	18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디지털 대전환, 기술 패권경쟁의 심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지식재산의 선점이 필수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수출입 무역수지는 2021년 0.3억 달러 적자에서 2022년 상반기 3억7천 만 달러를 기록하여 흑자로 전환되었다.¹⁾ 우리나라의 2021년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건수는 총 59만 2,615건으로 2021년 대비하여 약 5.97%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꾸준히 양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술 및 지식재산의 보호 상황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디자인 등을 탈취하거나 모방하는 불공정 행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파괴하고 있다.²⁾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 또한 중국 등 후발업체들의 지속적인 영업비밀 유출을 시도함에 따라 기술 격차와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³⁾ 이와 같은 국내외의 핵심 기술의 유출, 영업비밀의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기술탈취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행정조사, 검찰과 경찰은 수사, 특허청은 행정조사 및 수사를 통해 기술탈취·침해 사건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즉, 기관별 소관법률에 따라 기술탈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행정적·사법적 제재 정도 등이 상이하고, 기술탈취·침해와 관련된 조사·수사·분쟁·심판 등의 소관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기술탈취 근절 관련 조사·수사 현황

구 분	담당 부처	업무	근거 법령
행정 조사	■ 공정위(기술유용감시팀)	■ 하도급 관계 기술유용행위 조사	■ 하도급법

1) 수출은 93억8천만달러, 수입은 90억1천만달러(한국은행, '22. 9월). 특히 산업재산권 수지가 특허 및 실용신안권(-12억4천만달러)을 중심으로 22억1천만달러 적자로 나타났고,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지난해 11억2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냄. 반면,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17억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7억5천만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

2) 2015년-2019년 중소기업 243곳이 기술유출·탈취로 316건, 4천346억원 피해('19년 중기부 실태조사)

3)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이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구속되고, 협력업체를 통해 OLED 용 3D 라미네이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의혹이 있는 등 기술 유출 사례 급증.

	■ 무역위(불공정무역조사과)	■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불공정무역조사법
	■ 중기부(기술보호과)	■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 조사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특허청(부정경쟁조사팀)	■ 아이디어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조사	■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 경찰청(산업기술보호수사팀)	■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수사	■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
	■ 검찰청(특허범죄조사부 등)		
	■ 특허청-특사경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 수사	■ 특허·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관세청-특사경 (조사총괄과)	■ 국경(세관) 단계의 특허·디자인 침해 수사	■ 사법경찰직무법, 관세법
	■ 지자체-특사경 (특별사법경찰과 등)	■ 상표침해 수사 (기술침해 수사 근거 없음)	■ 사법경찰직무법, 상표법 등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중기부·검찰·경찰 등은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직접적으로 기술 침해판단이 곤란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양한 기술 분야의 사건을 판단할 기술·법률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들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즉, 기관별로 모든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부 전문가는 장시간 해당 사건이나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가 곤란하여 일관된 판단기준을 유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검찰, 경찰, 공정위, 무역위 등은 특허청 소속의 전문인력⁴⁾의 파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소수 인력을 단발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계에서는 특허청이 중심이 된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사건의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⁵⁾

한편,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특허청 기술경찰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법을 제외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위반 사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4) 특허청 내 1200여명의 심사·심판관(박사 500여명, 법원·검찰 파견근무 경험자 100여명 포함)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법적 판단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보유 .

5) (범부처) 특허청을 중심으로 기술탈취·침해 관련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모색('1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19. 상생조정위원회) , (BH) 특허청 전문성 활용한 특사경 확대 필요 지적('18. 기술유출근절 TF), (국회) 특사경 기능강화 및 조직·인력확대 필요 지적('18.'19.'20.'22 국감 등), (국민) 특사경 조직 및 인력확충 필요('19. 국민참여 조직진단)

[표] 산업기술보호법 및 산업재산권법(상표법 제외) 관련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구분		사건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5	건	1087	1124	9	52	68	11.48	640	355
	명	2163	2370	15	118	99	9.79	1309	829
2016	건	1195	1208	6	44	62	9.27	719	377
	명	2421	2508	6	101	76	7.30	1474	851
2017	건	1117	1126	7	38	46	8.08	646	389
	명	2486	2440	7	89	61	6.43	1260	1023
2018	건	1100	1069	10	38	43	8.51	605	373
	명	2344	2385	15	102	63	7.55	1255	950
2019	건	1138	1133	5	40	30	6.62	715	343
	명	2324	2244	10	106	46	7.22	1265	817
2020	건	1319	1258	13	49	60	9.70	814	322
	명	2519	2347	14	110	78	8.61	1405	740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집행연차보고서

또한 국정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동안의 해외유출 사건 총 112건(국가핵심기술 36건)을 적발한 결과, 중소기업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표] 산업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7.	합계
반도체		2	2	1	3	8
전기전자		1	1	2		4
조선	2		2	1		5
디스플레이	3		1	2		6
정보통신			1	2		3
자동차		2	1	1		4
기계			1	1	1	3
기타						0
합계	5	5	9	10	4	33

(출처 : 정운천 의원실 보도자료, 국정원)

6) 기업규모별(大: 35건, 中: 68건, 기타: 9건), 분야별(반도체·디스플레이: 50건, 전기전자:14 등).

[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피해집단별 현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연구소	합계
건수	44	31	8	83

(출처 : 정운천 의원실 보도자료, 국정원)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 기술경찰⁷⁾은 출범 3년의 짧은 기간에도 2021년 기준으로 국가전체 기술디자인 범죄 중 14.9%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본 연구과제는 기술경찰 출범 이후 기술경찰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 조직을 운영하고, 기술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술경찰의 직무전문성 및 지식재산 형사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 검토는 2008년 “특허청 특사경 도입방안 연구”, 2018년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특사경 운영방안”의 연구과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술경찰 출범 이후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 직무범위, 업무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지식재산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기술경찰의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포럼 운영

본 연구과제는 기술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수사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였고, 조직·인식 분과, 규범 분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인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였다. 본 포럼에서의 논의사항은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통해 대내외에 선포되었다.

7) 본 연구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중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의 중장기 발전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디자인특사경의 직무범위는 특허, 디자인(부정경쟁방지법 자목 포함), 영업비밀임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 중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중 유명상표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 특사경 중 상표경찰과의 소관업무이며, 본 연구에서 상표에 관하여 언급되거나 기재된 부분은 상표경찰과의 업무임을 명확히 밝힌다.

□ **특별사법경찰 포럼 제1차 회의**

- **(주제)** 특허청 기술경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
- **(일시)** 2022년 8월 10일, 14:00 ~ 16:00
- **(장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9층)
- **(주요논의사항)**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업무상 배임, 특허권 침해 이외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에 대한 검토

□ **특별사법경찰 포럼 분과회의 제1차**

- **(의의)** 세부과제의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 및 심층과제에 대한 연구검토
- **(분과회의 일시)**
 - 규범분과 : 2022. 8. 26(금) 10:00-14:00
 - 조직·인식분과 : 2022. 8. 29(월) 10:00-14:00
- **(장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대회의실 및 서울역 KTX 회의실 등
- **(주요논의사항)**
 - (조직·인식분과) 논의 사항을 크게 특사경의 업무범위의 확대 등에 따른 조직 확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전문성 강화로 구분
 - (규범분과) 기술경찰 업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나, 그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실무상 비효율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

□ **특별사법경찰 포럼 분과회의 제2차**

- **(의의)** 세부과제의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 및 심층과제에 대한 연구검토
- **(분과회의 일시)**
 - 규범분과 : 2022. 9. 30(금) 10:00-14:00
 - 조직·인식분과 : 2022. 9. 26(월) 14:00-18:00
- **(장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대회의실 및 서울역 KTX 회의실 등
- **(주요논의사항)**
 - (조직·인식분과) 특허청에 접수되는 기술침해사건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수사범위 확대도 추진되고 있어 기술경찰 인력증원, 지역사무소 설치 검토
 - (규범분과) 업무상배임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할 필요

□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 (의의) 특허청 기술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일시) 2022. 12. 16.(금) 15:00-17:00
- (장소)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홍은동)
- (주요논의사항)

시 간	행사 내용(안)	비 고
15:00~15:05	개회사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15:05~15:15	기념촬영	촬영 후 장내정리
15:15~15:45	(세션1) 기술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발표자) 최재식 센터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토론자) 김윤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강구민 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사회: 강명수 교수 (부산대 로스쿨)
15:45~16:15	(세션2) 기술 보호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발표자) 김시열 팀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토론자) 박향철 검사(포항지청 부장검사) 최호진 교수(단국대 형사법) 이도선 교수(한남대 경찰학)	
16:15~16:25	Break time	
16:25~16:55	(세션3)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 (발표자) 심현주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토론자) 이현희 교수(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곽문준 경정(경찰청) 이원재 변리사(법무법인 울촌)	사회: 강명수 교수 (부산대 로스쿨)
16:55~17:00	폐 회	

2. 설문조사 및 심층 연구

먼저, 기술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기술경찰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과 국내 유관기관의 특사경 조직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현직 기술경찰을 대상으로 기술경찰의 조직·인력·업무 등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을 위하여 심층적인 학술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별도로 도출하였다. 디지털포렌식 수사 강화 방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부정경쟁방지법상 산업스

파이 처벌규정의 신설 검토, 특허법상 간접침해의 형사처벌 규정 신설의 검토이다.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 일반

제1절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1. 개관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경찰은 본래적 의미의 경찰로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이며, 사법경찰은 범죄수사, 범인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하는 작용을 의미한다.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복잡한 행정의 여러 분야를 성문법을 규율하기 어렵고, 일반 사법경찰이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해당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행정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을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⁹⁾

특별사법경찰이란 보건, 의료, 세무, 산림, 환경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범죄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이른바 전문경찰이라 할 수 있다.¹⁰⁾ 즉,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수사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제3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

8) 강필영, “특별사법경찰의 범죄수사 실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1호, 2018., 3면.

9) 양재열·김상수,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 연구 제58호, 2019, 63~64면.

10) 고현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국제법무 제7집 제1호, 2015.5.,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36면.

야 한다. 제6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는 형사소송법상 권한에 있어 일반사법경찰과 차이가 없으므로 피의자 조사, 압수, 수색, 영장, 신청 등 일반사법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¹²⁾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구분>¹³⁾

구 분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공통점	검사의 지휘·감독	반응	반응
	형사소송법 적용	반응	반응
차이점	직무범위의 제한	없음	반응
	수사관할의 제한	없음	반응
	분야별 예시	방법, 수사, 경비 등	환경, 산림, 철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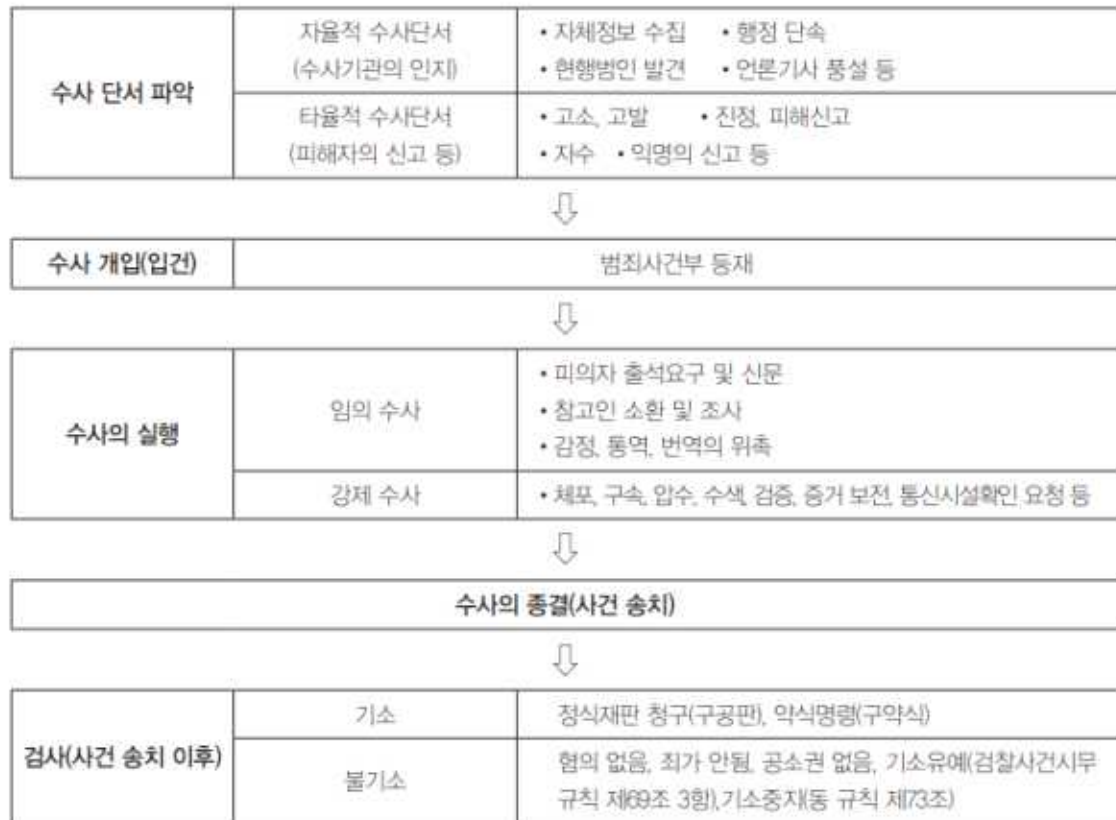
<특별사법경찰의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처리 과정>¹⁴⁾

1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조.

12) 김찬동·이세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3면.

13) 김찬동·이세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3면.

14) 신현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 방안”, 금융감독연구 제6권 제1호, 2019, 106면.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해 일정한 문제점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즉, ① 수사의 비전문성과 무관심인데, 대부분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전문적 지식의 결여, 업무의 연속성 결여 등으로 수사보다는 단속에 치중하고 있고 단속결과를 수사관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② 사법경찰을 빌미로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행정조사와 수사의 차이를 간과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③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④ 특별사법경찰의 숫자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즉, 관련 분야가 고도화, 지능화, 광역화, 전문화되는 현대사회에서의 범죄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기 힘든 개별행정법의 영역의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기본취지와 달라 질 수 있으며,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확대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 및 타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15) 고현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국제법무 제7집 제1호, 2015.5.,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원, 37면.

하겠다.

2.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

가. 근거규정

우리나라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은 1956년 1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이다. 해당 법률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첫째,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명을 요하지 않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이다. 이는 사법경찰직무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둘째는 관할지방검사장의 지명을 요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명단을 보고하는 공무원이다. 이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한 자로서 그 소속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 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 따른 사법경찰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

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¹⁶⁾ 이는 최근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다.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

16)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항.

· 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 4. 22.>
2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거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삭제 <2017. 12. 19.>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42의2. 「동물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

•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행정형벌의 근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목적의 명령이나 금지위반 등 행정목적의 직간접적 침해에 대한 제재로 집행벌과 달리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으며, 의무위반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야한다. 또한 의무불이행 객관적 요건 만으로도 과할 수 있는 집행벌과는 다릴 행정벌은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한다. 이처럼 행정형벌은 형법이 적용되며 벌칙은 형법에 규정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려 등 형소법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로 법원에 의해서 심리한다.¹⁷⁾

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¹⁸⁾

자치도 중 특사경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일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술특사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된 지역에서만 행정법규 위반 1만건 이상을 수사하여 생활 밀착형 민생침해사범을 1만명 이상을 입건 하였다. 구체적으로 식품, 보건, 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부동산 투기억제, 개발제한구역 보호, 세무, 병무 등 관련 행정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에 대한 수사가 주 업무였으며, 그 역할은 행정법규 위반사건 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사

17) 양재열·김상수,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활대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 연구 제 58호, 2019, 66면.

18) 이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에 관한 소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하였음을 밝힙니다.

건을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이다.¹⁹⁾



이와 같은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단은 그 영역을 일부 확대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며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공공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사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있어서였다. 즉, 출범 당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의약분야의 범죄를 단속하도록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 경찰관리를 지명받아 활동하다 청소년보호 사무를 추가로 지명 받으며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²⁰⁾ 2022년 11월 말 현재 17개 분야 73개 법률에 의한 업무를

19) 양재열·김상수,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 연구 제 58호, 2019, 64면.

담당하고 있다.

팀별주요업무 17개 분야, 73개 법률

팀 명	담당 업무 (16개 분야 72개 법률 수사)
수사정책팀	◆ 인사, 조직, 예산, 직무교육,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홍보, 제도개선, 사건송치 등
수사분석팀	◆ 디지털수사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수사정보포털시스템 등 운영
방문판매수사팀	◆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및 할부거래 분야 - 불법 다단계판매, 선물식 할부거래업(상조) 등 위반행위 수사
대부업수사팀	◆ 불법 대부업 분야 - 불법 대부업 분야 기획·인지 수사 등
환경보전수사팀	◆ 환경 분야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사, -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등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
상표수사팀	◆ 상표권 침해 분야 - 상표·상호 도용,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수사 등
부동산수사팀	◆ 부동산 분야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수사 등
식품안전수사팀	◆ 식품 원산지표시 분야 - 식품 제조·가공·유통과정 위반,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보건복지수사팀	◆ 공중위생 분야 - 위생업소 불법 행위 등 ◆ 사회복지법인(시설), 청소년보호 분야 -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외 사용 수사 등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유해 약물 판매 및 출입·고용금지 위반 ◆ 동물보호 분야 - 신체적 학대, 방임, 유기
의약수사팀	◆ 의약·화장품·의료·의료기기·정신건강시설 분야 - 불법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판매 사범 등 -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관련 개인정보 누설행위,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관련 수사 등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 업무수

20) 출범 당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1과 2팀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1과 6팀으로 확대개편,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장해오고 있다(양재열·김상수,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활동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 연구 제58호, 2019, 68 .)

행하며, 이러한 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 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소속 관서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수사(제6조)에 의한다.²¹⁾

민생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크게 민생경제, 보건건강, 환경보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생경제는 다시 사회복지, 부동산,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상표권 침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건건강은 동물보호, 의료법,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료기기, 의약분야, 화장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은 환경, 석유, 무등록 자동차정비,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보호 등으로 나누고 있다.

2) 직무범위

가) 민생경제

사회복지 수사란 사회복지 의무를 분담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지원되는 혜택을 사회복지 목적사업 외에 유용하여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수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²²⁾ 부동산 수사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분양권 불법 거래와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사를 의미하며, 관계법령으로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²³⁾ 대부업수사란 자영업자,

21) https://news.seoul.go.kr/safe/public_cop_intro

22)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임대·담보제공 하는 행위 (제23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제42조 제2항)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제6조 제1항),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목적 외 사용 (제28조 제2항),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자 (제34조 제2항),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 시 시설 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 불이행 (제38조 제3항),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등의 명령을 받고 불이행 (제40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 중 알게된 다른사람의 비밀 누설 (제47조),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질문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이다.

23)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64조 제1항), 청약통장 양도·양수 또는

대학생, 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 대부영업 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자 등을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법령으로는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다.²⁴⁾ 이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피해센터 등이다. 다단계·방문판매업 수사란 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영업을 하거나 구직자,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계약체결 전 정보 미제공 및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방해, 강제 합숙행위, 일방적인 재화 공급 및 대금청구 행위 등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행위 수사를 의미한다. 관련 법률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다.²⁵⁾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수사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영업을 하거나 가입 철회·해지 시 환급지연 및 지급 거부,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서비스 미이행 등 상조업체 불법 행위 수사를 의미하며, 관련법령으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²⁶⁾ 상표권침해 수사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 교부, 판매, 위조, 모조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표법(제108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제2조), 대외무역법(제33조)이 있다.²⁷⁾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제65조 제1항),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 (제65조 제1항) 등이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 (제9조) 등을, 공인중개사법 제4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 행위 (제7조, 제19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18조의2 제2항) 등을 규정한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체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행위(제9조 제1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24)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대부업법 제19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영업 (제3조, 제3조의2항 위반), 무등록 대부(중개) 불법 광고 (제9조의2항 위반)이며, 대부업법 제19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는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제8조, 제11조의2항 위반), 대출서류 해당 용도 외 사용 (제7조의3항 위반), 타인에게 명의 및 등록증 대여 (제5조의2항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 25) 주요 처벌 규정으로 제58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제13조 제1항 위반)을, 제58조 제1항 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4조 위반)를, 제6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는 방문판매업 무신고 또는 거짓 신고 (제5조 제1항 위반), 제62조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는 판매원 자격부여·유지 조건으로 금품 징수 또는 재화 구매 등, 초과 의무부담행위 (제11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 26)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제4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 (제18조 제1항 위반), 제4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34조 제17호 위반)을, 제50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는 선수금 미보전 영업 (제34조 제9호 위반), 제51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 (제34조 제11호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 27)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행위 제

(1) 보건 건강

동물보호 수사란 동물의 신체적 학대, 방임·유기, 성적학대 수사를 의미하며, 관련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있다.²⁸⁾ 의료법 수사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 수사, 의료인이 아닌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로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로는 의료법이다.²⁹⁾ 식품 수사란 식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등 수사를 말하고 관련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이 있다. 이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³⁰⁾ 원산지 표시위반이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

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제5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 28) 주요 처벌 규정으로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록대상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위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의 등록 위반(동물 생산업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영업의 허가 위반(동물 생산업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동물학대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이다.
- 29)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의료법 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 의료기관 불법개설(제33조 2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27조 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의료법 88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제22조 3항)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할 수 없음. 그리고 의료법 제89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진료거부행위(제15조 1항)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30)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94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관련법령으로는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
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다.³¹⁾ 공중위생분야 수사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
생관리업을 대상으로 무신고영업 및 무자격자 단속 및 불법행위 인지수사와
자치구 고발사건 조사, 송치를 의미하며, 관련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이다.³²⁾
의료기기 분야 수사란 의료기기 취급 및 판매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
기의 올바른 유통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수리·임대영업 및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수사를 말하며, 관련 법령으로는
의료기기법이 있다.³³⁾ 의약분야 수사란 주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등 의약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법령으로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³⁴⁾ 화장품분야 수사란 주요 화장품 소비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화장품 제조 및 판매금지 화장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위
해화장품 등 화장품법 위반사범 수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으로 화장품법이
있다.³⁵⁾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조 위반)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3조제1항제1호 위반), 식품위
생법 제9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
격 (제7조제4항 위반), 영업허가 등 (제37조제5항 위반)이며, 식품위생법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표시기준 (제10조제2항 위반), 영업허가 등 (제37조제4항 위반)이 있
다.

31)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의해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6조제1항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
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
9조제1항 위반)이다.

32)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무신고 영업(제3조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제3조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
른 무면허자 영업행위(제7조, 제8조 위반)이다.

33) 주요처벌 규정으로는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무신고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영업(제16조, 제17조 위반), 허위과대광고(제24조 위반),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제26조 제2항 위반)에 대해 처벌한다.

34)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 면허대여(제6조 위반), 무면허
자 약국 개설(제20조 위반), 무신고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 의약품수입업 영업(제31조, 제42조 위반),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제44조 위반), 허위과대광고(제61조 위반)이 있으며, 약사법 제94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부정의약품 제조·판매(제62조 위반), 약국개설자와 의
료기관개설자 담합행위(제24조 위반), 영업장소 외 의약품 판매(제50조 위반)이 있고, 약사법 제95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미이행(제20조 위반), 약사
법 제96조(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방전, 조제기록부 미보존(제28조 위반), 의약품 용기 등 기
재사항 미기재(제56조 위반)이 있다.

35) 주요 처벌규정으로는 화장품법 제3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따른 무
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제3조, 제16조 위반), 위해화장품 제조·판매(제15조 위반), 무등록, 변조 화장

(2) 환경보전

환경분야 수사란 산업활동, 건설공사, 각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미 하며, 관련 법령으로 폐수,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분야 법규이 있다.³⁶⁾ 석유사업법 위반 사범 수사란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 및 판매방법위반 불법행위 수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있다.³⁷⁾ 무등록 자동차 정비 수사란 관할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업을 함으로써 정비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서울시내 환경오염 및 부실정비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이다.³⁸⁾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을 한다.³⁹⁾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도록 한다.⁴⁰⁾

품 판매(제16조 위반)이 있으며, 화장품법 제37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제13조 위반), 표시위반 및 샘플 화장품 판매(제16조 위반)이 있다.

36) 주요처벌규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위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 위반(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주요 처벌 규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 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품질부적합 제품판매 (제27조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정량미달 판매, 등유 등 자동차연료 판매행위 금지위반 (제39조 제1항 위반)이 있다.

38) 주요 처벌규정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비업을 한자(제53조 제1항)를 처벌한다.

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상습적으로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한 제3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제29조제1항)), 제5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제29조제2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제29조제5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설치·부착·배포행위(제19조제1항))

(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활동 성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그 직무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나) 민생경제

(1)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부동산 불법수사의 중점은 ① 브로커를 통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거래,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③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이에 따른 주요실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한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 적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수수료 나눠먹기식’ 불법영업 적발,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알선자 적발, 위장전입을 통해 서울지역 아파트에 부정하게 당첨된 자 적발이다. 최근 2년 동안의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일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부동산	40	46	0	0	0	0	40	46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일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부동산	27	27	9	9	0	0	18	18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가) 사회복지사업 위반행위 수사

사회복지사업 위반행위 수사의 중점은 ①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②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외 사용, ③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용도변경 및 보조금 목적외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법인 목적사업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기관 자료제출 요구 거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등 보

조금 사적용도 사용에 관한 실적이 있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승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사회복지	10	16	0	0	0	0	10	16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승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사회복지	3	4	0	0	0	0	3	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나)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행위 수사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행위 수사의 중점은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수사 강화, ② 위조상품 유통경로 차단 위주 수사 강화 및 관계 기관 합동수사 확대, ③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확대이다. 이를 통해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판매업자 기획수사, 상표법 위반행위 근절 위해 유관기관(특허청 · 경찰청 · 중구)과 합동수사, 불법 라벨같이 근절 위해 유관기관(종로구 · 중구 · 성북구)과 야간 합동수사, SNS통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상표법 위반 기획수사와 같은 실적을 남겼다. 최근 2년간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승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94	94	0	0	0	0	94	9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승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95	95	3	3	11	11	81	81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다) 다단계·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불법 영업행위 수사

다단계·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불법 영업행위 수사의 주요 실적으로는 유사다단계조직 이용금전거래행위 수사,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수사,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미등록다단계판매원 실질적인 판매활동 수사,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수사 등이다. 해당 수사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방문판매	16	30	1	2	2	3	12	23	1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방문판매	9	21	4	9	0	0	4	10	1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수사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수사의 중점은 ①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선이자 현금수취, 취약계층 대상 법정 최고이자율(24.0%) 초과 고금리 수취 등 불법 대부업, ② 불법대부 광고행위 원천차단 활동 지속적 전개, ③ 유관기관, 부서와 정보교류 등 긴밀한 수사 협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이에 따른 주요실적은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고금리 이자편취 등) 수사, 미등록 불법 대부영업 및 광고행위자 수사에 따른 미등록 대부영업 및 고금리 이자편취 및 불법 대부광고이다. 최근 2년간 수사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대부업	15	32	1	1	4	4	10	27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대부업	7	8	4	4	1	1	2	3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2) 보건건강

가) 의약분야(의약·화장품·의료기기·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위법행위 수사

의약분야(의약·화장품·의료기기·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위법행위 수사의 중점은 ① 부정·불량 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② 떼다방 등 노인, 부녀자 상대 엉터리 의료기기 유통·판매사범 수사, ③ 불법 의료행위, 정신시설 금지 행위 수사 등이다. 주요 실적으로는 약사법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 행위 수사 및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위반사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 수사가 있다. 최근 2년간 수사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의약	20	24	9	13	0	0	11	11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9	11	0	0	0	0	9	11	0
의료기기	5	5	0	0	0	0	5	5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의약	18	19	9	9	1	1	8	9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6	13	4	11	0	0	2	2	0
의료기기	7	8	0	0	0	0	7	8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나) 보건분야(공중위생) 위법행위 수사

보건분야(공중위생) 위법행위 수사의 중점은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있으며 주요 실적은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기획수사에 있다. 최근 2년간 주요 수사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공중위생	39	40	0	0	0	0	39	40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공중위생	32	34	9	9	1	1	22	2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다) 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불법행위 수사

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불법행위 수사의 중점은 ① 인체 유해식품 제조·유

통사범 수사, ②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관례적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수사, ③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수사 등이며, 주요 수사실적은 건강기능식품 불법유통행위 수사, 유해성분 함유 수입 제품 수사, 축산물관련 수사 등이다. 최근 2년간 주요 수사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식품위생	242	249	5	5	2	2	235	242	0
원산지표시	31	33	0	0	0	0	31	33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식품위생	181	184	11	13	7	7	160	161	3
원산지표시	20	20	1	1	2	2	17	17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3) 환경보전

가) 청소년 유해환경(매체·약물·업소) 수사

청소년 유해환경(매체·약물·업소) 수사의 중점은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사, ② 청소년 유해 약물(담배·주류 등) 단속, ③ 선정성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통화차단(“대포킬러”)으로 불법영업 원천 차단 등이며, 주요 수사실적으로는 차량 및 이륜자동차량을 이용한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수사,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청소년대상 담배불법판매 합동단속 등이다. 최근 2년간 주요 수사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021년까지의 자료만 공개).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청소년	2	2	0	0	0	0	2	2	0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청소년	1	1	0	0	0	0	1	1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나) 개발제한보호구역 훼손 수사

개발제한보호구역 훼손 수사의 중점은 ① 지형 및 건물 형태 변화 분석을 통한 과학적 수사, ② 유관부서 및 자치구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한 위법행위 수사, ③ 시정명령 불이행, 민원 야기 등 고질적 위법행위 수사 등이며, 주요 수사실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의 수사(자연환경 신규 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 등, 신규 훼손행위 및 고질적인 시정명령 불이행 불법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이다. 최근 2년간 주요 수사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개발제한구역	28	29	5	5	0	0	23	2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종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개발제한구역	6	6	1	1	0	0	5	5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다) 환경분야(대기·수질·석유·자동차) 위법행위 수사

환경분야(대기·수질·석유·자동차) 위법행위 수사의 중점은 ① 환경오염물질

위반사범에 대한 테마별 선제적 기획수사, ② 민생침해형 환경사범에 대한 지속적으 강력수사, ③ 가짜석유제품, 무등록 불법정비 등 집중 수사 등이며, 주요 수사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 무허가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 수사,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 수사, 먹는 샘물 정보 거짓표시 불법유통 수사 등이다. 최근 2년간 주요 수사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환경	156	210	4	5	0	0	150	204	1
석유	4	4	0	0	0	0	4	4	0
자동차	6	6	0	0	0	0	6	6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22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환경	110	142	9	11	4	6	97	125	0
석유	3	4	1	1	0	0	2	3	0
자동차	19	19	2	2	1	1	16	16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참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2년 11월 30일 방문)

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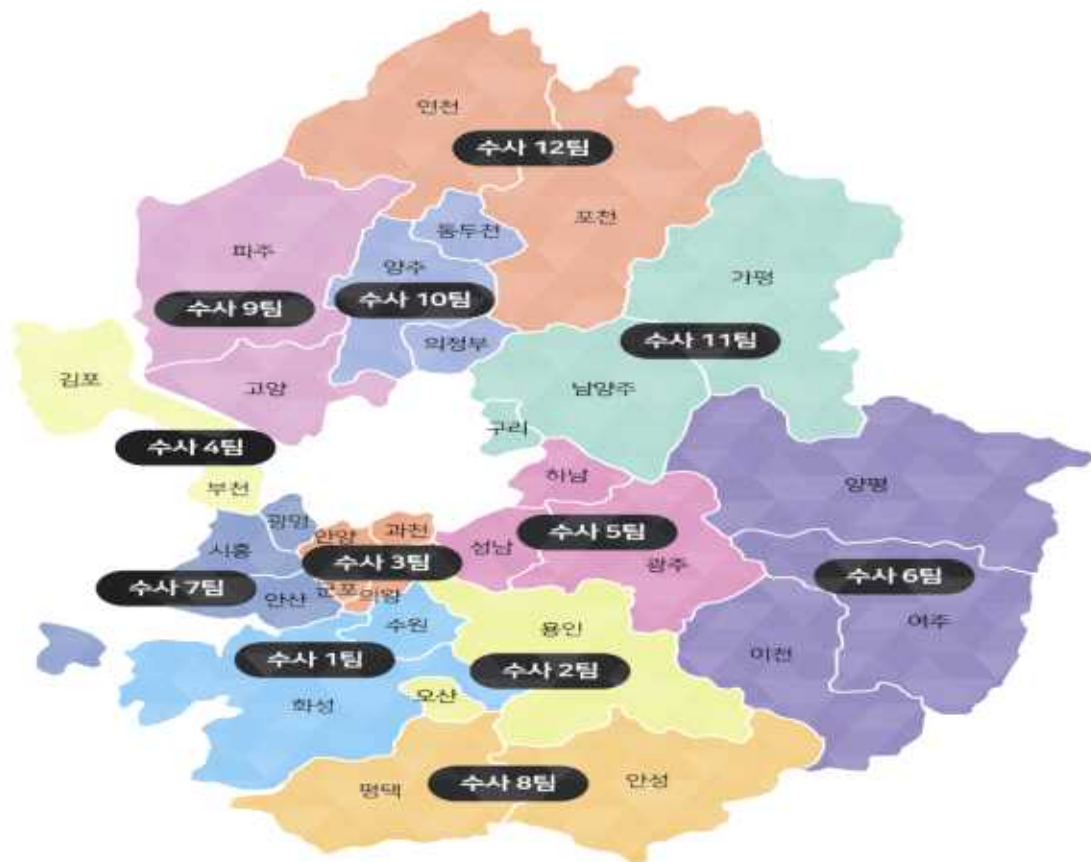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09년 3월 트젝르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1단, 3담당 22명)하여 2009년 4월 법률자문검사 파견, 광역특별사법경찰 시군지원팀 구성,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지명 및 인원제청 등을 통해 동년 7월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2010년 11월 과명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변경하고 2012년에서 2013년을 거치며 조직을 증원하였다. 2014년 조직소속을 북부청 안전행정실에서 본청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2020년에 이르기까지 과 및 조직의 증원, 부서명칭을 변경(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0년 3월 수사팀을 8팀에서 14팀으로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겪어 왔다.⁴¹⁾

41) https://www.gg.go.kr/gg_special_cop/contents/contents.do?cidx=1199&menuId=336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22.12.3. 방문)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22.12.3. 방문)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22.12.3. 방문))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
1	 식품	•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단속 • 미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등
2	 의약	• 사무집행권 등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 • 의/약사면허 불법 대여 행위 단속 •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단속 등
3	 공중위생	• 공중위생업소 불법의료행위 단속 • 무신고 피부 미용업소 단속 등
4	 환경	• 유독물질 사용업소 및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실태 단속 • 미산면적 열병사업장 등 대가오염 단속 등
5	 편산지표시	• 쇠고기 등 광면응식점 편산지 표시제 단속 • 농수축산물 편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6	 농약(비료)	• 불법 농약(비료)제조수입판매행위
7	 종자관리	• 종자(묘)거짓(미)표지 • 식물보호제품 허위광고·거래
8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무허가, 불법용도 변경 등) ※ 예) 온실 또는 축사로 허가 받은 후 공장 또는 불합격교로 사용
9	 하천	• 하천 안 불법천용 및 금지행위(훼손 등)
10	 관류	• 미등록 어영장 경영행위 • 미신고 유원시설 경영한 자
11	 동물보호	• 동물학대 행위(생산·도살) • 무단목 연접
12	 해양	• 무허가·공유수면 정물·사물 행위 • 무허가 어항개발사업 시행행위 •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13	 소방	• 위험물,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수사
14	 수산	• 무허가·미등록 수산업 경영행위 • 관할 수역 내 무허가 어업행위 • 내수면 내 무허가 무면허 어업행위 등
15	 안전	• 재난대비 긴급안전점검 위반행위 등 • 시설물 안전점검 위반행위
16	 가축방역	• 살처분 명령 미이행 •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받지 않는 행위
17	 산림보호	• 무허가 선지전용·도식채취 행위 • 채종업 시험업에서 수형목 참위행위 •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유통행위 등
18	공원관리	•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공원 훼손행위 • 미인가 도시공원·공원시설 설치행위 • 도시공원 녹지 내 무허가 건축행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22.12.3. 방문)

	작무분야	주요 위법행위
1	 경제	• 불법 대부업 - 미등록 대부업 - 어사불제한 위반 • 불법 방문판매(다단계) - 무등록 다단계방문판매 조직운영 - 다단계방문판매사업의 금지업무 위반 등 • 부정경쟁행위 방지 - 원주심록 재조판매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 대외무역 위반행위 방지 - 수입물품 안전성 표시 위반
2	 복지	• 사회복지법만 관리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미신고 시설운영
3	 부동산	•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수사 업무 - 불법 중개거래행위 - 형의 부정당첨 등
4	 운수사업 (여객·화물차)	•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무면허 운수사업 - 불법유선대여 행위 등
5	 청소년보호	•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 • 청소년유해업소 고발위반 등
6	 부정경쟁	• 타인의 상호·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시키는 행위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7	 방문판매	•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행위
8	 할부거래	• 미등록 전불식 할부거래업 행위
9	 대외무역	• 수출입 물품 편산지 미표시 행위
10	 문화재	• 문화재보호 - 문화재보호 형상변경 - 문화재 관리행위 방해 및 공개제한 위반 • 매장문화재보호 - 지정문화재 및 가(임)사지정문화재 도굴(발굴)행위
11	 과적도로	• 과적운행단속, 도로시설을 훼손 행위
12	 저작권	•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
13	 계량기	• 변조된 계량기 영도 및 대여 행위 • 미등록 계량기 제조 및 수리 행위
14	 석유대체	• 가짜석유제품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15	 자동차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정차량 •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무단 방치행위 등

주요 수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²⁾

민특별사법경찰단	
분야	중점 단속내용
식품위생 분야	• 식품제조·가공업소 : 미신고 영업, 인체 유해하거나 부적정한 원료 사용, 유통기한 허위표시, 원료 및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 시설 불량 등 • 음식점 : 미신고 영업, 조리기구, 시설 등 위생관리, 불량원료 사용, 음용수 적정여부 등 • 집단급식소 : 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조리, 지하수 적정 여부, 식기, 찬기 등 주방용기 적정 살균·소독 • 유통식품 판매업소 : 무허가, 무표시 제품 유통·판매, 유통기한 위반조,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냉동냉장 식품 적정관리
원산지표지 분야	• 농·축·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학교, 노인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설·추석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김장용 재료(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기타 육류·어류·쌀 식재료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환경 분야	• 대기환경분야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사설 미가동,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 • 수질환경분야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무단방류, 상수원 보호구역·공공수역 유류유출, 가축분뇨 불법처리 등 • 폐기물관리분야 : 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 폐유기용제, 음식물폐기물 침출수 등 불법배출·매립,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등 • 자연환경분야 : 수렵허가 이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 기타환경분야 : 주거지역 등 생활환경 주변 오염물질 배출원 단속 등
공중위생 분야	• 무신고 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영업행위

4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22년 12월 3일 방문)

	• 대형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의 욕수 수질기준 및 목욕장 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 피부관리실 등 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사용 및 유사의료행위 • 이·미용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 업소명, 면적, 소재지 불법변경 또는 무신고 영업행위 • 기타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위반여부
의약 분야	• 약사면허 대여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도매업 행위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미준수 행위 • 기타 의약품 분업예외지역 약국(약사)의 불법 조제·판매·행위 등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분야	중점 단속내용
경제수사 분야	• 대부업 : 무등록영업, 법정 이자율 (연 24%) 제한 위반, 불법광고 등 • 부정경쟁행위 : 타인의 상표·상호 등 표시의 침해 • 상표 :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 수사 • 대외무역 : 수입품 중 원산지표시대상품품(농·수산물, 의류, 가방 등) 표시위반 • 특수거래업(방문판매,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조직적·상습적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복지수사 분야	• 사회복지법인(시설) 무허가 기본재산 변경 :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절차 미이행, 장기차입금 차입 허가 절차 미이행, 기본재산(현금) 운영의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및 회계 관리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수익사업의 수익을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
부동산수사 분야	• 공인중개업무허가 기본재산 변경 :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업등록증 양도·양수행위,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행위, 토지거래 허가취소 또는 조치명령 미이행 행위, 특정지역에서의 외국인 무허가 토지취득행위 • 불법전매, 부정청약: 전매제한 기한 내 불법 전매행위, 청약통장 등 청약자격 양도·양수·알선행위, 청약자격을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과학수사 분야	• 디지털 포렌식 : 컴퓨터·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확보 및 분석 •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스템 광고전화 발신 차단 시스템 운용: 청소년 유해번호, 불법 대부업 등 불법광고 전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근절
청소년, 여객·화물 등 수사 분야	•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판, 전단지) 광고 및 배포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행위 •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불법 운수면허 취득 · 사업등록 행위: 자가용 자동차의 운송업 사용행위, 자동차 관리사업자와의 금품비리 등 •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 형상변경: 문화재관리행위 방해 및 공개제한 위반, 매장문화재보호, 지정문화재·가(임시)지정문화재 발굴행위

4)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수사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식품위생분야의 경우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추석명절 성수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수사,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수사, 제과(빵)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수사등이 있으며, 원산지 표시분야에는 배달음식 점문점 불법행위 수사, 제주산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행위 수사,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수사, 산업폐수 등 불법 배출행위 수사,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수사,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 등이 있다. 공중위생 분야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의약 분야는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 등이 있다. 기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 동물보호 수사 등도 업무영역에 속한다.⁴³⁾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경제수사 분야의 주요사례로는 위조상품 판매·유통 수사, 대부업 수사,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피해 신고 제보 등이 있으며, 복지수사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시설 범죄행위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수사

4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22년 12월 3일 방문)

분야에서는 부동산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기획수사가 대표적이며,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및 센터 구축·운영,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⁴⁴⁾



청소년, 여객·화물 등 수사 분야의 경우 청소년 수사 홍보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⁴⁵⁾

5)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나. 제주시 자치경찰제

위 살펴본 서울의 민생사법경찰제도와 달리 제주도의 경우 독특한 이원적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각 경찰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하 제주도경찰청)과 자치경찰조직으로서의 제주자치경찰단이 공존하는 이원적 자치경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독특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20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4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22년 12월 3일 방문)

4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22년 12월 3일 방문)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존폐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제주 특별자치도의 반발과 존재이유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인해 제주자치경찰제를 유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이 존속하게 되어 경찰법상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 담당경찰관과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를 모두 지휘 및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에 의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과 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단에 의한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남아 있다.⁴⁶⁾

다. 국내 주요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저작권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불법복제물 등 수거·폐기·삭제활동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등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① 오프라인 상 음악, 영상, 출판, 캐릭터, 게임 등 장르별 전국 주요거점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②,생계형 노점 등 대상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계도 및 홍보자료 배포, ③ 대규모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활동 및 현장단속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지원이다.⁴⁷⁾

<전국 권역별 단속 체계도>⁴⁸⁾

46) 이상훈·남재성,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에서의 합리적 사무 배분 및 재조정 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2022, 183-184면.

47)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22년 12월 5일 방문)(<https://www.kcopa.or.kr/eng/lay1/S1T10C225/contents.do?lnbCd=2>)

48)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22년 12월 5일 방문)(<https://www.kcopa.or.kr/eng/lay1/S1T10C225/contents.do?lnbCd=2>)



2)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4호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재권·외환·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세관이 위치한 관할 검찰청 지검장에게 주기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면서 특사경 인원을 지정받고 있다. 이에 2020년 8월 기준으로 인천 156명, 서울 132명, 부산 108명, 대구 22명, 광주 35명, 평택 9명이 근무 중이다.⁴⁹⁾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 현황>⁵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합계	426명	430명	429명	458명	462명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은 1명당 적발하는 불법부정무역 금액은 146억에 달하며, 1명당 적발 건수는 2016년 8.32건에서 2019년 12.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적발된 불법부정무역 유형은 외환사범, 관세사범, 지재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등 다양하다.⁵¹⁾

49) 한국세정신문(22년 12월 5일 방문)(<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6746>)

50) 한국세정신문(22년 12월 5일 방문)(<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6746>)

51) 한국세정신문(22년 12월 5일 방문)(<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6746>)

3) 소방특별사법 경찰제도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사범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 2020년 2월 4일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없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화재 사건 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⁵²⁾ 그리고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 일반 소방관과 같은 채용시험을 통해 입적한 후 지명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부서이동이 잦아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2년 미만의 수사경력을 갖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한 현재의 직무교육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⁵³⁾

<일반사법경찰과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구분>⁵⁴⁾

구 분		일반사법경찰	소방특별사법경찰
공통점	형사소송법 적용	인정	인정
차이점	직무범위의 제한	원칙없음, 예외인정	있음
	검사의 수사 지휘권	없음	있음
	수사관할의 제한	없음	있음
	적용분야	방법, 경비 외 형사사건 전 분야	환경, 산림, 철도, 식품·근로감독 등 특수분야
	근 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소속	경찰청 소속	소방청 소속

<소방특별사법경찰 근무기간>⁵⁵⁾

52) 한아름, “소방특별사법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2020, 239면.

53) 송영대·조호대·김동준, “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 173면.

54) 한아름, “소방특별사법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2020, 242면.

55) 송영대·조호대·김동준, “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 178면.

구분	소방본부	소방서	총원
1년 이하	65	1331	1,396
1년~2년	40	558	598
2년~3년	15	199	214
3년~4년	9	58	67
4년 이상	3	47	50

<소방사범 사건 처리현황>⁵⁶⁾

구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소방 시설법	위험물안전 관리법	119구조· 구급법	총계
경기도북부	28	32	148	95	2	111
대전광역시	-	1	11	3	4	19
충청남도	6	13	39	43	2	103
전라북도	19 ⁵⁾	3	18	29	-	51
전라남도	3	-	10	11	-	24

4)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

문화재 도굴 및 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문화재청 조직 내에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청 특사경은 1972년 2월 1일 특사경 수사 전담 조직의 설치된 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특사경 관할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이다. 이들은 문화재 사범을 단속하는 일과 압수된 문화재의 감정, 평가, 국가귀속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문화재사범 단속 활동비로 사용하고, 도난된 문화재 관련 도록을 발간, 문화재 사범 단속 관련 업무의 협의와 도난 및 도굴 문화재 범죄를 단속하는 업무로 하고 있다.⁵⁷⁾

<문화재청 사범단속 인력 현황>⁵⁸⁾

56) 송영대·조호대·김동준, “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 178면.

57) 우외석·이상욱·김승남·김종복,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Journal of the Society of Cultur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Vol.4 No.1, 2019, 23면.

58) 뉴스클레임(22년 12월 5일 방문)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555>)

	문화재청	특허청	병무청	관세청	산림청
전체 예산	1,141,579	639,308	244,368	596,201	2,528,186
사범단속 예산	45	808	178	4,785	532
사범단속 인력	4	24	38	458	1,528
비중	0.00394%	0.13%	0.073%	0.79%	0.02%

제2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연혁

1. 개관

일반사법경찰은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기술 등 특수 분야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 노동, 기술 등 전문분야나, 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⁵⁹⁾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사분야에 있어서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등에게 직접 수사를 수행하게 하여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사법경찰의 장점이다.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기술탈취 조사·수사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 8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9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였고, 위조상품 단속 등 상표 침해범죄 수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2017년 7월에는 상품형태 모방행위 조사·시정권고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2018년 7월에는 아이디어 탈취 등 조사·시정권고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행정조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2019년 3월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2018.2),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2019.1) 등 범부처 대책에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영역의 확대가 핵심과제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의2호 및 제6조제35의2호가 신설되어 특허청 특사경 직무에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범죄 수사가 추가됨에 따라 2019년 4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였다.

59) 형사소송법(§245의10)과 사법경찰직무법(§5, §6)에 수사관 지명 및 수사범위 명시.

2. 직무범위의 확대

가. 2010년 상표특사경 도입

현행법 체계에서, 사법경찰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써,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며, 1956년 이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⁶⁰⁾

이와 관련하여 상표특사경은 2010. 5.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함)」 개정에서 도입되었다. 당시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 등 침해행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범죄와 도시공원 관리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이미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법무부·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직무근거법령 및 직무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을 개정이유로 하여, 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개정이유에 따라 상표특사경의 경우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 등 침해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법 제5조제38호⁶¹⁾ 및 제6조제35

60)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9., 5-6면.

61)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

호⁶²⁾ 신설).

나. 2018년 직무범위의 확대

2010년에 처음 도입된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2018. 12. 18. 개정법⁶³⁾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확대하였는데, 먼저 동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간주되면서 그 해결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유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그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해야 할 상황임.

현행법은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특허침해, 영업비밀 사용·유출, 상품형태 모방 및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만, 중소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기술과 디자인 등 특수 분야의 전문성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추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 사무를 할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허법」상의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

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2)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63) 시행 2019. 3. 19.

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⁶⁴⁾

이러한 개정취지에 따라 제5조 제38호의²⁶⁵⁾ 및 제6조 제35호의²⁶⁶⁾를 각각 신설하였는데, 2010년에 상표특사경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상표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인데 반해, 2018년 개정에서는 기술전문성이 필요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분야에서 효율적인 단속 업무를 위해 특허청 소속 국가공무원을 특정하여 사법경찰권을 인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전담조직 출범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하여 행정조사와 침해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출범하였다.

[표] 전담조직의 조사 및 수사범위

구분	구분	조사·수사범위
행정조사	부정경쟁행위	(부경법) 제2조제1호(아목·카목 제외)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침해수사	특허	(특허법)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부경법) 상품형태 모방행위(제2조제1호자목)
	상표	(상표법)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 (부경법) 상품주체 혼동행위(제2조제1호가목)
	영업비밀	(부경법) 영업비밀 침해

4. 기술경찰의 성과

6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814&ancYd=20181218&ancNo=15976&efYd=201903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65)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6)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기술경찰 출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2021년 기준으로 특허법 위반사건 30.4%, 디자인보호법 위반사건 14.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9.3%로 국가 전체 기술디자인 특별법 범죄 중 14.9%를 기술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표] 특허청 기술경찰 업무비율

구 분	전체 범죄 건수/인원 (‘16년~’20년 5년 평균)	특허청 기술경찰	
		건수/인원(‘21 기준)	비율
특허법	217건/351명	66건/169명	30.4%(66/217) / 48.1%(169/351)
디자인법	280건/377명	40건/71명	14.3%(40/280) / 18.8%(71/377)
부경법 (영업비밀 등)	580건/1,077명	54건/125명	9.3%(54/580) / 11.6%(125/1,077)
합계	1,077건/1,805명	160건/365명	14.9%(160/1,077) / 20.2%(365/1,805)

※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또한 기술경찰의 정확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기술경찰 기소의견 송치율 (16.5%, '21년 누적 기준)은 기술침해 전체 형사기소율의 약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⁷⁾

67) 2020년 특허, 영업비밀 등 기술침해 형사사건 기소율 8.1%(2021년 검찰연감).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현황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가. 독일

독일은 일반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작용을 담당하는 것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정의하였을 경우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개별 법률의 규정을 통해 일반 행정공무원에게도 경찰작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나. 일본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이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청 및 도도부현의 경찰관을 통칭해서 일반사법경찰직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반사법경찰직원은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현행범인의 체포를 제외한 직무집행은 관할권에서만 할 수 있다. 반면 산림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특정 행정청의 직원 등을 통칭해서 특별사법경찰직원이라고 하며,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수사권은 특별한 사항에 국한되어 수사권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일반사법경찰직원과 달리 규정된 경우도 있는데, 가령 우정감찰관의 경우 우정업무에 관한 범죄에 관해 일반사법경찰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일반사법경찰직원과는 달리 피의자를 직접 체포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⁶⁹⁾

일본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① 육해공 자위대 경무관(일본자위대법) : 수사 및 체포권한 있으며 권총 등 무기 소지권한 존재, ② 해상보안관(일본 해상보안청법) : 수사 및 체포권한 있으며 권총 등 무기 휴대권한, ③ 마약단속관·마약단속관리(일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단속법) : 수사 및 체포권한 있으며, 권총 등 무기휴대권한 인정, ④ 노동기준감독관(일본 근로기준법) : 수사권 및 체포권한만 인정되며 무기에 관한 권한 없음, ⑤ 항공호위관(일본 경찰법) : 수사 및

68) 고현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국제법무 제7집 제1호, 2015.5.,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48~49면.

69) 김찬동·이세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6~7면.

체포권한이 있으며 권총 등 무기휴대권한 존재, ⑥ 선원노무관(일본 선원법, 선원재해방지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사 및 체포권한 인정, ⑦ 어업감독관 및 어업감독관리(일본 어업법): 수사 및 체포권한만 인정, ⑧ 광산감독관(일본 광산보안법): 수사 및 체포권한만 인정, ⑨ 조류 및 동물보호 또는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단속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일본 조류·동물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수사 및 체포권한 인정, ⑩ 교도소장 및 교도관(일본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사 및 체포권한이 있으며 권총 등 무기휴대권한 존재, ⑪ 산림관리국 관리소 농림수산사무관 및 농림수산 서기관(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지정에 관한 건): 수사 및 체포권한 인정, ⑫ 선장, 기관장, 통신장, 사무장(원양구역, 근해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 및 해당 선박의 갑판부, 기관부 및 사무부의 선원 중 그 각부에 있어서 상급자(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지정에 관한 건): 수사 및 체포권한만 인정, ⑬ 국세청 감찰관(일본 대장성 설치법): 수사 및 체포권한만 인정된다.⁷⁰⁾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직원제도는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이외에 사법경찰직원 지정응급조치법과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지정에 관한 건에 따라 지정된다. 일본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국가기관 및 시설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우정감찰관과 철도공안직원 및 일본국유철도직원(역장, 기관장 및 기차장)에게 인정되었던 특별사법경찰은 폐지되었고, 철도공안지구언의 관할 및 임무의 경우에는 일반사법경찰에 이관되어 각 지방경찰서 산하의 철도경찰대로서 활동 중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⁷¹⁾

다. 프랑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독립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법경찰의 범위에 ① 사법경찰, ② 사법경찰관리 및 보조사법경찰리, ③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분야의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 및 직원으로 규정하고,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자를 ① 산림기사,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

70) 승재현·전현욱,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5, 67~69면.

71) 승재현·전현욱,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5, 67~69면; <https://ja.wikipedia.org/wiki/%E7%89%B9%E5%88%A5%E5%8F%B8%E6%B3%95%E8%AD%A6%E5%AF%9F%E8%81%B7%E5%93%A1..>

기술직원과 전원감시원,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③ 선서를 한 특별감시원 등을 꼽고 있다.⁷²⁾ 프랑스의 특별사법경찰은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와는 달리 강제처분권한을 지니지 못한다. 다만, 조서작성 및 그 조서를 검찰에 송부하는 것만으로 그 임무를 끝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인지하여 수사하고 있는 경우 사법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데에 반해, 프랑스의 사법경찰은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활동영역 내에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⁷³⁾

라. 미국

미국에서는 경찰관 이외에도 보다 넓은 의미에서 법집행기관의 소송공무원이 수사권 등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개념과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⁴⁾

즉, 연방수사국, 관세국, 이민귀화국, 국세청, 연방교도국, 비밀정보국, 법원사무국, 연방보안관실, 국립공원관리국 등의 법집행공무원들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영국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따로 없고 관련된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중조직범죄 및 경찰에 관한 법률 제2005 등에서 철도경찰, 민간 핵 경찰, 헌병을 특수경찰로 유형화하고 해당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경찰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중 철도경찰과 민간 핵 경찰이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과 유사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⁷⁵⁾

바. 중국

중국은 업계에 영향이 큰 중대 특허사건에 대하여 행정부내 국가지식산업국 소속 공무원이 현장증거조사, 당사자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인 조사관은 특허권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72) 김찬동·이세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6면.

73)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 법문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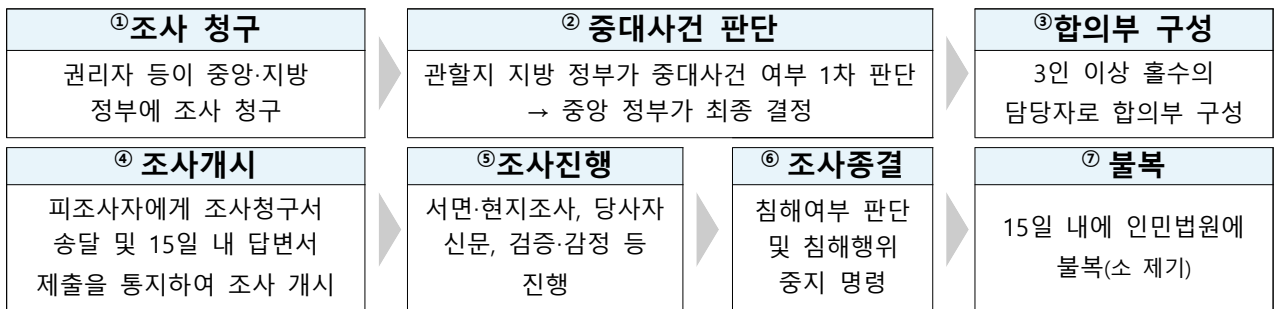
74) 김찬동·이세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4면.

75) 김찬동·이세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5면.

이와 같은 중국 행정결정은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다.

- (제70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 ② 지방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 지역 경계를 넘어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표] 중대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절차



2. 지식재산 범죄 대응 정책

가. 미국

미국은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중장기 계획인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⁷⁶⁾은 국가 혁신경제를 촉진·보호·우선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혁신과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3년마다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을 발표한다.

동 계획은 미국 정부가 향후 3년간 건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76) IPEC(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은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Pro-IP Act)’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IPEC은 지식재산집행 및 정책적 선결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산업계, 교육기관, 무역기구, 공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함.

전략	주요내용
무역상대국과의 협력	무역을 통한 IP 보호 및 집행강화, 정부의 역량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IP 보호 강화, 위조상품·불법복제품 방지, 해외에서 지식재산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법률 당국의 효과적인 활용	영업비밀, 특허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위조상품 등의 단속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미·중 1단계 합의의 이행 감시, 다른 국가와 무역 투명성 단위(TTU) 합의, 온라인 세이프하버 조항 검토
법 집행조치 및 협력 확대	영업비밀 탈취 방지를 위한 국가 사이버전략 수립, 국내외 법 집행을 통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국내 및 국제법 집행을 통한 위조상품 등 밀거래 방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집행 협력 증대 등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파트너십	전자상거래에서의 위조상품과 불법복제품 근절, 민간 부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 신기술을 통한 위조상품 단속, 소비자 인식 및 비즈니스 교육 활동의 지속적 개선 등

나. 영국

영국은 지식재산 범죄 및 침해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IP 침해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5개년 전략으로서 ‘IP 침해 방지 전략’을 통해 UKIPO가 추진하는 IP 권리 보호의 단계적 변화를 담고 있다.⁷⁷⁾

구체적으로 정부가 향후 IP 침해에 대해 더 나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조를 설정하고, IP 집행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명성을 구축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국내외에서 IP 침해가 전략적인 경제적·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되도록 제고하면서 집행기관, 정부 및 업계가 어떻게 협력하여 현재의 구조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동 전략의 5대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IP 침해와 관련된 정보의 개발 및 분석을 위한 국가 센터를 설립하여 IP 집행 활동의 핵심에 두고 지식재산 범죄 및 침해와의 싸움에서 중앙 주도 및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함
- ② 무역 표준(Trading Standards), 국경청(Border Force), 경찰과 협력해 UKIPO 자금을 지원받은 IP 범죄 조정자(IP crime coordinators) 등을 현지 지역에 배치하여 IP 범죄 및 침해에 맞서 정보를 개발하고 활동을 조정하며 자

77) IP 침해 방지 전략 2022-2027(’22. 2월).

원을 확보함

- ③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IP 범죄가 기록되는 방법을 검토함
- ④ IP 범죄 그룹의 구조와 구성원 자격을 개발하여 정부, 집행기관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전략적·전술적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⑤ IP 범죄 및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캠페인을 개발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침해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초점을 맞춤

다. 중국

중국은 지식재산 범죄 대응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부재하나,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업무계획 등에서 주요 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즉, 2022년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업 계획(2022年 全国知识产权行政保护工作方案)에서 행정과 형사사법 보호의 연계 및 협력 강화, 지역 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협력의 지속적 심화 등을 업무상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라. 일본

지식재산 범죄 대응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부재하나,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주관하여 ‘영업비밀 민관 포럼’을 매년 비공개 회의형식으로 개최하여 민관 실무자간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최신 수법과 그 대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영업비밀의 보호·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경제산업성),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최신 수법과 대응책(경찰청), 경제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술·데이터의 유출 경로 등(공안조사청), 사이버 보안 동향 및 영업비밀 상담 창구의 활용 현황, 재외 일본계 기업에 있어서의 영업비밀 누설 대책 지원 사업(정보처리추진기구,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 및 일본무역진흥기구), 최신 판례의 동향(변호사지적재산넷) 등 공유하고 있다.⁷⁸⁾

3. 소결

78) 주요참석자 : (산업계)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도쿄상공회의소, 일본지적재산협회, 경영법우회,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일본화학공업협회, 일본화학섬유협회, 일본기계공업연합회, 일본자동차공업회, 일본제약공업협회, 일본철강연맹, (산업지원조직) 일본 사이버범죄대책센터, 변호사지적재산넷, 일본무역진흥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정보처리추진기구,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JPCERT, (행정기관) 내각관방(내각정보조사실, 내각사이버보안센터),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경찰청(생활안전국, 경비국), 법무성(형사국, 공안조사청), 재무성 관세국,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 농림수산성 식량산업국, 경제산업성 관계국·특허청(JPO)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정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중국은 특허침해에 관하여 조사관에 의한 행정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국, 독일 등 전통적 수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지만, 지식재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범죄 대응전략은 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술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기술경찰의 현황 및 분석

제1절 정책환경 분석

1.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한계

코로나 19, 디지털전환, 비대면 등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각국은 지역블록화,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의 경제적, 산업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으로서, 각국은 민사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1월 8일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을 신설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침해행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였다.⁷⁹⁾ 특허법 개정 이후 상표권⁸⁰⁾, 디자인권⁸¹⁾, 아이디어탈취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⁸²⁾의 경우에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각각의 법률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분야의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침해인정의 비율과 손해배상액 증대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즉, 최근 3년('17~'19)간 1심 판결(연평균 98건) 중 영업비밀 침해인정은 7%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액은 62백만원(중앙값)으로 낮은 수준이다.⁸³⁾

79) 최상필, “특허침해에 대한 새로운 민사적 구제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8., 320면.

80) 상표법 개정(법률 제17531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81)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제17526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8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83) 법원은 영업비밀 민사사건의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수집 가능한 판결문 범위 내에서 분석('20,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침해된 영업비밀 유형은 경영정보 34.5%, 기술정보 29.1%, 기술·경영정보 혼합이 16.4%로 나타남(나머지는 불명확)

특허의 경우도 민사소송 승소율(54.8%)에 비해 특허소송 승소율(7.7%)이 현저히 낮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1억원(중앙값)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은 미국 65.7억(중앙값)의 1.5% 수준이며, 1인당 GDP를 고려하면 3% 수준으로 나타났다.⁸⁴⁾ 즉, 손해액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비율이 전체 사건의 61% 차지하는 등 민사구제에 한계가 나타났다.

2.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한계

특허청 기술경찰의 제한된 조직·인력·수사범위로 인해 전문가에 의한 수사 기회가 상실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나타났다.

영업비밀의 경우 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기소율은 약 9.7%(국내유출 : 8.9%, 국외 : 26.8%)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⁸⁵⁾

[표] 영업비밀 침해 처리/기소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영업비밀 침해 처리/기소 (명)	국내유출	754 / 100	920 / 172	916 / 167	979 / 191	522 / 152	4,091 / 782
	국외유출	46 / 22	25 / 13	23 / 2	93 / 15	48 / 11	235 / 63
	소계	800 / 155	945 / 73	939 / 70	1,072 / 91	885 / 89	4,641 / 478

* 출처 : 경찰연감

형사 1심 무죄율은 34.5%(2018년 전체 형사 1심 재판의 무죄율은 3.41%(사법연감))로 높고, 유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75.3%)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⁸⁶⁾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분야에서 연간 접수되는 관련 형사사건 중 기술경찰의 처리비율이 14.9%에 불과하여 피해 국민 대다수는 전문가에 의한 수사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3.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한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특허청

84) 특허청,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2020.

85) 2019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29.6%, '15~'19 기준.

86) 특허청,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17~'19 판결문 대상, 2020.

소관 법률 중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만 행정조치(조사, 시정권고, 공표)가 가능하고, 그 외의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분야는 관련 근거가 부재하다. 부정경쟁행위 중 특허·디자인과 연관 있는 아이디어 탈취·형태모방은 행정조사는 가능하나, 특허법 등과 요건이 상이하여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제2절 기술경찰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특허청 기술 경찰의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그 역할 및 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특허청 기술경찰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인력·업무 등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단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특허청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의 세부과제 도출을 추진하여 현장 적합성을 확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전·현직 수사관 25명

(조사기간) 2022. 7. 4. ~ 2022. 7. 8. 1주간

(조사방법) 서면 질의·응답

동 설문조사의 결과는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집행의 실효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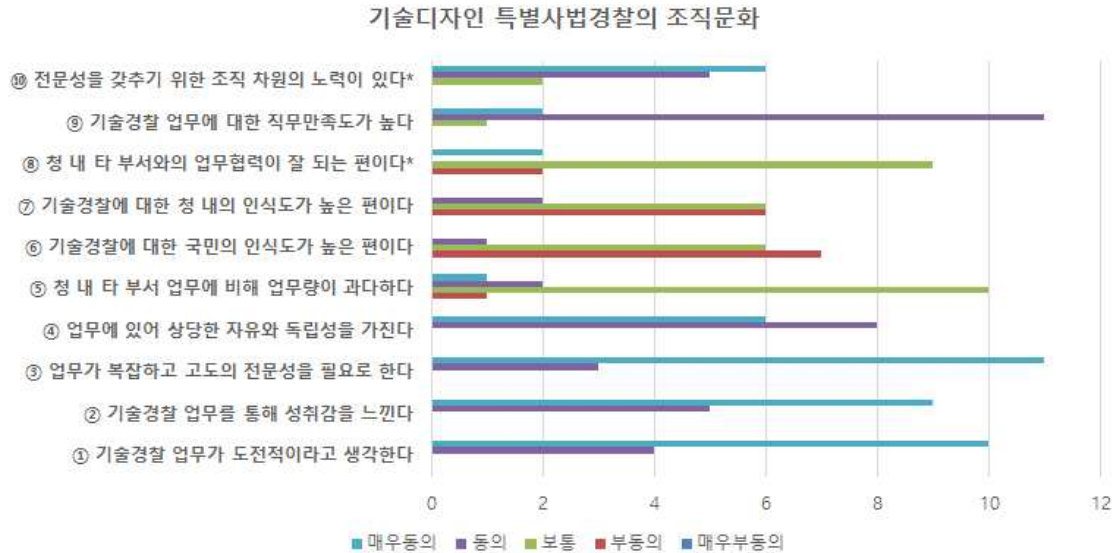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직 내외부 환경분석	- 조직의 강점 및 기회요인 - 조직의 약점 및 위기요인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의 조직문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업무량 및 내부 관리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업무량 -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근무기간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홍보, 언론보도 등)의 활동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지원 및 교육	- 외부전문가 총원의 필요성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의 업무교육	- 사전교육, 전문교육 수강 여부 - 업무교육의 내용
기타	- 조직, 인력, 법제도, 대국민 인식제고 등 전반에 대하여 개선사항 등

3. 주요 항목별 결과

가. 조직의 SWOT분석

		S(강점)	W(약점)
외부환경	내부능력	① 기술·디자인 침해행위에 대한 전문적 대응 ② 일반경찰업무 영역의 전문성을 보충 ③ 수사업무의 전문적 실행 ④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과 침해의 방지 ⑤ 지식재산 영역에 대한 전문성 확보	② 위합하고 번거로운 수사활동 기피 ③ 수사업무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④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
	O(기회)	SO전략(기회활용) ⑥ 지식재산 전문영역의 확대 가능성 ⑧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등과의 업무협력 증대 ⑩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상승 • 기술디자인 침해행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 확대 • 지식재산 전문영역 확대 가능성에 따른 직무범위 확대	WO전략(약점보완) • 수사업무 및 관련법률에 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사 및 법률 전문가 확충 • 수사 노하우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내부환경	기회	ST전략(강점대응 전략) ⑧ 국민의 인식부족 ⑩ 수사대상자(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등)의 반발 •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마련	WT전략(혁신전략) • 중장기 발전방안에 기반한 대응책 마련 • 특허청 타 부서와 별도의 성과평가 방안 마련

나.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조직문화



업무가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매우 동의 11명), 업무가 도전적임(매우 동의 10명), 업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낌(매우 동의 9명)

반면,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높은 편임(부동의 7명, 보통 6명), 특허청 내 인식도가 높은 편임(부동의 6명, 보통 6명), 특허청 내 타 부서와 업무협력이 잘 되는 편임(부동의 2명, 보통 9명)

따라서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국민의 인식도 및 특허청 내 인지도 제고 방안과 특허청 내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량

내 용	현재 비율	바람직한 비율
① 자료 수집 및 분석 - 권리분석/피의자 제품 특성 등	20.7%	24.0%
② 임의·강제 수사 활동 - 고소인,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신문 - 현장 조사, 압수수색	32.5%	32.8%
③ 판단 - 무효 여부 판단 - 정정·법률요건별 참여 여부 및 고의성 판단 -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 수사지휘 건의 및 송치서/의견서 작성	46.8%	43.2%
합 계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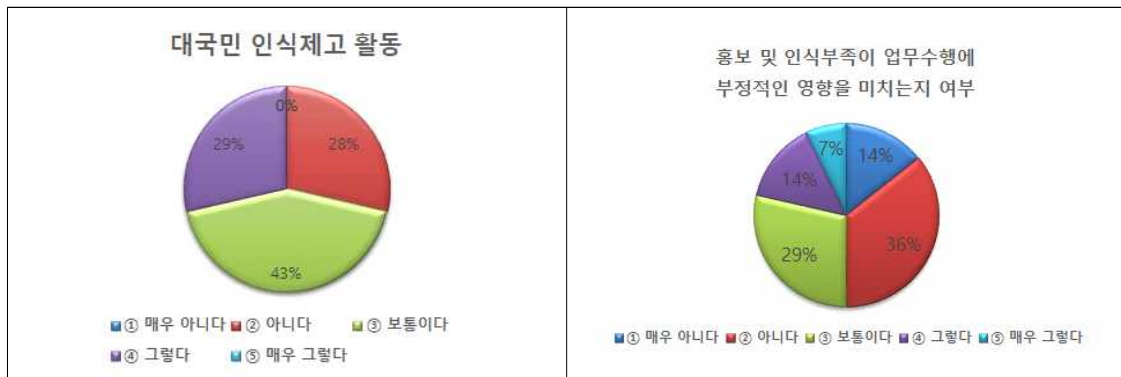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크게 ① 자료 수집 및 분석, ② 임의·강제 수사활동, ③ 판단으로 구분하여 현재 업무량 대비 바람직한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비율과 피설문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금보다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판단 부분의 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법률적 판단에 있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적절한 근무기간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기술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대해 1년 이상 3년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단기간에 수사 전문성을 갖추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43%로 나타나 수사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잦은 인사이동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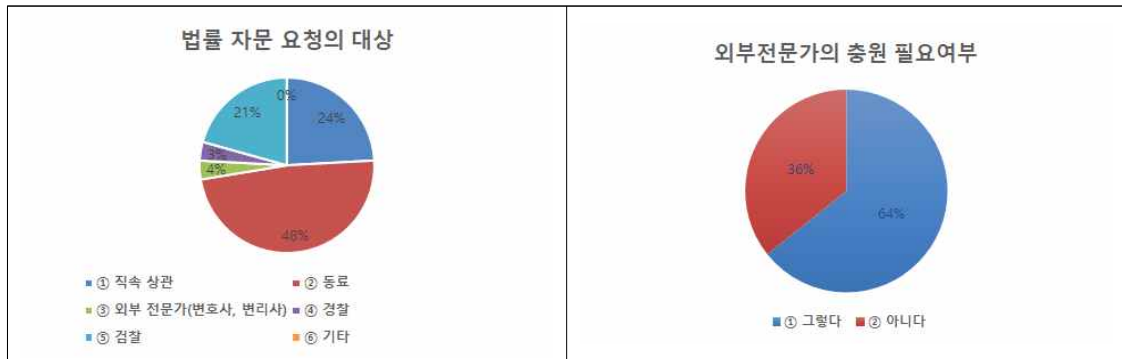
마. 대국민 인식제고(홍보, 언론보도 등) 활동과 이로 인한 업무수행시 애로사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 대한 홍보, 언론 보도 등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보통이다 43%,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28%로 나타났다.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 대한 홍보 및 대국민 인식부족이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아니라는 의견이 36%,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29%로 나타나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의 부족이 업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자체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현재 피설문자들이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이 부족하다고 느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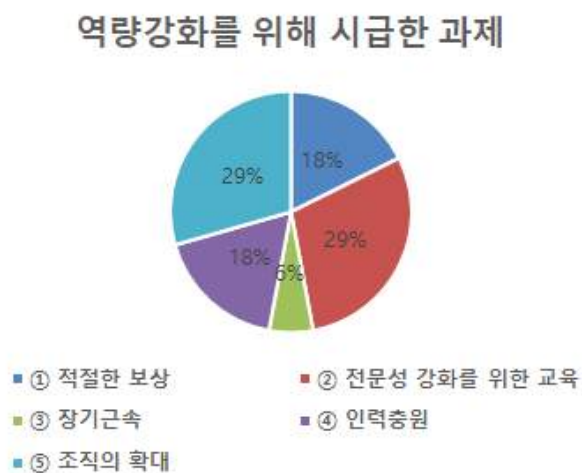
바. 업무의 지원



피설문자가 업무 수행상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료가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직속 상관, 검찰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수사자문관의 도움과 판례를 직접 찾아본다는 의견이 있었다. 업무 수행상 법률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가 64%로 나타났다.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주로 동료나 직속 상관 등 내부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외부 전문가의 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총원을 통해 수사,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 기술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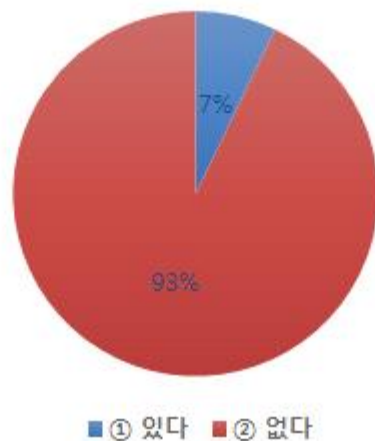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조직의 확대가 각각 29%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한 보상과 인력충원이 각각 18%로 나타났다. 전

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대상 직무교육의 강화와 인력 충원을 포함한 조직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아. 직무 교육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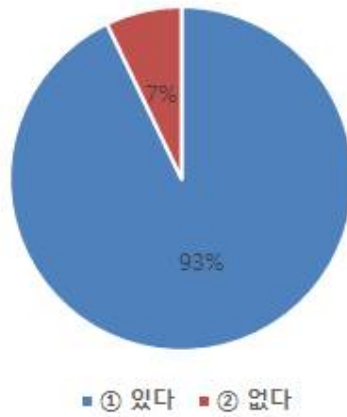
사전 직무교육 경험 유무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되기 전, 사전 직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다수인 93%가 사전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임명 후 현재까지 평균 4.2회의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관련되어 임명 후 직무교육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전 직무교육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임명 전, 사전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직무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경험 유무

수사기법에 대한 별도의 교육 경험 유무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인 93%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진전에 따른 기술디자인 범죄의 지능화 • 다양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 수행 및 기술디자인 범죄 수사의 과학화 • 선진화를 위한 수사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 기타 개선사항

분야	개선사항
조직 (교육 포함)	• 조사실 확충 및 영상녹화 등 증거력 확보를 위한 장비 확충 필요 • 신규 특사경 임명으로부터 근속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의 체계적 마련 필요 • 기술경찰은 현재 전국 사건을 모두 관할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에 벤처기업 등이 많고, 산업기술유출 수사와 관련한 수원지방검찰청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지역사무소 신설도 검토할 필요 • 당사자 편의 제고와 수사 효율성을 위해 서울, 부산 등 주요 권역별 지방조직 개설 필요 • 기술경찰은 심사경험이 있는 5급, 6급 대상자 중 선발하기 때문에 고경력자가 많은데, 현재 승진, 성과급 등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음.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송무과 등처럼 별도 평가, 점수조정 등 우대가 필요 • 지식재산 침해사건의 침해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일반경찰에 비해 월등하지만, 압수수색, 포렌식, 피의자신문 등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 실무에 관한 교육을 보강할 필요 • 기술유출 수사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인력 및 장비 강화 필요(현재 포렌식 수사관이 1인, 포렌식 분석실도 1개뿐임) • 신규수사관 대상 법무연수원 교육 또는 우리과 수사매뉴얼에 대한 정식 교육(2일 이상, 무료, 침해판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조건 등)이 필요 • 압수수색 등 실전 경험을 하신 분들의 경험, 실전자료, 디테일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복합적인 사건 해결 및 수사관, 조사관들의 원활한 상호 협조를 위해 수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들을 총괄하는 상위 조직이 필요 • 수사 보안독립성유지, 당사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별도 청사 마련 필요

분야	개선사항
인력	• 다수의 인원 및 협력이 필요한 압수수색 집행 및 분석 등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인원 확대가 필요 •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의 보강
법제도 (업무범위 포함)	• 타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및 수집 권한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추진 필요(금융정보, 관세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 • 민원 담당자가 사전에 필터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건 후에 수사관이 수사초기에 명백하게 사건을 각하 또는 불기소 건의할 만한 사유를 발견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관이 수사 초기에 각하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의견을 올리는 것은 부담일수 있기에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에 맞게 특정조건이 만족되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나 규칙의 제정 필요 • 기술경찰의 수사범위에서 영업비밀과 관련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누락됨. 영업비밀요건이 안 될 때 업무상배임을 적용하거나,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하여 피의자를 처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경찰도 이 분야까지 수사범위 확대가 필요 • 특허 및 디자인 침해죄 뿐만 아니라 특허법 및 디자인법에 기재된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등 법내의 처벌행위 전반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를 확대할 필요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 주임 검사가 느끼는 특사경의 장점을 통해 이를 홍보에 활용

4.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 기술경찰의 조직 인식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디자인 침해행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 확대
- 수사업무 및 관련법률에 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사 노하우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특허청 타 부서와 별도의 성과평가 방안 마련
- 수사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별 지역 사무소 등 설치
-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마련

규범분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식재산 전문영역 확대 가능성에 따른 직무범위 확대(산업기술 등)
- 특정 요건 충족시 수사종결을 위한 근거 마련

제3절 문제점

1. 수사역량의 한계

디지털 시대에 범죄 관련 전자파일의 은닉·삭제, 교환수단 등 범죄수법이 고도화·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술 및 권리범위 판단 등 전문성은 높지만, 수사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 경찰 임용 전, 후 기술분야 외에 수사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을 겪었음에도 미조치하는 이유는 증거수집 및 피해입증을 하는데 어려워서라고 답하였다⁸⁷⁾.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의 디지털 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을 확인하여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디지털 매체 약 30건을 압수하였는데 혐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⁸⁸⁾. 또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후 사용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수집해 위법수집 증거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⁸⁹⁾. 이처럼 디지털포렌식 기초절차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은 법률적, 기술적 지식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보다 현장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담인력이 분석 업무만 수행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사건에 대한 처리를 병행하게 된다. 동시에 현장수사 지원, 관련 행정업무, 보고, 내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이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한 연구, 분석기술 개발, 사건 관련 매체 분석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나아가, 진화되는 범죄수법과 기술수준, 사건증가에 1인으로는 전략적으로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87) 특허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설문 조사”, 2021.

88)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

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7.26. 선고 2018노196 판결

된다. 또한 1인이 기술디자인, 상표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모든 업무를 부담하기에는 공통적인 컴퓨터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이 있는 인원을 투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직무범위의 한계

가.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 현황

2018년 개정법에 의해 2019. 3.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출범 2년이 경과 한 2020년 기준으로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하여 750명을 형사입건하였는데,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17.4%⁹⁰⁾에 해당하며, 기술 전문 수사관의 정확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기술경찰 기소의견 송치율(16.5%)(‘21년 누적 기준)은 기술침해 전체 형사기소율(8.1%)의 2배 정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기술특사경은 제도 도입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침해 사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특사경이 사건 처리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문제점

기술특사경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형사사건 처리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술특사경이 담당하는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즉, 기술분야 전문성에 한정되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전반에 대해 기술특사경이 업무를 담당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중 제한된 영역에서만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특히 영업비밀 침해사건) 중에는 산업기술 유출 등 침해사건이나 업무상배임죄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현행법은 그러한 사건에 대한 기술특사경의 직무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산업기술침해나 업무상배임죄가

90) 특허법위반사건 37.6%, 부경법위반사건 7.2%, 디자인보호법위반사건 22.2%.

문제되는 경우 더 이상 사건처리를 하지 못한채 종결하고 다시 일반 사법경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담당기관에서 수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물론 기술특사경이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충분하고 공인된 전문지식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오히려 과도한 권한행사에 따른 형사권의 비대화가 아닌지 등의 비판적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술특사경, 특히 2018년 법 개정의 취지⁹¹⁾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해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어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인지, 직무범위 확대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지, 다른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지, 일반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이하에서는 그 전제로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 방안과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대한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의 적절성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직무범위 규정에서 불충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직무범위의 확인 및 추가이다. 예를 들어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35호의2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과 사실상 같은 다뤄지고 있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중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 행위와 영업비밀침해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미수범 등 행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행 규정에서 배제된 직무범위 중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 및 업무관련성의 관점에서 직무범위로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한 사유들을 검토해 본다.

둘째,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직무범위 확대 방안의 검토이다. 즉, 현행 규정은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중 일부만을 직무범위로 하고 있는데,

91) 기술과 디자인 등 특수 분야의 전문성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추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 사무를 할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특사경의 전문성 활용과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그 직무범위를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담당 직무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범위 규정(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9호) 등 이미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입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식재산권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포함이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또한 문제된 비밀의 성격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 위반이 문제되기도 한다.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비밀을 수사하다가 업무상배임죄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설령 그것이 영업비밀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특사경은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일반 사법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의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 상호 협력을 통해 수사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기술특사경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침해사건의 처리보다는 침해대상이나 근거법률이 무엇인지 등의 관점에 집중하게 되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기술특사경이 통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는 ① 수사의 효율성·전문성 측면, ②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성과 측면, ③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①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수사정보 보고 등에 따른 검찰권의 비대화를 야기한다는 문제, ②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민간인 등이 인신 구금 등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게 되므로 강제 수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⁹²⁾ 이와 같이 긍정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현 시점에서 전향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92) 2022. 9. 30. 특사경 제1회규범분과회의, 박향철 위원 자료 2면.

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직무범위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경우 앞에서 제시한 3가지 기준에 따라 ① 1단계 - 기술특사경 직무범위의 정립, ② 2단계 - 기술특사경 직무범위의 확립, ③ 3단계 - 기술특사경 직무범위의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수사인프라의 한계

현재 기술경찰은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소속으로 2021년 기술경찰 별도과로 분리·신설하고, 포렌식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경찰 조직은 산업재산보호정책국에 소속되어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부족한 인프라(예산·조직·인력)로 인해 기술경찰의 수사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개선방안

기술경찰의 수사역량 측면, 집행력 강화 측면, 인프라 측면에서 기술경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3가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관점	현황 및 문제점	정책방향
수사 역량	- (현황) 디지털 시대에 범죄 관련 전자파일의 은닉·삭제, 교환수단 등 범죄수법이 고도화·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 - (문제점) 기술 및 권리범위 판단 등 전문성은 높지만, 수사경험과 노하우 부족	-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수사관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전자수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 추진
집행	- (현황) 지식재산침해범죄가 일반형사범죄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기술수사 전문기관에 수사의뢰 수요증가 추세 - (문제점) 기술경찰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술경찰 직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피해국민에 대한 형사구제에 한계 노출	- 수사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술탈취 브로커 제재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중장기 홍보계획 마련
인프라	- (현황)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소속으로 '21년 기술경찰 별도과로 분리·신설하고, 포렌식 전문인력 채용 - (문제점) 정책국에 소속되어 수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고, 부족한 인프라(예산·조직·인력)로 인해 수사의욕 상실 우려	-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수사공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수사인력 확보 추진

제4장 기술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1절 기술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방안

1.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통한 수사의 효율성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탈취범죄는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으나, 전담 수사기관인 기술경찰은 여전히 열악한 수사환경에 처해 있다. 즉, 기술경찰은 출범한 지 1년에 불과하여 수사장비 확충을 위하여 별도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법원·법무부·검찰·경찰이 수사·기소·재판정보를 공유하는 형사 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술경찰은 접근권한이 없어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첨단기술범죄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 된 범죄수법 대응을 위하여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자파일의 다양한 은닉·삭제, 교환수단(이메일, 휴대폰 문자, 이동식 저장매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 페이스북 등 SNS)에 대응하는 최첨단 범죄 증거 수집을 수집하고 이를 선별장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복합기술의 기술내용 심층 분석 환경 마련 및 원거리 조사로 인한 출석부담 완화를 위한 수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과제

1) 첨단기술 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최첨단 수사장비 확충

먼저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MD-next/Red 등 최신 모바일 포렌식 장비 구입을 통해 압수파일의 수집·분석 및 무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학·바이오 사건에서의 조성물 성분분석과 같이 직접수사의 난점해결을 위해 시험분석기관과 장비사용에 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화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출연연), 국가과학수사연구원(警),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檢) 등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과 MOU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시 문답한 내용을 자동녹음 후 음성인식(STT)을 통해 자동으로 문서화되는 시스템이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관은 문서화 된 조서를 1차 검수 한 후, 피조사자 열람 및 수정 절차를 통해 적법한 신문조서로 활용하면 된다. 실제로 경찰청은 2020년에 서울, 경기지역 등 59개 경찰서 77개 조사실에 ‘음성인식 기반 성폭력 피해 조서 작성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내용의 충분한 설명기회 제공을 위해 10인 이상이 동시에 참여하여 발표·시연이 가능한 별도의 조사실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지식재산센터 건물 3층) 등 기존의 사용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특사경 수사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특사경 수사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하면, 자료의 전산화 및 인력재배치를 통한 비용절감, 지휘건의·영장발부결과·기소중지피의자의 신속한 확인 등 수사 효율화 동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영장집행을 위해 해외출국으로 기소중지 된 피의자의 입국사실을 KICS를 통해 기술경찰에 통지되도록 전산절차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사건 처리현황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검찰 처분결과의 당사자 통지 누락·지연을 방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휘건의과 침해여부 판단시 오류를 방지하고, 최신 자료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검찰 기소·불기소 결정문과 법원 판결문 검색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로그인 | 회원가입 | 도움말 | English

범형용어 검색

처음 오셨나요?
사건조회
전자민원신청
범죄피해자지원
뉴스와

사건조회

사건조회

> 사건조회 안내
> 경찰사건조회
> 해양경찰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
> 법원사건검색

별과금조회

> 별과금납부 안내
> 별과금납부명령서 전자발송
> 미납별과금조회
> 별과금납부내역조회

가납금환급조회 및 신청

> 가납금환급/신청 안내
> 가납금환급조회 및 신청
> 가납금환급내역조회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 재판서/통지서조회 안내
> 경찰통지서조회
> 검찰통지서조회
>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조회
> 신상정보 등록조회

사건조회안내

기관별 사건진행상황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바로가기

경찰사건
경찰에 입건된 사건에 대한 진
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사건
해양경찰에 입건된 사건에 대
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
니다.

검찰사건
검찰청에 수리된 고소·고발·
검찰청에 수리된 고소·고발·
인지, 항고·재항고·재검 사건
에 대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원사건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공판, 약식, 전자약식, 소년보
호, 가정/성매매관련 보호사건
에 대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대상

경찰사건

해양경찰사건

검찰사건

법원사건

기관1. 경찰사건

조회대상자	대상 사건
- 고소인들 (고소인·고발인·진정인·피해자) - 위의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 변호사	입건 사건
- 피의자 - 위의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 변호사	【진행 중인 사건】 - 입건 사건 중, 피의자와 사건조회가 제한되지 않는 사건 - 전자약식 사건
	【종결 사건】 - 입건 후 종결된 사건 ※ '이송' 결정 피의자는 사건조회가 제한되지 않은 사건에 한해 조회 가능 ※ '수사종지' 결정 피의자는 조회 불가 - 전자약식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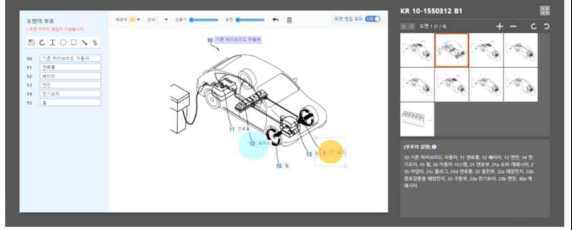
※아래의 경우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도주·중거인명 우려 등 사유로 사건조회를 제한한 사건
- 입건 전 조사사건
- 인용서 또는 지문 트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수사 체계 마련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및 디자인 DB상의 도면·실시례 유사도 분석이 가능한 민·관 인공지능(AI) 시스템(특허청, 상표 검색·특허 심사·챗봇 등 행정전반에 AI 도입('22.3.))의 수사목적 활용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에서 활용중인 AI 검색시스템을 자유실시디자인 해당여부 및 유사도 확인 등 수사목적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도면 및 청구항에서의 기술키워드 검색 등 민간 기업의 AI 특허분석 서비스의 수사목적 활용을 위한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75 -

서비스 개요	웍스 도면검색 및 편집 기능 화면
· 도면검색은 발명 설명에서 도면 부호를 추출해 도면에 표기해주고, 이를 활용해 연관이 있거나 필요한 도면을 검색 · 기술 키워드와 문헌번호 찾기 두 가지 모드 · 도면은 발명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그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 등을 일일이 비교하며 살펴봐야 했던 특허업무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참고] 전문가용 프리미엄 특허분석 서비스 '윈텔립스(WINTELIPS)', 온라인 글로벌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웍스온(WPS ON)' 등에 고성능 인공지능(AI) 검색엔진을 탑재	

4) 온라인 피의자신문을 위한 비대면 원격 시스템 구축

대면조사로 인한 수사관이나 수사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온라인 피의자신문 실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판절차에 기 도입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인터넷 화상장치 포함)에 의한 증인신문절차 등을 참고하여 비대면 원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로 인한 수사관이나 수사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온라인 피의자신문을 실시한다.⁹³⁾ 또 진술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긴장감, 눈동자 흔들림 등 비진술적인 표현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의 완성도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2. 기획수사의 확대를 통한 기술범죄에의 선제적 대응

가. 현황 및 필요성

기술범죄 수법의 고도화, 다양화, 지능화되고, 한 번의 기술유출로 국가적으

93)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2021년 11월 18일 시행)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방법으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중개 외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였고(민사소송법 제327조의 2), 이를 당사자신문에 준용(민사소송법 제373조)

로 막대한 피해 발생하지만 기술보호는 미흡한 수준이다. 연간 56조2천억원의 기술유출 피해 발생을 예상한 자료(전경련, '22)에 따르면, 이는 우리 GDP의 2.7%이며, 전체 R&D의 60.4% 해당한다. 우리의 R&D 역량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높지만(57.7%), 우리 기업 및 기관의 기술보호 수준은 미흡(84.6%)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인지·기획수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획수사란, 피해자의 고소·고발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이 첩보수집·내사 등으로 자체 사건인지 및 수사 기획하는 적극적 수사행위를 말한다.⁹⁴⁾ 즉, 기술범죄는 침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즉, 관련 법률 개정으로 특허·디자인침해죄의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비친고죄인 영업비밀침해죄와 함께 기획수사가 가능하다. 국정원 등 방첩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영업비밀보호센터(보호원), 중기부·산업부·공정위 등 신고상담센터 등 내·외부 인프라를 통한 기술유출·침해 정보 수집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나. 추진과제

1) 방첩기관 연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사 공조체계 구축

특허 빅데이터(발명자, 기술) 분석·코드분류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또는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주요 기업 정보를 방첩기관과 공유하여 기술유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⁹⁵⁾ 분류코드 부여, 권리변동 모니터링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 특허관리 체계 구축, 발명자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 의심정황 조사 등을 통해 기술유출 의심정황 발견 시 방첩기관 조사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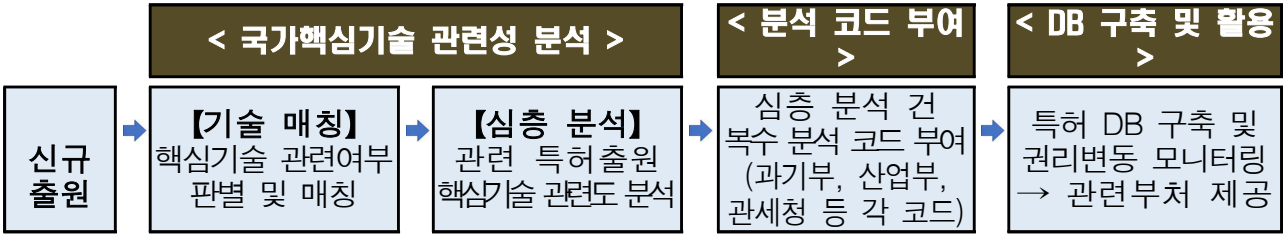
먼저, 출원단계부터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선별, 심층 분석, DB 구축 권리변동 모니터링을 한 후 관계부처에 공유한다.(국가핵심기술) 신규·양도 특허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 관련여부를 판별하여 특허분류 분

94) 기술경찰 전체 사건 중 기획수사사건 비율은 2.9%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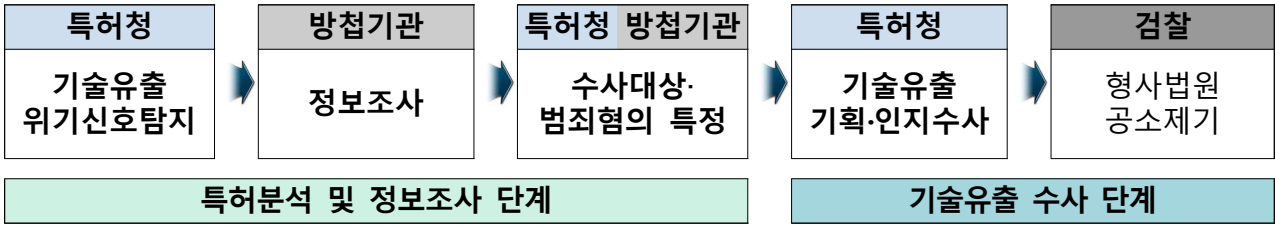
* 전체사건(591건) 중 인지사건 17건(2.9%), 검찰지휘 53건(9%), 경찰이송 21건(3.6%), 고소·고발 500건(84.6%).

95) 특허정보 제공 관련 법적근거(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원발의, '21.11.2)) 마련 중

석코드를 부여하여 관계부처 제공, 추후 관계부처는 국가핵심기술 선정시 참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관리가 가능하게되는 효과가 있다.



특허빅데이터(발명자) 분석을 통해 국내 주요기업의 핵심발명자 정보, 해외 이직 정보 등을 종합하여 기술유출 수사에 활용한다.



방첩기관은 특허청 제공자료를 방첩활동에 활용하여 기술유출 조사 실시, 피의자 및 범죄행위 등 구체적 특정 후 기술경찰에 이첩한다.

2) 법원·심판원 연계) 특허·디자인 민사 판결과 연계한 기획수사

특허·디자인 심판(권리범위), 민사소송(침해, 가처분)에서 심·판결이 확정된 후 권리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자체 인지하여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법원 행정처, 특허심판원과 협력하여 특허·디자인 심판, 민사소송의 확정 심·판결례를 제공받아 기획수사로 전환한다. 확정판결 후 계속적 침해에 관한 신고센터를 연계하고, 침해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 후 형사입건을 하게 된다. 즉, 침해 여부판단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사는 조기종결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위주 침해 판례를 검토·분석하여 기술 침해를 ①사전 예방·방지하고, ② 침해 발생시 권리자 처벌의사 확인 후 기획수사 진행하게 된다.

3) 지식재산침해원스톱신고·상담센터 및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한 기획수사 추

진

기술경찰 수사연계 가능성을 상담(자문)의뢰자에게 먼저 공지 후 주요 내용을 제공받아 침해 개연성 높은 사건에 대하여 내사개시한다. 신청접수시 수사연계에 관한 사전동의 받은 사례 중 인터뷰 등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범죄 개연성 높은 사건에 대하여 내사를 개시한다. 위조상품 의심사건 중 디자인 침해 중첩시, 권리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권리자에 의한 기술경찰 수사의뢰 유도한다.

4) 인력 헤드헌팅 등 주요 기술유출·침해 플랫폼의 모니터링 및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자체 수사기획 기능 강화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분야의 인재 유출이 심각한 중국 등 해외 인력유출 창구로 의심되는 구인플랫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및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피해규모와 적시수사 필요성이 큰 사건의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인력 이동이 잦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기업·단체 간담회를 통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다.-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22~'26)상 기술유출에 대한 실태조사 세부항목에 피해기업 심층인터뷰를 추진하는 한편, 전·현직 직원의 기술유출 의심정황 등을 파악하고, 피해기업 의사에 따라 직원이 사용한 PC·이메일 등 포렌식을 지원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또는 첨단산업분야 대표 협·단체와 세미나·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여 기술유출 범죄위험요인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사관 교육 및 인센티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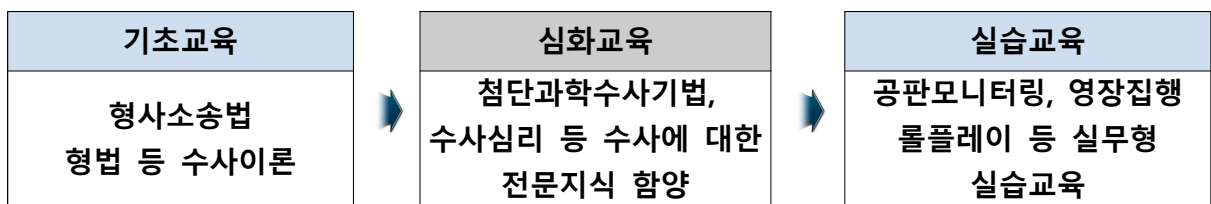
가. 현황 및 필요성

정기·수시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사경험 축적이 어렵고, 원활한 노하우 전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기술경찰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으로 1년 이상~3년 미만(57%), 3년 이상(4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사 관련 전문지식 습득과 유경험자의 수사기법의 전수가 용이하도록 장기근속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하다.

나. 추진과제

1) 영장(압수수색, 체포·구속)집행 롤플레이 등 실무교육 강화

압수수색 관련 최신 판례 분석, 강제 수사 준수 사항, 수사 요령 등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나 수사관을 통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험 많은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전문가로 초빙해 수사 핵심기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의 정례화(月 1회 이상) 추진하도록 한다.⁹⁶⁾ 또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심화교육, 실습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수사관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외부 교육과정 적극 참여

2022년 특허청 공무원 집합교육 내용 중 지식재산범죄 수사관련 교육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지식재산 범죄 전문수사기법 활용을 위한 수사관 역량

96) 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수사력 향상을 위해 검사나 수사관을 일일 강사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자체교육과정 운영('22년)

강화 과정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기집합 교육과정으로 개설을 추진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형법 등 수사이론에 대한 기초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에 대한 심화교육 과정을 추진한다. 또한 특사경 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이 수사 관련 지식을 사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 민·관 수사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술경찰의 첨단기술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법무연수원의 집합교육 또는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연계하여 과학수사 및 첨단 수사기법 습득을 위한 종합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매년 2회에 걸쳐 검찰수사관 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의 외부 수사·조사기관을 상대로 디지털포렌식 이론 및 실무교육을 진행하는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대검찰청)와 연계하여 디지털포렌식 이론 및 실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한컴 위드의 경우 최신 모바일 및 디지털 포렌식 동향, 도구 사용법, 심화 교육 및 특강 등 커리큘럼 보유)과 연계하여 최신 모바일 및 디지털 포렌식 동향, 수집분석도구 사용법 등 교육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수사 관련 전문자격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기술범죄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산업보안관리사, 포렌식전문가 등) 취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한다. 전문자격 취득시 인사고과에 반영, 승진시 가점요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양경찰청 정보과의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시 보처리, 디지털 포렌식 등 전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4) 기술 특사경 포상금 확대

전문자격 취득과 실무교육 참가 등 수사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 특사경 포상금의 규모 및 수여대상의 확대를 추진한다.

5) 수사관 수사수당 신설 및 전문직위 도입

특허침해죄 등 수사업무는 심사·심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허

청 소속 공무원의 심사·심판수당 범위를 확대하여 수사수당을 신설한다.

수사업무는 심사관의 업무(선행기술조사, 특허성 판단)와 심판관의 업무(권리 범위확인, 무효여부)를 아우르는 업무이므로 수당지급이 필요하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개정(안)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 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지급액) 가) 고위공무원단: 월 100,000원 나) 3급 또는 4급: 월 90,000원 다) 5급: 월 80,000원 라) 6급(심사관): 월 60,000원 마) 6급이하(심사관보):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자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발령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 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수사관	(지급액) 가) 고위공무원단: 월 100,000원 나) 3급 또는 4급: 월 90,000원 다) 5급: 월 80,000원 라) 6급(심사관): 월 60,000원 마) 6급이하(심사관보):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자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또는 <u>수사관</u> 발령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6) 사전 교육 및 지명 초기 필수교육기간 운영

수사관 지명 초기(3개월 이내)에는 독립적인 사건 배당을 받지 않고 법무연수원 수사실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필수교육기간을 운영한다. 특사경 업무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형사 및 수사 관련 지식을 사전에 학습하고 특사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 기술경찰은 필수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및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7) 해외 수사 전문기관 연수 프로그램 개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유로폴(EUROPOL)의 지식재산범죄 방지연합(IPC 3)⁹⁷⁾ 등과 교육과정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 즉, 해외 수사기관의 선진 수사 노하우의 습득, 수사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수사관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한다.

97) EU 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로폴과 EUIPO이 협력하여 조직한 지식재산 관련 침해 범죄 대응 조직으로 EUIPO가 연간 100만 유로의 예산 지원.

제2절 기술보호 집행의 효율성 확보 방안

1. 기술경찰의 직무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

가. 1단계 - 기술특사경 직무범위의 정립

기술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의 1단계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기술특사경 직무범위의 누락 또는 흠결을 보완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행 규정 자체만 보더라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리가 없고, 오히려 직무범위 규정의 정합성과 기술특사경의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한 사항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1)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현행 규정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규정하면서도, 특허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실용신안권(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특사경의 직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임에 반해(특허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고도성’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다. 즉,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성이 있는 것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고도성이 없는 것은 실용신안법상 고안으로 각각 보호되고 이와 같이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발명에 비해 그 기술적 우수성이나 현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는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⁹⁸⁾ 특허법상 발명과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⁹⁹⁾ 즉,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여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하면서,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그와 같은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 없어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서 배제할 합리적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보호대상 등 일부 차이를 제외하면 법 규정¹⁰⁰⁾이나 관련 법리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죄와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구분하여 전자만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할 실익이나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2)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범죄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18년 개정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¹⁰¹⁾의 입법 형태를

98)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후42 판결.

99)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구별의 모호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특허법 제53조, 실용신안법 제10조).

100) 특허법의 주요 조문들을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 제3조, 제11조, 제15조, 제20조, 제28조, 제30조의3, 제33조, 제41조, 제44조 참고.

101)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7. 30.>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반영한 것인데, 그 이후인 2019. 1. 8.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이 신설되었다.¹⁰²⁾ 그런데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채 종전 규정을 전제로 한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죄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포함시킨 법 개정의 취지와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행위만 직무범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행 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행위들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지만, 입법 현황과 현행법 규정¹⁰³⁾ 및 죄형법정주의 등을 고려해 볼 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우리 대법원은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침해행위에 대해 개정전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였다.¹⁰⁴⁾ 이러한 법 개정 취지와 해석 법리를 고려해 볼 때,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추가된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

102)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03)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10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미수범과 예비·음모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의해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영업비밀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항)를 규정하였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2004. 7. 21. 개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과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종전 제18조 제5항 삭제,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그 이후 벌금형 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제18조의2¹⁰⁵⁾, 제18조의3¹⁰⁶⁾).

이와 같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미수범(제18조의2)과 예비·음모(제18조의3)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기수범만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범행을 모의하고(예비·음모), 실행의 착수를 한 다음(미수범) 결과가 발생(기수범)하는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굳이 기수범에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달리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는 범행에 따른 결과 발생 이전의 단계로서 그 해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는 일반 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해 장애미수(제25조¹⁰⁷⁾), 중지미수(제26조¹⁰⁸⁾), 불능미수

105)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106)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18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07. 12. 21.]

107)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108)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¹⁰⁹⁾) 등 3가지를 인정하고 있고, 예비·음모(제28조¹¹⁰))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상 예비·음모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판례는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¹¹¹⁾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¹¹²⁾

다음으로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마쳤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실행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와 구별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수와 구별된다.¹¹³⁾ 예를 들어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거나,¹¹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109)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10)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1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1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와 피고인 3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음모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3) <https://www.lawmaking.go.kr/lmKnlgl/jdgStd/info?astSeq=2283&astClsCd=CF0101>

11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폈을 뿐이고 나아가 위 지하실에까지 침입하였다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그에 접근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고 한다.¹¹⁵⁾

이와 같이 범죄의 성립에 있어 예비·음모 - 미수 - 기수를 구분하는 것은 범행의 모의 - 실행의 착수 - 결과의 발생 등 범죄실행을 위한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외에 범죄의 실행단계에 대한 판단에 큰 전문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업비밀침해 행위의 특성상 범행의 모의 - 실행의 착수 - 결과의 발생이라는 전형적인 범죄실행 단계에서 정작 중요한 것인 침해대상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중 결과가 발생한 행위만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침해대상의 성질보다 범죄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인지에 따라 담당 수사기관이 달라지는 업무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한편, 형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비·음모의 특성¹¹⁶⁾상 아직까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예비·음모죄 적용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미수범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¹¹⁷⁾ **부정사용미수를 긍정한 판례로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원심은,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유출한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새로 입사한 그 판시 회사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

이상, 비록 피고인이 창문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지하실에 실제로 값비싼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 지하실에 놓여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1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116) 형법에서도 예비·음모 해당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정환, 법조 제633호, 2009, 143-144면 참고.

117)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한 후 그 파일을 실행하여 판시 회사의 게임개발에 참고하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 파일에 접근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보안프로그램의 작동으로 파일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파일 저장의 단계를 넘어 파일을 실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부정사용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대규모 담수·발전 프로젝트인 라빅 프로젝트, 빈탄 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워터트랜스미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열람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어서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¹¹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4고단7664 판결**(전직을 통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간접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한 점, 각자 맡게 될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각자 그에 따른 준비에 착수한 점, 그 준비의 일환으로 위 피고인들은 순차 피해회사를 퇴직하였고, 영어회화 강좌를 수강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대만 현지의 주변여건을 파악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외국에서의 영업비밀 사용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¹¹⁹⁾ 등이 있고, **부정사용미수를 부정한 판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진공 건조장치 및 도액공급장치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실행시킨 것만으로는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 회사의 나머지 기술상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 등은 피고인이 단순

11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19) 중지미수라 함은 범인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04. 10. 이후 피고인 A와 AMTC의 J와의 연봉 협상이 J의 무성의한 태도로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엘지필립스의 과거 동료들로부터 엘지필립스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조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결국 대만으로의 전직을 포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전직 포기는 외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것일 뿐 순전히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특허청, 「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2015. 9., 116-117면).

히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열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정 사용미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그를 직원으로 사용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가 있다.¹²⁰⁾

이와 같이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하여 미수범이 문제된 사례들이 실무적으로 적지 않다는 점과 기술특사경의 전문성 활용이 기수범에 한정될 이유나 실익이 없고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기수범 이외에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4) 산업재산권 침해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직무범위 포함 여부

(가) 현행 규정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재산권법(이하에서는 특허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에서는 권리 침해죄 이외에 「비밀누설죄 등(제226조)」, 「위증죄(제227조)」, 「허위표시의 죄(제228조)」, 「거짓행위의 죄(제229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229조의2)」, 「양벌규정(제230조)」 등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는 침해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특사경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업무 집행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

12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95 판결.

서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모두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포괄적 규제방식은 뒤에서 다룰 2단계 발전방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계적인 직무범위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범죄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죄 이외의 다른 형사범죄 중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범죄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이나 확립된 기준이 없어 다른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겠으나, 일응 「허위표시의 죄(제228조)」와 「거짓행위의 죄(제229조)」, 그리고 양벌규정(제230조)가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허위표시의 죄(제228조)

특허법 제228조(허위표시의 죄)는 “제224조¹²¹⁾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특허 등록 등에 대한 허위표시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특허권 침해와 같이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 없고 일반 사법경찰이 얼마든지 수사·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허위표시에 대한 죄의 경우 출원중인 사실에 대하여 등록을 받은 사실로 표시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받은 특허의 내용과 표시한 내용이 불일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그 발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즉,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받은 특허의 내용과 해당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지 여부라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특허법 제224조 제3호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

121)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신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¹²²⁾ 즉, 허위표시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단순히 등록사실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인지의 형식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고, 등록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영역은 일반 사법경찰보다 기술특사경이 전문성을 갖춘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제133조(거짓표시의 죄)를 특사경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0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39호

39.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¹²³⁾ 및 제133조¹²⁴⁾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이와 같이 특허법 제228조(허위표시의 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같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39호에 유사한 규정도 이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22)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123) 제131조(침해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8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4)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다) 거짓행위의 죄(제229조)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등록 등을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¹²⁵⁾’는 일반적인 형사법 개념이므로 기술특사경의 전문영역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특허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우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거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인에게 특허출원시 관계 법령상 그러한 사정을 특허관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도 없는 이상, 특허출원시 이를 특허관청에 알리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례¹²⁶⁾와 같이, 특허법 고유의 법리에 대한 이해도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술특사경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즉, 특허출원인 등의 행위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출원,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등 특허법상 주요 법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바, 일반 사법경찰보다는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라) 양벌규정(제230조)

특허법 제230조¹²⁷⁾에서는 침해죄(제225조 제1항), 허위표시죄(제228조), 거

125)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수취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12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127)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짓행위의 죄(제229조)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과 같이 침해죄만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한다면 양벌규정까지 직무범위로 확대할 필요나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표시죄(제228조)와 거짓행위의 죄(제229조)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에 대한 양벌규정만을 다시 일반 사법경찰의 직무범위로 분리시킬 필요나 실익은 없을 것이다.

즉, 양벌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범죄행위가 일어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일반 사법경찰의 형사법적 고유영역이라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족한 것이다.¹²⁸⁾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부분이 입증이 어려우면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¹²⁹⁾도 특별히 일반 사법경찰만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거짓행위의 죄와 마찬가지로 현행 사법경찰 직무법에서는 특사경의 직무범위로 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도 특사경의 직무범위로 명시한 규정이 있다.

0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39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12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12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현장 엔지니어인 피고인 1의 산업기술 부정사용 및 공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7 주식회사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참고.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¹³⁰⁾에 규정된 범죄

결국 허위표시죄(제228조)와 거짓행위의 죄(제229조)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포함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양벌규정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2단계 - 기술특사경 직무범위의 확립

1)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직무범위 포함 필요성

앞에서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규정 자체를 기준으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 규정 보완 및 확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서 본 직무범위 확대방안도 현행 규정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전반에 이르지 못하고 그 중에서 특정 행위만을 규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그와 같은 규정 방식이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부정적 시각을 최소화하고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허나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기술과 디자인 등 특수 분야의 전문성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추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 사무를 할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직무범위를 확대한 2018년 법 개정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직무범위 포함의 방향

130) 제1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1조제1항 또는 제1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전반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그 입법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는 직무범위 자체를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적용대상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가)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어느 범위까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다만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제3조 제1호), 지식재산권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3호).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기본법의 정의 규정을 토대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

이러한 입법방식은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여 기술특사경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가 입법되더라도 별도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없이 관련 범죄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그 적용범위와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하고 현행 법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이러한 입법방식보다 아래와 같이 대상 법률들을 명확히 한정하는 입법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구체적인 적용법률들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되 그 해당 법률들을 한정적으로 명확히 입법하는 방안이다. 우선 이러한 입법형태에 대해서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9호 및 제25호를 참고해 볼 수 있다.

19. 제5조제22호¹³¹⁾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물환경보전법」

...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5. 제5조제28호¹³²⁾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이와 같이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전반을 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앞에서 본 제19호 및 제25호 이외에도 그와 같은 입법 형태는 제6호, 제7호, 제10호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6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2 등 적용법률을 한정하지 않고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상황하에서 발생한 범죄를 특사경의 직무범위로 규정

131)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32)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입법 형태와 기술특사경의 전문성과 담당 업무의 특유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그와 같은 형태로 입법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기술특사경의 도입 취지와 전문성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서라도 그와 같은 포괄적인 방식의 입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 대상 법률의 확정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담당 법률 관련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 대상 법률들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현행 규정에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이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법은 기술특사경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포함시킴이 타당하고, 추가적으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도 함께 직무범위에 추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규정에서 산업재산권법 이외에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동법 제15조¹³³⁾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작용한다. 판례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¹³⁴⁾ 헌법재판소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 후자는 전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판시하는 것¹³⁵⁾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재산권법의 관

133)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30., 2013. 7. 30., 2021. 12. 7.>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 7. 30., 2018. 4. 17., 2021. 12. 7.>

13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135)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99헌바77 전원재판부.

계, 부정경쟁방지법 적용대상의 특징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전반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법 4개와 부정경쟁방지법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법률들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우리 민사소송법 제24조¹³⁶⁾ 제1항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4개의 권리를 통칭하여 “특허권등”이라 하면서 특별재판적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⁷⁾ 즉, 산업재산권과 품종보호권을 같은 성격의 권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해 볼 때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39호에서 “39. 제5조 제42호¹³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136)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5. 12. 1.>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 12.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137)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138)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의 포괄적인 직무범위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반도체설계법)」

반도체설계법 제45조 이하에서는 특허법과 유사한 침해죄(제45조), 거짓 표시의 죄(제46조), 속임수 행위의 죄(제47조), 비밀누설의 죄(제48조), 양벌규정(제49조)을 두고 있다. 동법의 적용대상인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하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하고(제2조 제1호),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하며(제2조 제2호),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¹³⁹⁾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제2조 제5호).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적용대상인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권접권(著作隣接權)·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범위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의 현황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법 관련 범죄를 기술특사경

139)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①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의 발급, 배치설계 등록사항의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직무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앞서 본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과는 달리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4)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

이상의 검토 내용들을 토대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담당 법률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특허법」

나. 「실용신안법」

다. 「디자인보호법」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¹⁴⁰⁾

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반도체설계법)」

다. 3단계 - 기술특사경 직무범위의 확대

1) 지식재산권법 이외의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직무범위 확대의 필요성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지식재산권 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면 그 자체로 기술특사경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기술특사경이 다루는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가 지식재산권법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 위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단지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서 배제시킨다면 이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과 권리자의 실효적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특허청 기술경찰의 직무범위가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일부 부정경쟁행위 관련 범죄에 국한되어 있어, 지식재산침해범죄의 복합화 양상 및 기술수사 전문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수요 대응, 수사 효율성 확보 등에 한계가 존

14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자목(형태모방) 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재하므로 기술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외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¹⁴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 범죄¹⁴²⁾에도 중첩되어 해당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¹⁴³⁾ 직무범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죄에 국한되어 관련 he범죄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¹⁴⁴⁾

【 기술유출 수사시 영업비밀 침해 외 he범죄 수사 제외의 문제점】

- ▶ **(수사의뢰단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등 중요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 고소 내용에 산업기술 침해, 업무상배임 등 he범죄 포함시 기술경찰 형사입건 불가
 - 고소장에 he범죄 삭제요청후 영업비밀 침해만 수사하거나, 고소장 반려 후 일반경찰 이송, 검찰직고소를 권유할 수 밖에 없어 전문수사 실효성 부족
 - * 기술경찰은 영업비밀 침해만 수사가능하여 실제 기술유출 범죄의 복합화 양상에 적극 대응이 어렵고 전문성, 전국관할 등의 이점으로 기술수사 전문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 부응에 한계
- ▶ **(수사단계)** 기술유출 수사시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초기 침해증거 확보가 관건이나, 업무상배임 등 he범죄 수사 불가로 수사관의 적극적 영장신청이 어렵고 법원의 영장발부 가능성 하락도 우려, 결국 범죄자 처벌가능성도 낮아짐
 - * 기술유출 수사시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비밀관리가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상배임 등 he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신청도 필요할 수 있으나 기술경찰은 불가능
 - 송치 후 검찰판단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및 경찰이송도 가능하나, 검찰직접수사 축소 경향, 일반경찰 관할 문제, 전체 수사기간 지연 등의 기타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직무범위 포함 문제를 살펴본다.

2)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41) 산기법위반 형사판결의 54%에서 영업비밀 침해도 동시 판단됨('15~'19, 공개 1심판결 기준)

142) 퇴직직원 영업비밀 불법취득·유출 등은 업무상배임, 퇴직직원 회사 중요정보 삭제·포맷·인수인계거부 등은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등에도 해당 가능하다.

14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절도죄 부정) 참고.

144) 2022. 8. 26., 제1회 규범분과회의 이원재 위원 자료.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적용대상인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달리 그 적용대상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¹⁴⁵⁾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¹⁴⁶⁾

145)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6. 10. 27. 제정(2007. 4. 28. 시행)되었다.

14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5. 1. 28.>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¹⁴⁷⁾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¹⁴⁸⁾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된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한다.¹⁴⁹⁾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147)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기술들과 관련하여 특허로 등록되어 공중에 기술 일부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기술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4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14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은 행정기관장에 의해 지정·고시 등의 방법으로 다수인에게 공지되는데 반해 영업비밀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으며, 비밀로 관리되어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만약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로 지정·고시·공고된 기술이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요건 또한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합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¹⁵⁰⁾ 또한 영업비밀침해가 문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침해가 확인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비밀침해 여부만을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하고 관련되어 확인된 산업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권리자 보호에서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침해에 비해 산업기술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기술특사경이 병행하여 처리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이나 기업 등 특정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문제와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관리되는 산업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다루는 영역으로서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등과 기술특사경이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특사경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업무상 배임죄

2017년 판결 분석 자료 및 2017~2019년 판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사건 중 영업비밀 침해가 경합적으로 적용된 사건의 비율이 70%(259건/369건)에 이른다. 즉,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

150) 김용섭,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2018, 610면.

임직이 관련하여 문제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기술유출사건에서 부경법위반(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동시 수사 필요성】

① 경합범죄의 비율이 높음

* '15-'16 선고기준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에서 부경법위반만 다룬 사건(184건)에 비해 업무상배임과 함께 다룬 사건(259건) 및 업무상배임만 다룬 사건(110건)의 수가 2배이상 높음

② 비밀관리 입증부담이 없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 실효적 처벌 가능

[표80]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무죄 결과와 업무상 배임 유무죄 결과 간의 관계

영업비밀 침해 유죄, 업무상배임 유죄	영업비밀 침해 유죄, 업무상배임 무죄	영업비밀 침해 무죄, 업무상배임 유죄	모두 무죄
199	3	33	23

③ 기술유출수사에 필수적인 압수수색 영장 신청/청구 등 수사효율성 확보에 필요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의 특성상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 등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즉, 하나의 행위가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배임죄 모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되며 그 경우 판례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함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죄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¹⁵¹⁾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

15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하였다.¹⁵²⁾

한편, 배임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¹⁵³⁾ 따라서 영업비밀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침해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영업비밀침해 관련 범죄로 한정하게 되면 관련되어 확인된 업무상 배임죄만 분리하여 일반 사법경찰의 처분에 맡기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또한 수사 개시시점에는 대상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영업비밀 해당성 또는 업무상 배임죄 해당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범죄만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한정하게 되면 해당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 처리의 능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4)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의 입법 방향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일반 사법경찰과의 업무분장 문제, 다른 특사경에 비해 기술특사경의 권한 비대화,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등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사건종결권을 가진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언제나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식재산권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된 범죄까지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

15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15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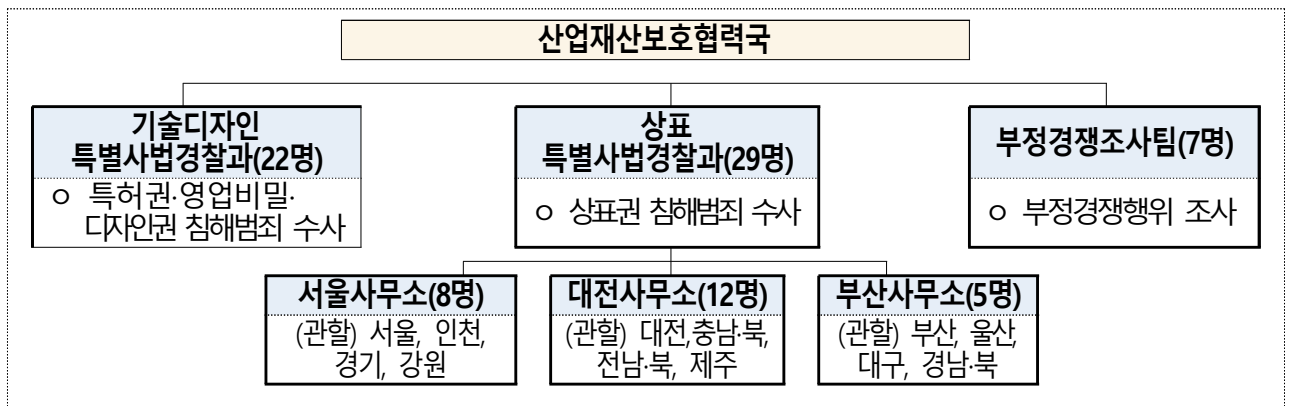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견해를 불식시키고 기술특사경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를 기술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킨다면 그 대상을 ‘영업비밀 침해와 직접 관련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범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가.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내 2개과(기술경찰, 상표경찰) 총 51명의 수사관으로 구성·운영중이고,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단속사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 외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는 발명진흥법상 근거마련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중이다. 즉, 법 개정 전에는 상표권 침해 단속사무만을 지원하였는데, 법 개정 후 상표권 뿐만 아니라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 단속사무도 속하게 되었다. 즉, 현재재 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영업비밀 유출 피해 기업 요청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¹⁵⁴⁾

따라서 수사보고체계 내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를 차단하고, 디지털화 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집행하므로,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통상적인 보고체계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

-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직속으로 운영
- ▶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 : 장관 직속의 환경조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운영
-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차장 직속 기관으로 운영

154) (예산) 1,299백만원, (인력) 7.5명, (처리건수) 96건('21년), 100건예정('22년) .

또한 압수·수색하여 수집한 방대한 자료 중 민감정보(개인정보 등)를 제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증대할 필요도 있다.

나. 추진 과제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가칭)첨단과학수사지원센터 신설

현재 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포렌식 업무를 첨단과학수사지원센터로 이관하고, 신설센터에 특사경 수사업무지원 총괄업무 부여한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피해 기업대상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 및 기술경찰 요청 사실관계 확인자료 분석사무 지원 등 총괄부서를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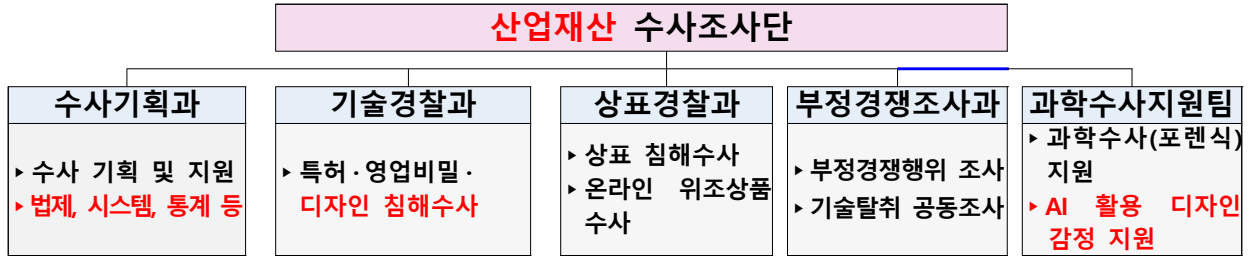


기술경찰 수사업무 지원을 위해 AI를 활용한 디자인·설계도면 유사도 분석 등 첨단수사 지원부서를 확충한다.

2) 수사독립을 위한 별도의 산업재산 수사조사단 설치

특허청장(또는 차장) 직속 산업재산 수사조사단 설치를 통한 특사경 수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산업재산수사조사단을 신설하고, 기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을 조사단 소속으로 이동한다. 기획수사 총괄, 특사경 관련 법제도 분석, 수사지원시스템, 각종 통계 등을 관리하는 수사기획과를 신설한다. 전자적 자료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업무 및 지식재산보호원의 수사지원(단속사무 및 포렌식)업무 총괄하는 과학수사지원팀을 신설한다.

[그림] 특사경 수사단 설치에 따른 조직도



2.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기술범죄는 다양한 수사기관(일반사경, 특사경, 검찰)에서 수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사업무의 특성상 상호 업무 연계에 한계가 있다. 특허청 전문 인력(과장급)의 검찰파견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수사업무는 국정원 제보가 수사 성공여부 결정하므로, 수사기관은 국정원과의 협업하고자 한다. 한편, 산업스파이(피의자)의 해외 출국, 기술범죄 수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기술범죄에서도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2022년 유럽지식재산 범죄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환경의 온라인화 및 암호화페로 범죄수익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국내 검찰, 수사기관, 방첩기관 및 국외 수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기술침해의 단계별, 기술 침해 발생지에서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침해 및 범죄은닉자금의 국외유출 등 국가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외국 수사기관과의 수사 공조 및 정보 공유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과제

1) 기술범죄 전담 검찰과 협업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자문관 파견 확대 및 침해의심 화학물질 등의 시험분석 감정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수원지방검찰에 파견된 수사자문관을 별도 정원으로 전환 및 증원을 추진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신규파견자의 증원을 추진한다.

2) 기술범죄 수사기관 간 협업

기존 협의회에 관세청을 추가하여 통관에서 국내유통 단계까지 기술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관세청과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국경(세관) 및 국내 유통 단계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기술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경기도, 서울 등 자자체 특사경과 업무협력을 한다. 즉, 자자체 특사경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기술침해 관련 신고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안내하도록 업무협력을 맺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방첩기관 등이 공동 주관하는 기업 협의회¹⁵⁵⁾에 기술경찰이 참여하여 신속한 기술유출 사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교류하도록 한다.

3) 행정기관 간 협업

기술경찰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지재권침해 사건 등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고,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무지원단,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기부와 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기술경찰은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신고로 접수된 지재권침해사건 정보를 수사 단서로 활용하고, 무역위는 침해판정시 수출·수입·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 무역위와도 협업한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시 특허청에 사실을 통보하고, 특허청은 관련 정보를 기획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4) 해외기관과 협업

155) (예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협의회(경기도, 경기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국정원(산업기밀보호센터), 경기중기청 등) 참여.

○ 범죄자 추적, 신변인도 등 수사 공조

-산업스파이가 관광비자 등을 통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도과시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외국의 이민법을 통한 국외 추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스파이 국외 추방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곤란하나, 외국 수사기관을 통한 피의자 기초 정보(아이디 계정 등)를 입수하여 수사에 활용침해품의 해외 판매서버(해외에서 국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곤란하나, 외국 수사기관을 통한 피의자 기초 정보(아이디 계정 등)를 입수하여 수사에 활용)정보 입수를 위한 인터폴(인터폴 적색수배(강력범죄, 조직범죄 외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사회적 파장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중요사범 등) 등을 활용하여 해외 출국 피의자 검거 등 활용),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국제공조 협력을 추진한다. 한편, 기술안보분야에서도 인터폴, 미국(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수사국 HSI 등)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스파이,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보공유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3. 수사전문인력의 확보

가. 현황 및 필요성

디지털포렌식은 일반적으로 디스크포렌식, 모바일포렌식, 네트워크포렌식, 데이터베이스포렌식, 음성영상포렌식, 스테가노그래피포렌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⁵⁶⁾. 디스크포렌식은 HDD, SSD, USB 등 보조기억장치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로 디지털포렌식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발전된 분야이다¹⁵⁷⁾. 디스크에서 삭제된 파일 복구, 키워드 검색을 통한 단서 추출, 잘못된 확장자로 은닉한 데이터 확인, MAC 시간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¹⁵⁸⁾. 모바일포렌식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 휴대용 기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기술이다¹⁵⁹⁾.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총 분석 의뢰 건수 63,935건 중 모바일포렌식 건수가 52,479건으로 83%를 차지하였다¹⁶⁰⁾.

156) 곽나연 외4인, 메타스터디를 통한 국내 디지털 포렌식 연구 동향, 정보화정책, 24(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91-107면, 2017.

157) 전상덕, 한기준, 홍동숙,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13(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19면, 2006.

158) 전상덕, 한기준, 홍동숙,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13(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19면, 2006.

159) 김도현, 이상진, 모바일 포렌식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6(5), 한국정보보호학회, 22면, 2016.

통화기록, 문자기록, 위치정보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훼손이 쉽다¹⁶¹⁾. 네트워크포렌식은 네트워크상 전송된 패킷을 특정 도구를 사용해 수집하거나 서버에 기록된 로그를 통해 단서를 찾는 유형이다¹⁶²⁾. 해킹, DDoS 공격, 악성코드 유포 등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행되는 공격 탐지 및 분석에 활용된다. 데이터베이스포렌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며 주로 기업 내부 시스템을 조사할 때 활용한다. 기업은 ERP, CRM, SCM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업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¹⁶³⁾. 음성영상포렌식은 CCTV, 블랙박스 등 음성과 영상 수집, 분석에 활용된다. 손상된 미디어의 복구, 추출 등을 수행하며 협박 전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사 또는 위변조 탐지로 저작권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¹⁶⁴⁾. 스테가노그래피포렌식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적용된 파일을 탐지하고 분석할 때 사용한다. 스테가노그래피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일반적인 파일에 숨기는 암호기술이다¹⁶⁵⁾.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암호와 차이가 있다¹⁶⁶⁾.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어 탐지가 어렵다. 특히, 사업기술이나 특허 등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유출범죄에서 은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他기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조직 현황 >

- ◆ (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
* '08년 10월부터 운영 시작하여 현재 총원 150여명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내에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치·운영
* '00년부터 운영 시작하여 현재 총원 170여명
- ◆ (공정위) 경쟁정책국 디지털조사분석과가 공정위 내 타부서 조사 지원
* '17년 8월 신설 정원 22명 중 15명을 6·7급 포렌식 전문가 특채로 채용하여 운영, 연간 약 400건 처리
- ◆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운영
* '20년 2월에 개소, 정원 8명 중 포렌식 전문가 6명

16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증거분석현황”, 2021.

161) 김영준, 김완주, 임재성, 무결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모델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0(3), 한국정보보호학회, 417-428면, 2020.

162) 이상복,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법·제도적인 개선방향, 서강법학연구, 10(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39-178면, 2008.

163) 이동찬, 이상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추출 기법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2(3), 한국정보보호학회, 565-573면, 2017.

164) 박남인 외3인, 보이스피싱 음성 파일에 대한 법과학적 화자 분석 방법의 적용 사례, 디지털 포렌식 연구, 13(1),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35-44면, 2019.

165) 이철, 김용만, 유승재, 스테가노그래피를 활용한 정보은닉 응용기법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0(2), 한국융합보안학회, 19-26면, 2010.

166) 오소정 외6인, 안보사건에서 스테가노그래피 분석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한국정보보호학회, 32(4), 723-736면, 2022.

범죄 고도화·지능화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능 강화 및 최신 수사 기법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고 삭제·은폐된 정보를 복원·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검찰·경찰 뿐 아니라 행정기관(공정위·문체부 등)도 디지털포렌식 전담 조직·인력을 운영하여 행정조사 및 특사경 수사에 활용 중이다. 영업비밀 포렌식 대상 정보는 탈취 시점에 이미 삭제·은폐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고도화된 포렌식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현재 특허청 특사경 포렌식 전담인력은 1명이며, 수사관 2명이 수사업무와 병행

나. 추진과제

1)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및 일반 수사관 증원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증원을 통해 산업재산범죄 수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을 증원하여 기술경찰 내 업무분장을 세분화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과 분석관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업무를 체계화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신뢰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청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은 압수수색은 물론 증거물 기관 이송, 디지털 매체 분석까지 수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관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위해 연계 보관성을 준수하고, 법정 증언을 할 수 있어 법적 지식이 높아야 하며 각종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역량 역시 요구된다. 특히 사건에 필요한 기술 역량이 다른 점을 고려해 디스크, 모바일, 네트워크 등 디지털포렌식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모바일 분석관은 수집된 모바일 매체 분석만을 전담하고, 해당 분야의 신기술을 빠르게 습득해야 한다. 분석관은 증거분석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교육, 연구개발, 행정 등 부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각자 특화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구성한 팀이 개설된다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관할 사건을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업무관리로 핵심 업무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다.

2) 최신 수사기법·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인력 도입

수사기획팀의 신설에 따라 수사 기획, 특사경 관련 국내외 법제도 및 통계 수집·조사·분석,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연구인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의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업무에 종사한다. 또한 고소인, 피고소인 간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 검토를 위한 실무가 출신 연구인력 충원이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변호사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제5장 심층분석 주제

제1절 디지털포렌식 수사 강화 방안

1. 디지털 포렌식의 의의

가.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디지털포렌식은 ‘법정의’, ‘법과학의’란 뜻의 Forensic에서 시작한 것으로 포렌식이란 증거의 획득부터 과학적, 기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증거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¹⁶⁷⁾.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죄에서 디지털화된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 분석하는 기술’¹⁶⁸⁾,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근거로 삼아 그 매체로 하여 일어난 어떤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기법’¹⁶⁹⁾,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에 기록된 로그나 파일시스템 정보 등의 전자적 기록을 조사·분석하는 기술’¹⁷⁰⁾이라 정의한다. 해외에서는 ‘디지털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련의 제반 행위’¹⁷¹⁾나 ‘합법적 방법으로 디지털증거를 식별(identifying), 보존(preserving), 분석(analyzing), 제출(presentation)하는 과정’¹⁷²⁾처럼 매체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제출하기까지 모든 절차를 개념에 포함하기도 한다.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훈령)에서 ‘전자정보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예규)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라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3항), 특허청은 경찰과 검찰 규정의 정의와 유사하게 디지털증거의

167) 손지영, 김주석,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8), 2015.

168) 이광열 외4인,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포렌식 절차, 정보보호학회지, 18(3), 한국정보보호학회, 81-91면, 2008.

169) 류보라 외4인, 디지털증거능력 확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연구동향 메타분석, 융합보안논문지, 17(2), 한국융합보안학회, 23-32면, 2017.

170) 이인곤, 형사절차상 디지털포렌식 활용방안에 관한 소고, AI와 인간사회, 2(2), 호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15-169면, 2021.

171) 정호준, 유진호, 영업비밀 침해 입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에 관한 연구: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6(2), 29-55면, 2016.

172) R. McKemish, "What is Forensic Computing?",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Trends, 118, 1999.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예규)에서 ‘디지털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3항).

나. 디지털포렌식의 유형

디지털포렌식은 일반적으로 디스크포렌식, 모바일포렌식, 네트워크포렌식, 데이터베이스포렌식, 음성영상포렌식, 스테가노그래피포렌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⁷³⁾. 디스크포렌식은 HDD, SSD, USB 등 보조기억장치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로 디지털포렌식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발전된 분야이다¹⁷⁴⁾. 디스크에서 삭제된 파일 복구, 키워드 검색을 통한 단서 추출, 잘못된 확장자로 은닉한 데이터 확인, MAC 시간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¹⁷⁵⁾. 모바일포렌식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 휴대용 기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기술이다¹⁷⁶⁾.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총 분석 의뢰 건수 63,935건 중 모바일포렌식 건수가 52,479건으로 83%를 차지하였다¹⁷⁷⁾. 통화기록, 문자기록, 위치정보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훼손이 쉽다¹⁷⁸⁾. 네트워크포렌식은 네트워크상 전송된 패킷을 특정 도구를 사용해 수집하거나 서버에 기록된 로그를 통해 단서를 찾는 유형이다¹⁷⁹⁾. 해킹, DDoS 공격, 악성코드 유포 등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행되는 공격 탐지 및 분석에 활용된다. 데이터베이스포렌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며 주로 기업 내부 시스템을 조사할 때 활용한다. 기업은 ERP, CRM, SCM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업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¹⁸⁰⁾. 음성영상포렌식은 CCTV, 블랙박스 등 음성과 영상 수집, 분석에 활용된다. 손상된 미디어의 복구, 추출 등을 수행하며 협박 전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사 또는 위변조 탐지로 저작권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¹⁸¹⁾. 스테가노그래피포렌식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적용

173) 곽나연 외4인, 메타스터디를 통한 국내 디지털 포렌식 연구 동향, 정보화정책, 24(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91-107면, 2017.

174) 전상덕, 한기준, 홍동숙,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13(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19면, 2006.

175) 전상덕, 한기준, 홍동숙,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13(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19면, 2006.

176) 김도현, 이상진, 모바일 포렌식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6(5), 한국정보보호학회, 22면, 2016.

17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증거분석현황”, 2021.

178) 김영준, 김완주, 임재성, 무결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모델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0(3), 한국정보보호학회, 417-428면, 2020.

179) 이상복,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법·제도적인 개선방향, 서강법학연구, 10(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39-178면, 2008.

180) 이동찬, 이상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추출 기법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2(3), 한국정보보호학회, 565-573면, 2017.

된 파일을 탐지하고 분석할 때 사용한다. 스테가노그래피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일반적인 파일에 숨기는 암호기술이다¹⁸²⁾.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암호와 차이가 있다¹⁸³⁾.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어 탐지가 어렵다. 특히, 사업기술이나 특허 등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유출범죄에서 은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산업재산범죄의 실태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국제 특허 출원(PCT) 현황에서 20,676건으로 4위를 차지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크다¹⁸⁴⁾. 국내 특허 출원은 2021년 592,615건으로 전년 대비 6.3%가 증가했고 등록은 341,873건으로 12.6%가 증가하였다¹⁸⁵⁾. 지식재산 활동이 활발한 이면에는 국내 기업의 기밀자료가 유출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특허청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의 경제적 피해는 GDP의 1~3%에 이른다. 우리나라 보안 수준을 고려하면 최대 60조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가 추정된다¹⁸⁶⁾. 특히, 감염병 등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개인 매체에 영업자료를 보관하는 등 보안이 취약해지고 영업비밀 유출도 증가하였다¹⁸⁷⁾.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5년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된 기술유출사건은 1,170건, 2016년 1,285건, 2017년 1,321건으로 이후 1,300여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72.7%가 내부인이 유출하였고 2020년 991개 기업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9.3%가 유출 피해를 당했으며 평균 12.8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¹⁸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2월부터 19일까지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01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317명을 검거하였다¹⁸⁹⁾.

181) 박남인 외3인, 보이스피싱 음성 파일에 대한 법과학적 화자 분석 방법의 적용 사례, 디지털 포렌식 연구, 13(1),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35-44면, 2019.

182) 이철, 김용만, 유승재, 스테가노그래피를 활용한 정보은닉 응용기법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0(2), 한국융합보안학회, 19-26면, 2010.

183) 오소정 외6인, 안보사건에서 스테가노그래피 분석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한국 정보보호학회, 32(4), 723-736면, 2022.

184) 특허청, 2021 지식재산 통계연보, 2021년 세계 국제 출원 현황

185) 특허청, 2021 지식재산 통계연보,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동향

186)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2021)

18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실패로 배우는 지식재산 경영전략”, 2020.

188)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안)”, 2021. 12.

189) 경찰청(2022.11.28. 보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결과 발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21128074145295 (2022.11.29. 최종확인)

[표 39] 기술유출 형사사건 현황(출처 :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특허청)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명)	영업비밀보호 법 (누설 통계만 산출)	국내	1,088	1,207	1,204	1,072	1,153
		국외	47	37	49	116	83
		소계	1,135	1,244	1,253	1,188	1,236
	산업기술보호법		35	41	68	136	115
	합계		1,170	1,285	1,321	1,324	1,351

대표적으로 2021년 스마트팩토리 도면 등을 일본기업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5명을 특허청이 검거하였고¹⁹⁰⁾ 2022년 세메스의 전(前) 직원이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정보를 이메일 전송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¹⁹¹⁾. 한편, 2018년 미국에서는 제너럴일렉트릭(GE)사에서 중국계 미국인이 평범한 노을 사진에 데이터를 은닉하는 스테가노그래피 수법을 사용¹⁹²⁾하여 영업비밀 관련 파일 수천 개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¹⁹³⁾.

영업비밀은 특허보다 요건이 비교적 제한적이지 않고 유연한 기술 보호 전략을 세울 수 있어 기업들 사이에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¹⁹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업무로 자리 잡았으며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국가보안 요소로 국내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업비밀 유출범죄에서 브로커를 통한 자료·인력 유출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⁹⁵⁾.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 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검토하였으나 간첩죄의 양형기준이 높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주장이 있고¹⁹⁶⁾ 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통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¹⁹⁷⁾.

190) 서울경제(2022.10.01. 보도), '기술유출 지키미 '특허청 특사경'...잠복수사에 압수수색까지', <https://m.sedaily.com/NewsView/26C6JGAO9X#cb> (2022.11.22. 최종확인)

191) 서울경제(2020.06.06. 보도), '삼성 자회사 기술 빼내 중국기업에 팔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52SRTL2> (2022.11.20. 최종확인)

192) 서울신문(2018.08.05. 보도), '중국 산업 스파이 속속 체포결과 발표하는 미국 FBI',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5500031> (2022.11.22. 최종확인)

193) SecurityOnDemand (2018.08.09. 보도), 'Insider uses steganography to steal trade secrets for China', <https://www.securityondemand.com/insider-uses-steganography-steal-trade-secrets-china/> (2022.11.22. 최종확인)

194)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안)", 2021. 12

195) 김항곤, 이창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시큐리티연구, 57, 한국경호경비학회, 253-276면, 2018.

196) 김항곤, 이창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시큐리티연구, 57, 한국경호경비학회, 253-276면, 2018.

197) 이상은, 정보보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한편,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여 경제·정치적 개편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22년 미국은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여 자국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¹⁹⁸⁾.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추진해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에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¹⁹⁹⁾. 또한 다자·양자 협상 시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 자국의 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영업비밀에 대한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산업스파이 색출 정책 China Initiative(미국), 경제안보 담당 임원 신설(일본) 등 국가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다²⁰⁰⁾.

3. 특허청 디지털포렌식 대응 및 한계

가. 특별사법경찰 조직 및 인력

최근 범죄수사의 전유물이었던 디지털포렌식이 안보사건과 테러, 회계·감사, 민사·행정소송에 활용²⁰¹⁾되면서 관세청, 특허청 등 각 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채용하고 전담조직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2010년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으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출범하였고 2019년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였다²⁰²⁾. 2021년 조직개편으로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와 상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였고 기술디자인과 상표침해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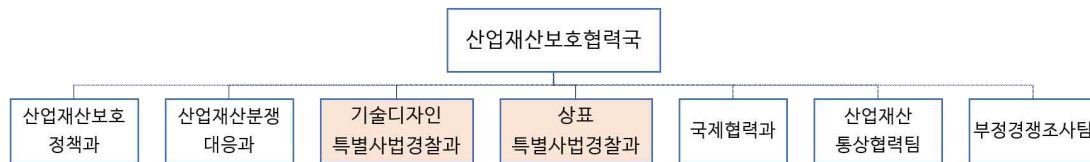
198) 서울경제(2022.07.28. 보도), ‘美상원 ‘520억弗 반도체법’ 통과…신규 투자에 최대 30억弗 보조금’,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P3ZBFJ0> (2022.11.22. 최종확인)

199) 한국일보(2022.05.11. 보도), ‘일본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 2023년부터 시행’,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115540004929?did=GO> (2022.11.23. 최종확인)

200)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안)”, 2021. 12

201) 차경엽, 이상진, 감사업무에서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 제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202) 특허청 (2020.09.15. 보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 지식재산 침해 “꼼짝마”’,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parntMenuCd2=SCD0200052&prchId=BUT0000029&pgmSeq=18454&ntatcSeq=18454> (2022.11.19. 최종확인)



[그림 60]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조직도(출처: 특허청)

2022년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사경 25명, 상표특사경 28명으로 총 53명의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은 2022년 기술디자인특사경 소속으로 1명을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및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나. 특별사법경찰 운영

특허청 특사경은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상표권 침해, 영업비밀 누설과 같이 산업재산범죄를 수사한다. 특사경(기술)은 2021년 11월 기준 476건(누적)의 산업재산범죄를 수사해 888명을 입건하였다²⁰³⁾. 또한 기존 특사경(기술)의 직무 범위는 영업비밀(무단 취득·사용·누설 행위만 수사), 특허권, 디자인권으로 한정되어²⁰⁴⁾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영업비밀 침해의 미수 및 예비·음모에 관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허청은 산업기술 유출, 실용신안권 침해 등 기술침해범죄 전반을 수사범위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²⁰⁵⁾ 2021년, 2022년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범위 확대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2건도 발의되었다²⁰⁶⁾²⁰⁷⁾. 이처럼 각 계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사경(기술)의 직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 운영

203) 서울경제(2022.03.28. 보도), ‘특허청 기술경찰, 영업비밀 침해범죄 수사권 확대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LE2WK6H> (2022.11.22. 최종확인)

204) 특허청, “2022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2022)

205) 특허청, “2022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2022)

206) 의안정보시스템(2022.03.31. 제안), ‘[21150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A2L0M2T1R0A1B0A4S0M3O3O0T6E0 (2022.11.23. 최종확인)

207) 의안정보시스템(2022.03.31. 제안), ‘[211398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Q1U1Y2M1P0N1F7O2D7Q1Q8N4Y0B0 (2022.11.23. 최종확인)

디지털포렌식은 영업비밀이나 상표디자인 침해 등의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2021년 특허청 특사경(기술) 디지털포렌식 분야 채용 시 주요 업무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 업무 및 디지털증거 관리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특사경(상표)의 업무에서 포렌식 지원요청 시 수행하고 있다. 22명의 특사경 중, 1명이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이다. 특허청의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은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외에도 장비 관리, 장비 보급 계획수립, 예산 관리 및 계획 등 행정적 처리도 병행하고 있다. 22명의 특사경이 연간 158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 이중,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은 모든 사건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투입되고 압수수색 건수 기준으로 평균 연간 15건을 다루고 있으며 1건당 대상지가 여러 장소일 수 있고 한 장소당 보통 8~10대 정도의 매체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⁰⁸⁾. 업무량을 분석하면 월간 분석 매체는 20여 건이고 디지털증거 수집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까지 1개 사건만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라. 한계

특허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을 겪었음에도 미조치하는 이유는 증거수집 및 피해입증을 하는데 어려워서라고 답하였다²⁰⁹⁾.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의 디지털 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을 확인하여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디지털 매체 약 30건을 압수하였는데 혐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²¹⁰⁾. 또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후 사용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수집해 위법수집 증거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²¹¹⁾. 이처럼 디지털포렌식 기초절차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은 법률적, 기술적 지식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보다 현장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담인력이 분석 업무만 수행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사건에 대한 처리를 병행하게 된다. 동시에 현장수사

208)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진승택 수사관 인터뷰(2022. 11. 23.)

209) 특허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설문 조사”, 2021.

210)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

2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7.26. 선고 2018노196 판결

지원, 관련 행정업무, 보고, 내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이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한 연구, 분석기술 개발, 사건 관련 매체 분석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나아가, 진화되는 범죄수법과 기술 수준, 사건증가에 1인으로는 전략적으로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이 기술디자인, 상표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모든 업무를 부담하기에는 공통적인 컴퓨터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이 있는 인원을 투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유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직인력 운영과 비교

가. 경찰청

경찰청은 2021년 기준 관리직과 행정직을 포함해 총 224명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을 보유하고 있다²¹²⁾. 분석관들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각 시도청의 디지털포렌식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디지털증거 분석 건수는 2019년 56,428건, 2020년 64,224건, 2021년 75,41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분석 매체 건수를 산정하면 평균은 336.7건이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의 과한 업무 부담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인력증원에 노력하고 있다²¹³⁾. 한편,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과를 총괄로 하여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세종경찰청 제외) 안보수사과 산하에 산업기술보호 수사대에서 영업비밀 유출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익명신고도 접수하는 등 보복 우려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 검찰

검찰은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 영업비밀 전담 검사를 두고 영업비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은 과학수사부(디지털수사과) 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유출범죄 신고접수 및 전문수사관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

212) 공공데이터포털, 2021 경찰청_시도경찰청 분석관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84208/fileData.do> (2022.11.23. 최종확인)

213) 김기범 외4명, 경찰 디지털 포렌식 조직의 재설계 및 적정 업무량 분석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22

축 등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은 디지털수사과에서 전담하며 전국 디지털수사망(D-NET)을 통해 일선 수사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는 37명의 수사관이 배치되고 서울고검 7명, 서울중앙지검 10명, 부산고검 8명, 대구고검 5명, 광주고검 6명, 대전고검 7명, 서울남부지검 5명, 서울북부지검 4명, 인천지검 5명, 수원지검 6명, 춘천지검 2명, 창원지검 3명 총 105명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을 보유하고 있다²¹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건수는 2018년 11,225건, 2019년 11,865건, 2020년 8,684건으로 평균 10,500여건을 처리하였다. 1인당 연간 분석 매체건수는 약 82.7건으로 현장지원이나 도구·기법개발 등 연구와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급증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요에 맞춰 인력 충원 등을 검토 중이다²¹⁵⁾.

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저작권법 개정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전담한다²¹⁶⁾. 2018년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반 수사지원팀을 조직하였다²¹⁷⁾.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저작물이 불법 복제될 수 있어 24시간 365일 체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관하고 수사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증기관 ANAB으로부터 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하며 그 기술력과 입지를 견고하게 정립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²¹⁸⁾. 2022년 기준 침해대응본부 과학수사지원부에는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명이 디지털포렌식 기술지원을 수행한다²¹⁹⁾. 또한, 과학수사 공조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과 함께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한다²²⁰⁾. 2020년 과학수사지원부의 저작권 침해 디지털포렌식 지원 건수는 512건으로²²¹⁾, 1인당 평균 73.1건의 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호원은 최신장비를 마련하여 상시 대

214) 대검찰청, 2021년 검찰연감

215) 서울경제(2022.07.17. 보도), ‘검찰, 포렌식 참관실·인력 확대 추진…'文정부 사건' 수사력 강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K2CXDQ9> (2022.11.22. 최종확인)

216) 임원선, 저작권 침해 유형과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계간 저작권, 131(1), 111-150, 2020.

217) 한국저작권보호원(2018.11.28. 보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https://www.kcopa.or.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434 (2022.11.19. 최종확인)

218) 한국저작권보호원(2020.03.02. 보도),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 국제공인 인정 획득’, https://www.kcopa.or.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1258 (2022.11.19. 최종확인)

219)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9C24/staff/org_chart/list.do?group_seq=50&parent=N&parent_seq=73#table_list, 2022.11.23. 최종확인)

220)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lay1/S1T10C227/contents.do> (2022.11.19. 최종확인)

221) 한국저작권보호원, “실명제 사업내역서”, 2021.

응하고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를 활용하여 최초 유포자 특정 및 불법 유통현황 분석,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작권 침해 범죄에 특화된 전용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 범죄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특화과정을 운영하여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근본적으로 2020년 특허청에서 진행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의 75% 이상이 디지털증거로 중요하게 활용되었고 이후, 중소기업에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업비밀보호센터를 개관하였다²²²⁾. 영업비밀보호센터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교육, 컨설팅, 기술적 지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²²³⁾. 특히 디지털증거 보존 서비스를 통해 기업 퇴사자의 디지털기기 사용기록을 보존하고 영업비밀 유출 시 포렌식 지원을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는 접수, 준비, 수집, 이송, 분석, 결과의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특히 보관 연속성을 유지하며 증거에 대해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은 5명으로 수집, 분석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²²⁴⁾. 업무 범위를 상담, 수집, 분석, 보고서 제공으로 한정하며 연간 90개 사건을 한정해 무료로 지원한다. 사건당 분석 가능 매체는 최대 10개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1인당 연간 18개의 사건을 다루고 연간 최대 180개의 매체를 분석한다. 또한 서비스 차원의 제공이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조사대상 디지털 매체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고객이 확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 비교분석 및 시사점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검찰청은 보유한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이 많지만 사건 건수가 월등히 높아 인당 분석 건수가 각각 336.7건, 82.7건에 달한다. 다

222) 정책브리핑(2021.03.25. 보도),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786> (2022.11.20. 최종확인)

223) 영업비밀보호센터, <https://www.tradesecret.or.kr/center/mainBusiness.do?gb=521> (2022.11.22. 최종확인)

22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s://www.koipa.re.kr/home/staff/view.do?menu_cd=000006&dept=7 (2022.11.22. 최종확인)

만 특허청과 비교했을 때 수사기관은 행정업무보다 분석과 연구개발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7명의 디지털포렌식 인력이 저작권 침해범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지원하며 1인당 평균 73.1건을 담당한다.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은 5명이지만 연간 90건의 사건만 접수하도록 제한하며 매체 역시 10개 이내로 받아 1인당 분석 건수는 높지 않은 편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유관기관 내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비해 특허청의 특사경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범위가 넓고 과중하다. 또한 사건을 전담하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완 및 협력해줄 인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부담이 있다.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장은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사건의 종결이 지체되는 것에서부터 파생되는 국민·기업의 신뢰와 기술적 어려움에 따른 증거능력 입증의 문제, 업무 부담에 따른 전문가 투입 한계 문제 등이 발생하여 약점이 될 수 있다.

【 他기관 디지털 포렌식 전담인력 현황 】

기관		내용	전담 인력	설치 이력
중앙 행정 기관	공정위	경쟁정책국 디지털조사분석과	15명	'17년 8월 ~
	관세청	주요 본부 세관의 과학수사센터에 포렌식 분석 인력 상주 * 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 4개 본부세관에 디지털 포렌식센터 구축	9명	'08년 11월 ~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기관(저작권보호원)에 포렌식센터를 설립하여 저작권 특사경의 증거 수집 지원	6명	'20년 2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3명	'10년 ~
지방 자치 단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수사팀	4명	'20년 1월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명	'19년 5월 ~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범죄에서 경찰과 검찰에게 지원체계를 갖춰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특사경이 배당받아 디지털 매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보고서 작성 후 수사기관에 사건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초기대응에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사건의 경우 코드를 해석할 수 있고 오픈소스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다.

은닉한 코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역시 필요하여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수사 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점으로 살펴볼 때, 지식재산범죄에서 특허청의 역할은 초기대응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기반이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기관에서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자체 도구 개발,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도 KOLAS 인정 등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연구개발에도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3. 특허청 디지털포렌식 발전방안

가. 디지털포렌식분석관의 증원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을 증원하여 팀 내 업무분장을 세분화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과 분석관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업무를 체계화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신뢰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청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은 압수수색은 물론 증거물 기관 이송, 디지털 매체 분석까지 수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관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위해 연계 보관성을 준수하고, 법정 증언을 할 수 있어 법적 지식이 높아야 하며 각종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역량 역시 요구된다. 특히 사건에 필요한 기술 역량이 다른 점을 고려해 디스크, 모바일, 네트워크 등 디지털포렌식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모바일 분석관은 수집된 모바일 매체 분석만을 전담하고, 해당 분야의 신기술을 빠르게 습득해야 한다. 분석관은 증거분석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교육, 연구개발, 행정 등 부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각자 특화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구성된 팀이 개설된다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관할 사건을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업무관리로 핵심 업무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다.

【 디지털 포렌식 업무절차 】

사전준비	포렌식 수행(영장 집행)	자료분석
• 압수수색 영장청구 준비 - 영장 청구서에 피의자별 포렌식 대상 매체 특정 • 포렌식 수행팀 구성 - 담당 수사관 및 포렌식 수행인원으로 구성 - 포렌식 대상 매체별 증거확보 전략 마련 • 포렌식 장비 점검·준비	• 현장통제 및 포렌식 대상 매체 파악 • 매체별 포렌식 수행 - 모바일 포렌식 :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의 디지털자료 복구·획득 - 디스크 포렌식 : PC하드, USB 등 저장매체의 디지털자료 복구·획득 -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 증거물 포장 및 목록 작성	• 매체별 분석용 사본 생성 및 데이터 추출 • 데이터 분류 - 매체별 추출 데이터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 • 상세분석 - 우선순위에 따라 파일 내용 및 메타정보 분석 - 인터넷 및 시스템 사용흔적 분석 •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나.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정규직 채용 전환

현행 2년 임기제인 특사경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허청 특사경이 주로 다루는 영업비밀 유출범죄는 민사소송시 1심의 기간이 490일이다²²⁵⁾. 복수의 사건을 다루는 경우, 전체 근무기간 동안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임기 마감 등의 이유로 사건의 디지털포렌식 담당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입증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또한 영업비밀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로 사건에 배정된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은 증거수집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접할 수 있는데 임기제라면 근무가 종료된 후 해당 영업비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기직은 정규직에 비해 짧은 근무일수로 책임회피의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로 다뤄져야 할 증거 취급 과정에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 정규인력을 통해 높은 책임의식과 원활한 수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 디지털포렌식 석사과정 위탁교육 지원

디지털포렌식 분석관들이 법학과 공학 전문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대학원 교육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는 경찰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체계적인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대검찰청과 연계하여 수리정보과학과를 설치하였고 검찰과 법원, 국가정보원, 국방부

225)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2021)

등 협약기관 재직자에게 법학, 공학, 암호학 교육을 제공한다. 각 기관은 학위를 지원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학위를 취득하면서 학술연구, 기법개발 등을 하게되므로 자연스럽게 기관 역량 강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석사과정 이상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분석관들은 다양한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 증거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특허청의 경우,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된 과학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디지털 포렌식 발전을 위해 역량이 높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1. 개관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것인지에 관해 선택이 필요하다.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전제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로서 계속 관리할 경우 영구히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으며,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반면, 특허는 기술 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출원 후 20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특허법 제88조 제1항).²²⁶⁾ 이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당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당해 기술이 공개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역설계(逆設計, reverse engineering)를 통해 제품의 제도가 불가능한 기술정보, 기업 경영정보 등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정보, 특허 권리화 이전 단계의 연구 아이디어 등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오늘날 기술은 기업의 가치 창출을 넘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²²⁷⁾ 이와 같이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영업비밀의 보호는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 산업의 전문화 및 세분화, 기업 간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등으로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²²⁸⁾

226)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27) 2015년 9월 일본의 新日鐵住金과 한국의 포스코 및 일본의 東芝와 한국의 SK하이닉스가 기술 정보의 부정유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한국의 포스코가 약300억 엔을,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약 330억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건이 발생하였다(齋藤憲道・岡村久道, 営業秘密を守るには-制度対応の全貌と近時の事件の教訓, NBL 1069号、2016, 14-17頁).

228) “국내 中企 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부추겨… 매년 피해 기업 늘어나”(월간조선 뉴스룸, 2019.1.27. 보도자료). 또한 2016년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조사에 따르면,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를 경험했으며, 24개 기업(3.8%)이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 피해규모는 국내의 경우 평균 21억 원, 국외의 경우 평균 17억 원으로 나타났다(김범태 외 3인,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 조사, 특허청, 2016).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해외 주요국은 국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거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²²⁹⁾ 우리나라도 2019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개정²³⁰⁾을 통해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강화하였다.

본고는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분석 : 법제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주요국의 법제도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개념 및 정의

(1)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각국의 입법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정의로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예를 들면, 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예를 들면,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를 말한다.²³¹⁾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2호).

한편, 영업비밀과 인접 개념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상 산업기술이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229)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의 제정, 유럽연합의 영업비밀지침(Trade Secret Directive)의 통과, 일본의 영업비밀 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230)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시행 2019. 7. 9.

231)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 이론편, 2011, 6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등을 말한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항).²³²⁾

(2)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공지성(비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 3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영업비밀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에는 그 정보의 비밀성을 중시하여 비밀관리성을 요구하지 않고 법적인 보호를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정보관리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실무로 정착되기에 이르러,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영업비밀성의 가장 중요한 두 요건으로 되어 소송에서도 이 점에 대한 다툼이 가장 많다. 이와 달리 유용성은 적극적인 기술적 진보(inventive step)를 의미하는 특허의 진보성과 달리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²³³⁾

1) 비공지성

해당 정보의 내용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비공지성을 다투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공지기술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비공지라고 판단되는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영업비밀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이거나, 역설계²³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비공지성이 인

23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33) 온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호[영업비밀 정의 및 비공지성], 2016.

10. 4. 게시, <https://www.onju.com/onju/service/INDEX/index.aspx>(2019.10.31. 최종접속).

정되는지 여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다.

특히 비공지성의 판단의 주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단하였고,²³⁵⁾ 하급심 판결에서도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더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²³⁶⁾

2)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비밀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 정보에 접근한 자가 그것을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²³⁷⁾

우리나라는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²³⁸⁾

3)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유용성은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를 영업비밀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소극적인 요건으로서 기능한다.²³⁹⁾ 실제 소송에서 유용성이 다투어진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

234) 우리 법에는 역설계에 대하여 정의 규정이 없다. 미국의 예를 참고하면 역설계란 ‘공지된 물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물건의 개발이나 제조에 도움이 된 공정을 알아내기 위하여 거꾸로 연구하는 것(starting with the known product and working backward to divine the process which aided in its development or manufacture)’이라고 정의된다(Kewanee Oil Co. v. Bicron Corp., 416 U.S. 470, 476, 94 S.Ct. 1879, 40 L.Ed. 2d 315(1974)). 이를 수용한 UTSA 제1조의 정의 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온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2016. 10. 4. 참고, <https://www.onju.com/onju/service/INDEX/index.aspx>(2019.10.31. 최종접속)”.

23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236) 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나15229 판결.

237) 백윤철·황흥익,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8집 제4호, 2018, 87면.

238)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시행 2019. 7. 9.

고,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²⁴⁰⁾

우리 대법원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²⁴¹⁾ 물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가 영업비밀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 금전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²⁴²⁾

(3)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죄의 요건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구제수단 외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제1항 및 제2항). 만일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침해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356조).²⁴³⁾ 민사책임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유형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분야의 기술이라면 그에 대한 침해행위는 위 법의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이하).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죄의 행위유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영업비밀 침해죄의 행위유형은 국가별 법령 비교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한국)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239) 온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유용한 정보], 2016. 10. 4.게시, <https://www.onju.com/onju/service/INDEX/index.aspx>(2019.10.31. 최종접속).

240) 小野昌延 編著, 新註解 不正競争防止法 新版 下巻, 青林書院, 2007, 776頁.

24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242) 온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유용한 정보], 2016. 10. 4.게시, <https://www.onju.com/onju/service/INDEX/index.aspx>(2019.10.31. 최종접속).

243)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국가별 법령 비교

(1) 한국

1) 영업비밀 침해죄의 요건

우리나라는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였다. 개정 전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만을 영업비밀 침해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두 가지 행위유형으로 단순화되었던

영업비밀 침해죄의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행위규범·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기업 등 수범자의 배려 측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침해죄의 행위유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²⁴⁴⁾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한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은 형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주관적 범죄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요한다. 여기서 고의는 객관적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를 의미하며, 특히 해외사용목적의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비밀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개정 전	2019년 개정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5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u>15억원을</u>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244) 조용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과 함의점,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2018, 9면.

	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신 설>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u>5억원을</u>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사적 구제수단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고(개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였다(개정법 제18조의3).

즉,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

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 조정하였다.

(2) 일본

1)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

일본에서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라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제21조 제1항 각호). 이는, 2009년 개정에 의해서, 종래의 “부정경쟁의 목적으로”를 변경한 것이다. 즉, 부정경쟁의 목적이라는 목적 요건은, 공정경쟁 질서의 유지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내부고발 등의 정당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조문상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정 경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정한 공개 등(예를 들면 외국 정부에 대한 공개 등)이, 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부정경쟁일지라도 영업비밀침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영업비밀을 더욱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 요건으로 변경된 것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다.²⁴⁵⁾

특히, 일본은 2016년 1월 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의 전득자(轉得者)처벌 범위 확대(법 제21조 제1항 제8호), 국외범 처벌의 범위 확대(법 제21조 제6항),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수출입 등의 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21조 제1항 제9호) 등 형사상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법 제21조의 제1항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45) 佐藤力哉·海野圭一朗, 営業秘密をめぐる刑事上の保護について, 法律時報 86卷 10号, 2014, 52-53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한다.

[(일본) 영업비밀 침해죄]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기 등 행위(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 조에서는 같다) 또는 관리침해행위(재물의 절취, 시설에의 침입, 부정액세스행위(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28호)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정액세스행위를 말한다). 기타 보유자의 관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 조에서는 같다)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2. 사기 등 행위 또는 관리침해행위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
3.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어긋나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 가.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문서, 도면 또는 기록매체를 말한다. 이하 동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을 횡령한 것
 - 나.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에 대해서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에 대해서 그 복제를 한 것
 - 다.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에 있어서 소거해야 할 것을 소거하지 않고 동시에 해당 기재 또는 기록을 소거한 것처럼 가장한 것
4.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반하여 전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
5.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임원(이사, 이사, 집행역,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감사 또는 감사역 또는 이들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또는 종업원이며,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반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전 호의 자를 제외한다)
6.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에 있어서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재직 중에 그 영업비밀의 관리 관한 임무에 반하여 그 영업비밀의 개시 신청을 하거나 그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개시에 대하여 청탁을 받고, 그 영업비밀을 그 직에서

물러난 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7.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호 또는 전 3호의 죄 또는 제3항 제2호의 죄(제2호 및 전 3호의 죄에 해당되는 개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개시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
8.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전 호까지의 죄 또는 제3항 제2호의 죄(제2호 및 제4호부터 전 호까지의 죄에 해당한 개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개시가 개재한 것을 알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
9. 부정한 목적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제3호 또는 제4호부터 전 호까지 또는 제3항 제3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기술상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 이하 동 호 및 차호 제1항 제2호에서 '위법사용행위'라 한다)에 의해 생긴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개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자(해당 물건이 위법사용행위에 의해 생긴 물건인 것을 모르고 양수, 해당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개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한 자를 제외한다)

2) 국외 부정사용 목적의 양도에 대한 가중 및 법인처벌 강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 향상을 위해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 영업비밀침해죄의 벌금형 상한액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해외유출의 경우 일본 산업 경쟁력 등에 대한 악영향이 다른 사안보다 크므로 이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기 위하여 해외유출의 경우 더욱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즉, 부정경쟁행위만 3억 엔으로 그대로 둔 반면에,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국내유출은 5억 엔, 해외유출은 10억 엔으로 벌금을 인상하였다.²⁴⁶⁾

[(일본) 2016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

구	개정 전	2016년 개정
---	------	----------

246) 제21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일본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죄를 저지른 자
2. 상대방에 일본 국외에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죄에 해당되는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이들의 죄에 해당하는 개시를 한 자
3.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일본 국외에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죄에 해당되는 사용을 한 자

분		국내 유출	국외 유출
개 인	천만 엔(제21조 제1항)	2천만 엔(제21조 제1항)	3천만 엔(제21조 제3항)
법 인	3억 엔(제22조 제1항)	5억 엔(제22조 제1항 제2호)	10억 엔(제22조 제1항 제2호)

※ 출처 : 특허청, “세계는 지금, 영업비밀 유출과 전쟁 중”, 2016.5.25.자 보도자료 3면.

3) 국외법 처벌 확대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본 내에서 관리된 영업비밀의 국외에서의 “사용, 개시” 행위만이 국외법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제21조 제4항).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 국내 사업자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영업비밀을 저장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영득한다고 해도 국외의 범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6년 개정법에는 제21조 제6항을 신설하여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행하는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관해서 일본 국외에서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²⁴⁷⁾

3) 몰수규정 도입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도 그 침해 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이 벌금 또는 기업의 손해액을 상회한다면 침해행위의 억제력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에 의해서 얻은 범죄 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등의 근거를 신설(제21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하고, 몰수, 추징 등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도 2016년 개정법에서 도입하였다.²⁴⁸⁾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몰

247) 제21조(벌칙) ⑥ 제1항 각호(제9호를 제외한다),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4항(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는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일본 국외에서 이들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적용한다.

248) 제21조(벌칙) ⑩ 다음의 재산은 이것을 몰수할 수 있다.

1.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기거나 해당 범죄행위에 의해 얻은 재산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

2. 전 호의 재산의 과실로 얻은 재산, 동 호의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의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동 호의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근거하여 얻은 재산

⑪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36호. 이하 ‘조직적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4조 중 ‘전조 제1항 각호 또는 제4항 각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0항 각호’로 대체한다.

⑫ 제10항 각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의 성질, 그 사용 상황, 해당 재산에 관한

수 규정이 없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 제 36조 제4항은 몰수, 추징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⁴⁹⁾

4) 미수 처벌규정 도입 및 비친고죄화

최근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정보 절취에서 기업이 큰 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대하고, 기술이 현저하게 고도화하고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즉각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쉬우므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착수 단계도 처벌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개정법에서는 사용·공개 등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²⁵⁰⁾ 개정 전 일본법은 영업비밀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고객정보 유출·공동개발에 의한 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비밀 보유자와 유출 피해자가 반드시 같지만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익적 관점에서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2016년 개정법에서는 친고죄 대상에서 영업비밀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하였다.²⁵¹⁾ 미수범 처벌규정과 비친고죄화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 규정한 바 있다.

(3) 미국

1)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TSA)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 이하 ‘UTSA’이라 한다)은 영업비밀에 관해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보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모델법이며, 각 주 별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주에서 채택하여야 한다.²⁵²⁾ 현재 UTSA는 매사추세츠 주 및 뉴욕 주를 제외한 미국 각 주에서 채택되어 있다. 매사추세츠 주 및 뉴욕 주에서는 UTSA를 채용하지 않고 여전히 주의 보통법(불법행위)에 의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UTSA는

범인 이외의 자의 권리의 유무 그 외 사정으로 이것을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 추징할 수 있다.

249) 제36조(벌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50) 제21조(벌칙) ④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전 항 제1호(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

251) 조용순, 앞의 논문(주 19), 26면.

252) Jessica Glatzer Mason, Texas Uniform Trade Secrets Act signed into law, becomes effective September 1, 2013, Lexology (May 8, 2013), Retrieved July 10, 2018(전용태, 미국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현황에 대한 실무적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3호, 2018, 13면에서 재인용).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법 차원의 영업비밀 보호는 민사적 구제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²⁵³⁾

2) 경제스파이법(EEA)

연방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66: 이하, ‘EEA’라고 한다)은 1996년에 1980년대 초의 IBM 소프트웨어의 절도사건 발생 이후 미소 냉전구조에서 군사기술 정보를 둘러싼 간첩사건의 증가라는 배경 아래 민사구제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등에 관하여 형사적인 면을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연방법이다.²⁵⁴⁾ 즉, 1996년 미국 의회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위하여 EEA를 제정해 미국 연방형사법(18 U.S.C.) 제90장에 편입하였으며, 이로써 영업비밀 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EEA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몰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와 ‘영업비밀 도용(theft of trade secrets)’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 등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인 ‘경제스파이 행위’를 ‘영업비밀 도용행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 경제스파이 행위와 영업비밀 도용 행위 비교]

구분	적용대상	처벌
경제스파이 행위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외국 정부, 외국 기업 등에 이익을 제공한 자	(개인)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단체) 1,000만 달러 또는 침해된 영업비밀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 도용행위	주(州)간 또는 국제 통상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아닌 자에게	(개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 또는 이득과 손실을 고려한 벌금 (단체)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관

253) 김혜정,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심층분석 보고서, 2016, 3면.

254) 전용태, 앞의 논문(주 27), 15면.

	이익을 제공한 자	런된 재산이나 이득 몰수
--	-----------	---------------

※ 출처 : 김혜정,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6면.

[(미국) 경제스파이법]

제1831조(경제스파이행위)

- (a) 자신의 행위가 외국 정부, 외국 기관 또는 외국 요원(agent)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도하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5,000,000불 이하의 벌금형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되 두 형을 병과할 수 있다.
- (1) 절취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소지하거나, 가지고 가거나, 은닉하거나, 사기, 속임수 또는 기만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2)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비밀을, 복사 또는 복제하거나, 스캔치 또는 그리거나(draw), 사진화 하거나(phograph), 다운로드받거나, 업로드하거나, 변경하거나, 파괴하거나, 사진복사하거나(photocopy), 모사하거나(replicate), 전송하거나, 배달하거나(deliver), 보내거나(send), 편지로 보내거나, 통신하거나, 전하는(convey) 행위;
 - (3) 해당 영업비밀이 절취되었거나, 정당한 승인을 받지 않고 확보(appropriate), 취득(obtain) 또는 입수된(converted) 것을 알면서도 해당 영업비밀을 받거나,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4) 위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침해행위를 범하려고 시도한 행위;
 - (5) 위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침해행위를 범하려고 1명 이상의 사람들과 모의한 행위로서, 위 모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위의 1명 이상의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제1832조(영업비밀의 도용)

- (a) 주 사이에서(interstate) 또는 외국과의 교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입수할 의도로, 영업비밀 보유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해당 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5,000,000 달러와 해당 영업비밀의 가치의 3배 중 더 큰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되, 두형을 병과할 수 있다.
- (1) 절취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소지하거나, 가지고 가거나, 은닉하거나, 사기, 속임수 또는 기만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2)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비밀을, 복사 또는 복제하거나, 스캔치 또는 그리거나(draw), 사진화 하거나(phograph), 다운로드받거나, 업로드하거나, 변경하거나, 파괴하거나, 사진복사하거나(photocopy), 모사하거나(replicate), 전송하거나, 배달하거나(deliver), 보내거나(send), 편지로 보내거나, 통신하거나, 전하는(convey) 행위;

- (3) 해당 영업비밀이 절취되었거나, 정당한 승인을 받지 않고 확보(appropriate), 취득(obtain) 또는 입수된(converted) 것을 알면서도 해당 영업비밀을 받거나,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4) 위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침해행위를 범하려고 시도한 행위;
- (5) 위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침해행위를 범하려고 1명 이상의 사람들과 모의한 행위로서, 위 모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위의 1명 이상의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3) 영업비밀보호법(DTSA)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이하 ‘DTSA’라고 한다)이 시행되었다. DTSA는 미국 연방형사법(US Code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제90장²⁵⁵⁾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즉, EEA)을 수정, 보완, 추가하고 있다. DTSA 제정으로 인해, 그동안 주 법에 의해서만 민사상 보호된 영업비밀이 연방법에 의해서도 민사상 보호되는 것으로 인정된 점에 그 의의가 있다.²⁵⁶⁾ DTSA가 주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비밀 보유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래와 같이 각 주의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DTSA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EEA상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두 가지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영업비밀 도용(theft of trade secrets)’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나,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 행위는 DTSA에 의하여 개정되지 않았다.

[(미국) DTSA상 영업비밀 도용행위의 개정 전후 비교]

255) 18 U.S. Code Chapter 90 - Protection of trade secrets) (§§ 1831- 1839).

256) Nineveh Alkhas, “The Notice Provision of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What Employers Must Do Now,” the National Law Review (2016)(전용태, 앞의 논문(주 27), 16면에서 재 인용).

개정 전	개정 후
영업비밀 도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영업비밀 도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 500만 달러 또는 침해된 영업비밀로 취득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 영업비밀로 취득한 이익의 산정에는 침해한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할 수 있었던 연구 및 디자인 비용과 해당 영업비밀을 재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

※ 출처 : 김혜정,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7면.

(4) 유럽연합

1)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2016년 6월 8일, 「유럽 영업비밀 지침(Directive 2016/943, EU Trade Secrets Directive)」²⁵⁷⁾을 채택하였고, 2016년 7월 5일 시행되었다.²⁵⁸⁾ 그동안 EU 회원국 간 영업비밀에 대한 법제가 미비하여 일부 회원국(네덜란드 등)은 영업 비밀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으며 법률이 있는 국가 간에도 손해배상 등 상이한 집행수단으로 효과적인 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²⁵⁹⁾ 그러나 동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동일한 영업비밀의 정의(definition)와 모든 유럽기업들은 기업스파이(corporate espionage)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257) 원문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6L0943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6L0943>에서 확인 가능함(2019.5.22. 최종접속).

258) 전체 4개의 장(Chapter), 21개의 조문 및 40개의 입법사유로 구성된 유럽 영업비밀지침 제1장은 유럽영업비밀지침의 객체와 범위(subject matter and scope)로 제1조와 제2조가 이에 해당하고, 제2장은 영업 비밀의 획득, 사용 및 공개(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에 관한 장으로 제3조부터 제5조까지가 이에 속하며, 제3장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치, 소송절차 및 구제방법(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에 관한 장으로 제6조 내지 15조까지이고, 제4장은 제재, 보고 및 최종 규정(sanctions, reporting and final provisions)에 관한 장으로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259) 제정배경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지영, 유럽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통일화를 위한 최신동향, 산업재산권 제53호, 2017, 431면 이하 참고”.

2) 구제수단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치, 소송절차 및 구제조치는 유럽영업비밀 지침 제3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지침에서는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치, 소송절차 및 구제조치를 각 회원국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치, 소송절차 및 구제조치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과다해서는 안 되며, 불합리하게 시간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고, 효과적이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들 조치, 소송절차 및 구제조치는 그 행사가 적절해야 하고, 유럽 내수시장에서 합법적 거래에 대한 장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들의 남용에 대하여 안전장치(safeguards)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불법 획득,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제소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원고가 남용해서 또는 악의로 제소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회원국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법규에 따라 제공된 적절한 대책을 관할 사법기관이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이 중 피고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원고에게 제재를 부과하거나, 이 지침 제15조(법원 판결의 공고)²⁶⁰⁾에 규정된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의 공시를 명령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²⁶¹⁾

한편, 각 회원국은 유럽 영업비밀지침에서 규정하는 조치, 소송절차 및 구제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6년 이하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 규칙에는 제척기간의 시작 시기, 적용

260) Article 15 Pub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legal proceedings instituted for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and at the expense of the infringer,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decision, including publishing it in full or in part.

261) Article 7 Proportionality and abuse of process

1.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shall be applied in a manner that:

(a) is proportionate;

(b) avoids the creation of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in the internal market; and

(c) provides for safeguards against their abuse.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apply appropriate measures as provided for in national law, where an application concern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s manifestly unfounded and the applicant is found to have initiated the legal proceedings abusively or in bad faith. Such measures may, as appropriate, include awarding damages to the respondent, imposing sanctions on the applicant or ordering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a decis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15.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measures a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are dealt with in separate legal proceedings.

기간, 중단 또는 중지사유를 포함해야 한다.²⁶²⁾

(5) 중국

1)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

중국의 반부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은 1993년 제정(5장 33 조문)된 이래 24년만인 2017년 11월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성, 가치성을 가지고,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이어야 한다. 반부정당경쟁법은 ‘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영업비밀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구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가치성’ 대신에 ‘경제적 이익 및 실용성’을 요구하였다. 경제적 이익 및 실용성에 대해 본 조항을 해석하면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각적인 실행가능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구법의 해석대로 풀이하면 경영정보 등 어떠한 정보도 실제로 활용되기 전에는 영업비밀로 확정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2010년 이후 중국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창의 산업이 발전하는데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에 대하여 즉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²⁶³⁾ 또한 실무적으로도 ‘경제적 이익 및 실용성’을 포괄하여 하나의 ‘가치성’ 요건으로 보고 있었으므로,²⁶⁴⁾ 이를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가치성’이라는 개념으로 수정하였다. 즉, 영업비밀의 가치성은 그 영업비밀이 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잠재적으로 영리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²⁶⁵⁾ 예를 들어 실패한 경영 또는 실패한 방안도 적

262) Article 8 Limitation period

1. Member Stat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lay down rules on the limitation periods applicable to substantive claims and a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The rule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determine when the limitation period begins to run, the du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an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limitation period is interrupted or suspended.

2. The du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shall not exceed 6 years.

263) 袁博, 反不正当竞争法(修订草案)》三大亮点, 中国工商报, 2017.

264) 孔祥俊(编者),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司法解释理解与适用, 中国法制出版社, 2012, 257页.

265) 袁荷刚, 反思与重构: 我国商业秘密立法之完善, 法学杂志2012年 第1期, 北京市法学会, 2012, 152

극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사후 연구개발 원가를 절감하게 하고, 기타 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보호할만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것이므로 명시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²⁶⁶⁾ 또한 제9조 제2항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주체를 경영자에서 경영자 및 전·현직 직원으로 확대하였다. 실제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전·현직 직원이 고용계약상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해행위자에 전·현직 직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중국 공산당, 민주당파, 단체, 정계 등의 대표로 구성된 중국인 민정치협상회의(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상임위원회에서 영업비밀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⁶⁷⁾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혁신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당경쟁법과 별도로 영업비밀보호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즉, 현재 영업비밀보호는 반부정당경쟁법, 형법, 노동법, 계약법, 민사소송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따라 2019년 4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제13기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상표법(商标法)과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업비밀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즉,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수정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구체화하였는데, 제9조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적 침투’ 방법을 추가하였고, 제9조 제2항에 제1항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인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행정책임도 강화하여 제21조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과태료 처분을 10만 위안~100만 위안,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규정하여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높였다.

页.

266) 陈丽苹, 与知识产权有关的不正当竞争行为类型研究 - 以我国反不正当竞争法的修改为视角 -, 法学杂志第8期, 2016, 68页.

267) 文汇报, 近年商业秘密纠纷高发, 委员建议制定商业秘密法, 保障核心技术机密,

<https://baijiahao.baidu.com/s?id=1627500904301607624&wfr=spider&for=pc>(2019.03.09. 최종접속).

중국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형태는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²⁶⁸⁾ 첫째, 절도, 유혹,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둘째,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개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것, 셋째, 계약에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의 보호 요구에 반해서 자기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개시, 사용 또는 타인에 의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3가지 위법행위를 알고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개시하는 것 등이다.

2) 형사적 구제수단

반부정당경쟁법 제4장에서는 침해구제를 민사, 형사, 행정구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중 제7절 지식재산권침해죄 제219조 영업비밀침해의 죄가 적용된다. 중국 형법 제219조에서 처벌 가능한 행위유형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침해행위가 보유자에게 중대한 손해(serious losses) 또는 매우 심각한 결과(extremely serious consequences)를 초래하여야 한다. 개정 형법 제219조에 위반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 매우 심각한 손해를 야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일정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중국에서는 형사제재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형사책임은 악

268) 第二百一十九条 【侵犯商业秘密罪】有下列侵犯商业秘密 行为之一，给商业秘密的权利人造成重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造成特别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一）以盗窃、利诱、胁迫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的；（二）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密的；（三）违反约定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的。明知或者应知前款所列行为，获取、使用或者披露他人的商业秘密的，以侵犯商业秘密论。本条所称商业秘密，是指不为公众所知悉，能为权利人带来经济利益，具有实用性并经权利人采取保密措施的技术信息和经营信息。本条所称权利人，是指商业秘密的所有人和经商业秘密所有人许可的商业秘密使用人。
(제219조 다음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의 권리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구역(拘役: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단기징역. 병과주의의 경우 1년까지 연장 가능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절도, 회유,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한 행위.
(2) 1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가한 행위.
(3) 약정 위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요구를 위반하고 경영자가 알게 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가한 행위.
앞에서 나열한 행위임을 명백히 알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면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판단한다.
본 조항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며 실용성이 있고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본 조항의 권리자란 영업비밀의 보유자와 영업비밀 보유자의 허가를 얻은 영업비밀 사용자이다.).

질적인 침해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업비밀의 개발에 공헌한 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 책임만이 문제될 뿐이고, 영업비밀 개발에의 공헌을 이유로 형평의 관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형사벌 적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 형사벌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⁶⁹⁾

기타 중국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는 민·형사적 구제수단 이외에 행정적 구제가 가능하다. 2018년 4월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전까지 시장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여 반부정당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던 ‘국가공상관리총국(SAIC)’가 폐지되고, 시장질서의 보호 및 규범화 업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으로 이관된다. 개정법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였으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법행위의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감경하는 규정도 추가하였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조문	과태료 부과 기준
혼동행위	제18조	-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의 과태료
상업적 뇌물	제19조	- 10만 위안 ~ 300만 위안
허위 광고	제20조	- 20만 위안 ~ 100만 위안 -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0만 위안~ 200만 위안
영업비밀 침해	제21조	- 10만 위안 ~ 50만 위안 -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300만 위안
부당한 경품	제22조	- 5만 위안 ~ 50만 위안

269) 김경찬·정진수·정군남,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51면.

상업신용훼손	제23조	- 10만 위안 ~ 50만 위안 -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300만 위안
인터넷 서비스 교란행위	제24조	- 10만 위안 ~ 50만 위안 -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300만 위안
감독기관의 조사 방해	제28조	- 개인은 5천 이하 - 법인은 5만 위안 이하

(6) 정리 및 소결

이상 한국, 미국, 일본, EU의 영업비밀에 관한 국가별 주요 법령을 검토하였다. 국가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의 영업비밀 처벌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형의 종류에 있어 미국이나 일본이 징역형, 벌금형 뿐만 아니라 몰수형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몰수형은 부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영업비밀 유사 법률의 처벌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의 종류에 몰수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정액형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현재 벌금형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영업비밀에 관한 국가별 주요 법령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근거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영업비밀보호법(D TSA) 제1831조, 제1834조, 제189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벌칙)	반부정당경쟁법 제31조, 형법 제219조	유럽 영업비밀지침

침해 태양	별도 규정	경제스파이행위 영업비밀도용행위	별도 규정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 중대한 손해, 매우 심각한 결과 초래	규정 없음
위법 성	고의범, 목적범	고의범, 목적범	고의범, 목적범	고의범	
刑의 종류	징역, 벌금	징역, 벌금, 몰수	징역, 벌금, 몰수	징역, 벌금	
미수	처벌	처벌	처벌	-	
예비, 음모	처벌	처벌	-	-	

※ 한국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4. 시사점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는 반드시 국가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기술유출을 입은 국가나 기업의 피해와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으로 일정한 공동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영업비밀 보호는 자국의 기술이나 기업의 발전과 관련한 실정과 그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고려하여 하여 긴밀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의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민사적 구제가 먼저 우선해야 하고 형법의 일반적 임무와 같이 형법적 보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침해 행위유형에 대해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현행 재산형(벌금, 몰수) 규정의 타당성 검토

1) 몰수 규정 신설의 검토

가. 형법상 몰수의 의의

형법상 재산형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형법은 벌금, 과료, 몰수의 3종의 재산형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몰수(Einziehung)는 범죄 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다.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이다. 몰수의 종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고,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한다(형법 제48조). 따라서 몰수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필요적 몰수로는 재물에 관한 죄에 있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들 수 있다(형법 제134조).

이러한 몰수의 본질은 범죄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범인이 범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이다.²⁷⁰⁾ 몰수의 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다. 몰수의 요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다.

나. 지식재산 관련 법률과의 비교

일반적으로 지식재산 범죄는 광의의 경제범죄 개념에 포함되지만 전통적 의미의 경제범죄가 기업범죄와 금융·증권범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에 반해 지식재산 범죄는 행위 태양, 수법, 침해법익 등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경제범죄와는 차이가 있어 독자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²⁷¹⁾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그 침해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이 벌금

270) 몰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다수설은 형법이 이를 재산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2008, 571면).

271) 양형위원회,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12, 2면.

또는 피해 기업의 손해액을 상회한다면 침해행위의 억제력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몰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없는 규정으로, 유사 국내 법률인 산업기술보호법에는 몰수 규정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산권법 중 특허법(제231조),²⁷²⁾ 디자인보호법(제228조),²⁷³⁾ 상표법(제236조)²⁷⁴⁾은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용신안법(제51조)²⁷⁵⁾의 경우 임의적 몰수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제36조 제4항)²⁷⁶⁾은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사범에 대한 몰수의 효과 등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검토한 후, 몰수 규정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²⁷⁷⁾

2) 벌금형의 타당성 검토

가. 형법상 벌금의 의의

형법상 벌금형은 재산형 중 하나이다. 벌금형(Geldstrafe)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부담케 하는 데 그치며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몰수와 구별된다.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이를 총액벌금제도라

272) 제231조(몰수 등) 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3) 제228조(몰수 등)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4)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5) 제51조(몰수 등) ①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6) 제36조(벌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77) 몰수 규정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로는 조용순, 앞의 논문(주 19) 참고.

고 한다. 벌금형의 양정에 관하여는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형에 관한 일반규정(제51조)이 적용될 뿐이다.²⁷⁸⁾

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벌금형 규정 검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단서 규정인 '재산상 이득액'의 구체적 산정·입증 어려움 및 이를 엄격하게 산정하는 판례의 입장으로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화되었다는 것이 관계 부처인 특허청의 입장이다.²⁷⁹⁾ 동 규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하기 위하여 2004년 도입하였으나,²⁸⁰⁾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이 어렵고 단서 조항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벌금형 적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5억 원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이 되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시 벌금형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통해 재산상 이득액 규정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판례 분석을 통해 동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벌금액의 상한 금액을 정액화하여 벌금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형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과 산업기술포호법은 벌금형에 대하여 '재산상 이득액'을 단서규정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국, 일본, 중국의 입법례와도 같다.

(2) 예비, 음모범 처벌의 타당성 검토

1) 형법상 예비, 음모범의 의의

형법상 예비(Vorbereitung)란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

278)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279)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보고, 2015.

280) 법률 제7095호, 2004. 1. 20., 일부개정.

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예비는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지 않고 범죄 실행을 위한 조건을 실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예비는 단순한 행위계획을 초과하여 의도한 행위를 객관화할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법은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28조)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와 그 행위 또는 행위자의 위험성 때문에 미리 형벌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형사정책적 근거에서 예비를 처벌할 수 있다.²⁸¹⁾

한편, 형법상 음모란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단순한 범죄의사의 표명이나 교환만으로는 음모라고 할 수 없다. 음모도 실행의 착수 이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예비와 동일하며, 범죄수행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예비와 차이가 없다.²⁸²⁾ 형법이 예비와 함께 음모를 처벌하여 같이 취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판례의 견해이다.²⁸³⁾

우리 형법상 예비, 음모의 처벌 규정은 각칙 규정에 내란의 죄(제90조), 외환의 죄(제101조), 폭발물에 관한 죄(제120조),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9조), 방화와 실화의 죄(제175조),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83조), 교통방해의 죄(제191조), 음용수에 관한 죄(제197조), 통화에 관한 죄(제213조), 유가증권, 유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24조), 살인의 죄(제255조),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96조), 절도와 강도의 죄(제34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예비, 음모범 처벌규정 신설이유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18조의3).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예비, 음모범 처벌규정은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예비, 음모범 처벌규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0일 신설되었다.²⁸⁴⁾ 영업비밀 특성상 예비 또는 음모행위에 의하

281) 이재상, 앞의 책(주 57), 407면.

282) 이재상, 앞의 책(주 57), 408면.

283)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여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와 그 행위 또는 행위자의 위험성 때문에 미리 형벌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식재산권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는 예비, 음모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반면, 유사 국내 법률인 산업기술보호법에도 예비, 음모죄가 규정되어 있다(제37조).²⁸⁵⁾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예비 또는 음모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근거에 따라 예비, 음모죄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형법에서 이른바 경제범죄에 있어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3) 형사상 침해행위 유형의 재정비 방안

1) 민사상 침해행위 유형과 형사상 침해행위 유형의 균형의 관점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은 민사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정의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의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물론 법을 위반한 행위를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일정한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유형의 행위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그보다 낮은 유형의 행위는 과태료 등 보다 가벼운 제재를 하거나 민사상 책임만을 부담시키는 것이 법의 기본원리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의 범죄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태양보다 더 넓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사이의 균형의 관점에서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형사상 침해행위의 침해행위의 유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태양은 민사상 침해행위의

284) 법률 제7095호, 2004. 1. 20., 일부개정.

285) 제37조(예비·음모)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양보다 그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 하다.

2) 민사상 침해행위 유형과 형사상 침해행위 유형의 통일화 관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과 제18조의 영업비밀 침해죄의 행위 유형을 통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경우 제14조에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유사한 산업기술유출행위를 제1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출행위가 그대로 제36조의 벌칙적용에 있어 구성요건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해 본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일부를 벌칙에 있어서 구성요건으로 다시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을 재편하는 것이 행위유형에 대한 해석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산업스파이 처벌규정의 신설 검토

1. 개관

산업스파이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스파이에 대한 명확하고도 효율적인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 산업스파이의 처벌은 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동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유형을 지정하고, 각 산업스파이 행위를 규정 및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산업전반으로 확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대상 기술 일부로 제한되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비해 넓은 영역을 보호할 수 있지만, 보호 대상이 불분명하고 처벌규정이 비교적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산업스파이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에 대한 교란행위로서 산업스파이의 행위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처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현행법상 산업스파이의 처벌

가. 산업기술보호법

1) 의의와 보호의 대상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불법해외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은 처벌대상을 민간 기업의 비밀누설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는 어려웠다.²⁸⁶⁾ 또한,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여 있어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²⁸⁷⁾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산업기술’이다. 이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

286) 법률 제7289호 부정경쟁방지법(2005) 제18조 참조.

287)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및 법률 제8602호 산업기술보호법(2007) 제정이유 참조.

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및 인증하는 기술이다.²⁸⁸⁾ 구체적으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인증된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이 해당된다.²⁸⁹⁾

이때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²⁹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지정된다.²⁹¹⁾

2) 산업스파이 행위의 규정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스파이 행위는 대상과 태양에 의해 구분된다. 대상은 크게 국가핵심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산업기술로 구분된다. 양자의 차이는 후술할 처벌의 정도에 있다. 한편 산업스파이 행위의 태양은 제14조에 의해 9가지의 유형으로 제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취득 및 공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하는 행위로서,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공개에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포함된다.²⁹²⁾

② 비밀유지의무자의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²⁹³⁾ 및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288)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289)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 참조.

290)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291)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참조.

292)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293) 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 대상기관의 임직원,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구체적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²⁹⁴⁾

③ 악의의 취득, 사용 및 공개

산업기술보호법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²⁹⁵⁾

④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 사용 및 공개

산업기술보호법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²⁹⁶⁾

⑤ 미승인 또는 부정한 방법의 승인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²⁹⁷⁾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²⁹⁸⁾

⑥ 외국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한 부정행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²⁹⁹⁾ 및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의

대상은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참조.
294)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295)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호.
296)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4호.
297)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1항.
298)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5호.
299)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호.

사전 신고 또는 인수합병 등의 진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³⁰⁰⁾.

⑦ 산업기술자료 등의 부정한 소유 또는 사용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³⁰¹⁾

⑧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명령 미이행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³⁰²⁾

⑨ 목적 외의 정보 사용 및 공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³⁰³⁾

3) 산업스파이 행위의 처벌

산업스파이 행위의 처벌은 제36조 이하에서 규정된다. 한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제38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 단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00)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의2호.

301)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의3호.

302)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7호.

303)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8호.

①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의 병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 및 공개하거나³⁰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비밀유지의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 사용 및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³⁰⁵⁾ 및 이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취득한 후에 대상 행위의 개입사실을 알면서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³⁰⁶⁾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³⁰⁷⁾

②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제14조 제4호)를 제외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³⁰⁸⁾ 미수범도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³⁰⁹⁾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그 외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제14조 제4호), 외국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제14조 제6호 및 제6의2호) 및 목적 외의 정보 사용 및 공개(제14조 제8호)는 제외한다.³¹⁰⁾ 미수범도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³¹¹⁾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제14조 제4호)와 목적 외의 정보 사용 및 공개(제14조 제8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³¹²⁾ 징역형

304)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305)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306)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호.

307)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7항.

308)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7항.

309)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7항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8항.

310)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311)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7항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8항.

312)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

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³¹³⁾.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 및 공개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비밀유지의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 사용 및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취득한 후에 대상 행위의 개입사실을 알면서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³¹⁴⁾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예비와 음모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³¹⁵⁾

⑤ 몰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³¹⁶⁾

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³¹⁷⁾

⑦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산업기술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징수한다.³¹⁸⁾

나. 부정경쟁방지법

1) 의의와 보호의 대상

313)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8항.

314)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부터 제4호.

315) 산업기술보호법 제37조.

316)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5항.

317)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318) 산업기술보호법 제39조.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및 영업비밀 침해의 방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부정경쟁행위는 제2조 제1호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나, 산업스파이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된다.³¹⁹⁾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산업스파이 규율은 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견지에서 이뤄진다.³²⁰⁾

2) 산업스파이 행위의 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크게 6가지의 유형으로 제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부정취득행위 및 부정취득영업비밀의 사용·공개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³²¹⁾ 이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②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³²²⁾

③ 취득 후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³²³⁾

④ 비밀유지의무자의 악의적 사용·공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319)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320)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321)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3호 가목.

322)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3호 나목.

323)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3호 다목.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³²⁴⁾

⑤ 악의적으로 사용·공개된 영업비밀의 선의에 의한 재취득 및 사용·공개
영업비밀이 비밀유지의무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³²⁵⁾

⑥ 취득 후의 악의적으로 사용·공개된 영업비밀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³²⁶⁾

3) 산업스파이 행위의 처벌

산업스파이 행위의 처벌규정은 제18조에 마련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³²⁷⁾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누설, 지정장소 외로의 무단유출 및 영업비밀 삭제·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유하거나,³²⁸⁾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³²⁹⁾ 또는 이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하지 못하게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³³⁰⁾ 한편,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324)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3호 라목.

325)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3호 마목.

326)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3호 바목.

327)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5항.

328)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329)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330)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벌금에 처한다.³³¹⁾

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위에서 살펴본 ①과 같은 행위에 있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아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³³²⁾ 이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³³³⁾

4) 산업스파이 행위의 단속

특허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특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받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제도로써³³⁴⁾,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에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중,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법상의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범죄, 부정경쟁법상 상품형태 모방 등의 관한 범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누설에 관한 범죄 등을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사법경찰을 규정한다.³³⁵⁾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수사하거나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다. 현행법상 산업스파이 처벌의 한계

1)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 기술의 좁은 범위

산업기술보호법이 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선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선정·통보에 대하여 지정된다.³³⁶⁾ 한편 산업기술도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지정·고시·인증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제시되는, 산업발전법 등 일부 법령에 의

33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단서.

332)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333)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단서.

33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335)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35의2호.

336)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1항.

한 기술로 범위가 제한된다. 이들 법은 첨단기술, 신기술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술의 일반적 범위를 모두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 물론 제2조 제1호 자목은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지정·고시·인증되는 기술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한 고시에 의해 산업기술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광범위한 기술분야를 실질적으로 모두 포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한된 법령에 의한 지정이라는 한계 외에,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은 기술 외의 산업상 보호가능한 대상을 전제로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산업스파이가 탈취하고자 하는 것이 꼭 기술로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 외에도 각종의 이익을 취할 수 있거나,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등 산업스파이의 ‘먹잇감’이 되는 대상은 광범위하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이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제시되는 것도, 실제 영업에 있어 비밀로 관리해야 할 대상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서는 오직 엄격한 절차에 따른 좁은 기술영역만이 명시적인 보호의 대상에 지정될 수 있을 뿐이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한계

앞서 살펴보듯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별도로 지정·고시·인증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대상의 비밀성, 경제성 및 비밀관리성에 의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다면 기술은 물론, 다른 산업상 가치 있는 각종의 정보 등을 함께 보호할 수 있어 산업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처벌규정 중 외국에서의 사용요건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를 전제로 한다.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사용될 것임을 아는 상태”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되게 할 목적”에 비해 넓은 범위를 규정한다. 이러한 차이는 형량에서도 드러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15년 이하의 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은 3년 이상의 징역 및 15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한다.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비단 외국에서 사용할 것을 아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처벌에 따르면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3) 산업스파이 활동의 단속 한계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의 수사는 정보 수사기관에 의한다.³³⁷⁾ 정보수사기관은 정보에 특화된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스파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스파이의 활동대상과 반경이 넓어지면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 외에 대한 수사와 단속도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의 근거만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영업비밀에까지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상 특허사법경찰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만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누설에 관한 범죄 등을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³³⁸⁾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것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외국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침해행위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사·단속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 배분하여 산업스파이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3. 미국 경제스파이법의 검토

가. 미국법상 산업스파이 처벌의 일반적 검토

산업스파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취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을 살펴본다. 미국 연방법상 산업스파이의 처벌은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와 영업비밀보호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에 따른다. EEA는 1996년 제정되어 종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만으로는 보호하기 힘든 국가적 산업스파이에 대항하여 영업비밀의 도용을 처벌함과 함께, 외국 정부 등에 대

337)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 참조.

338)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35의2호.

한 “경제 스파이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³³⁹⁾ 한편 EEA에 더해 2016년 발효된 DTSA의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은 EEA와 같으나, 민사상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연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³⁴⁰⁾

원칙적으로 형사범죄는 주법의 관할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해서도 각 주의 형법이 우선 적용된다.³⁴¹⁾ 미국의 각 주는 영업비밀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는데, 관련하여 미국의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TSA, Uniform Trade Secret Act)은 모델법으로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통일된 규범체계를 제시한다. 다만, UTSA의 효력은 각 주의 채택이 필요하며, 형사적 제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민사적 구제로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영업비밀 침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EEA의 규정상 보호의 대상, 영업비밀 침해의 형태 및 처벌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 경제스파이법을 통한 산업스파이의 처벌

1) 처벌의 대상

EEA는 외국정부(foreign government), 외국의 기관(foreign instrumentality) 및 외국의 대리인(foreign agent)에게 이익이 될 것을 의도하였거나,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을 규정한다.³⁴²⁾

2) 경제스파이법상 처벌행위의 요건

가) 외국 등을 대상으로 할 것

EEA 적용의 관건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외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이다. 외국의 기관은 어떠한 원(agent), 관(bureau), 부처(ministry), component, 기관(institution), 협회(association), 또는 모든 법적, 상업적 또는 기업의 기구(organization), 회사(corporation), 조합(firm) 또는 협의회(entitiy)로서, 실체적으로 외국의 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owned), 조정되거나

339) 심현주·이현희,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36권 제4호, 309면.

340) 심현주·이현희, 상계논문, 310면.

341) 박상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 2011,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113면-114면(“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주법의 대상영역이며,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각 주의 형법 등에 의해 처벌되지만 연방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342) 18 USC § 1839(1).

(controlled), 지원을 받거나(sponsored), 지시를 받거나(commanded), 관리 되거나(managed) 또는 지배당하는(dominated) 모든 형태를 뜻한다. 한편, 외국의 대리인(foreign agent)은 어떠한 officer, 피고용인, proxy, 부하(sevant), delegate 또는 대표자(representative)로서 외국정부를 대표하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³⁴³⁾ 따라서 실질적으로 외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 대리인을 대상으로 한다.

나) 이익이 될 것을 의도하였거나 알았을 것

외국 등에 대하여 이익(will benefit)이 될 것을 의도(intending)하였거나 알았을 것(knowing)이 요구된다. 따라서 침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외국정부 등에게 이익의 발생을 실제로 의도하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다) 영업비밀일 것

(1) 영업비밀의 요건

EEA상 영업비밀의 요건은 비밀관리성 및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에,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처(reasonable measures)를 하여야 한다.³⁴⁴⁾ 아울러 경제적 가치의 여부는 대상 정보가 실제적 혹은 잠재적(actual or potential)인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independant economic value)를 갖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였고(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타인이 정보의 공개 또는 이용(disclosure or use)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by proper means)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상태(readily ascertainable)가 아니어야 한다.³⁴⁵⁾

(2) 영업비밀의 형태

EEA에 따른 영업비밀은 광범위하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경제적(financial), 기업적(business), 과학적(scientific), 기술적(technical), 경제적(economic) 또는 공학적(engineering) 정보로서, 패턴

343) 18 USC § 1839(2).

344) 18 USC § 1839(3)(A).

345) 18 USC § 1839(3)(B).

(patterns), 계획(plans), 편찬물(compilations), 프로그램 장치(program devices), 공식(formulas), 디자인(designs), 시제품(prototypes), 방법(methods), 기예(techniques), 순서(processes), 절차(procedures), 프로그램(program) 또는 코드(codes)이며, 이들은 유체와 무체를 막론하고(tangible or intangible), 그것이 적재되거나(stored), 엮이거나(compiled), 또는 저장된 것(memorialized)이 물리적(physical), 전자적(electronically), 도표적(graphically), 사진적(photographically) 또는 쓰여진(writing) 것을 포함한다.³⁴⁶⁾

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 영업비밀의 절도 등

영업비밀을 훔치거나(steals), 무단으로 전유하거나(takes), 가지고 가거나(carries out), 은폐하거나(conceals), 사기(frauds), 책략(artifice) 또는 기만(deception)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³⁴⁷⁾

(2) 영업비밀의 복제 등

권한 없이 영업비밀을 복사하거나(copies), 복제하거나(duplicates), 스케치하거나(sketches), 그리거나(draws), 사진을 찍거나(photographs), 다운로드하거나(downloads), 업로드하거나(uploads), 변경하거나(alters), 파괴하거나(destroys), 사진본을 만들거나(photocopies), 복제물을 만들거나(replicates), 전송하거나(transmits), 전달하거나(delivers), 발송하거나(sends), 우편으로 발송하거나(mails), 전달하거나(communicates) 또는 수송(convey)하는 행위.³⁴⁸⁾

(3) 악의적인 영업비밀 취급

영업비밀이 도난당했거나 전용, 취득 또는 전환된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수령, 구매 또는 소유하는 행위.³⁴⁹⁾

346) 18 USC § 1839(3).

347) 18 USC § 1831(a)(1).

348) 18 USC § 1831(a)(2).

349) 18 USC § 1831(a)(3).

(4) 절도 등의 미수

위의 행위들을 시도하는 행위.³⁵⁰⁾

(5) 공모에 의한 절도 등

1인 이상의 타인과 공모하여 위의 행위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자 중 1인 이상의 공모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³⁵¹⁾

3) 경제스파이의 처벌

EEA에 따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³⁵²⁾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기관에 대해서는 1000만 달러 또는 연구 및 설계비용과 기타 영업비밀로써 통해 재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침해당한 영업비밀의 3배 가치의 범위 내의 벌금을 처한다.³⁵³⁾

다. 우리법으로의 시사점

EEA는 국가 간에 자행되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업기술과 같은 특정 지정기술이 아닌, 대상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관리성에 주목하고 그 유형을 다양화하여 최대한 많은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산업스파이 자신이 이익을 취하거나, 산업스파이 행위로 인해 피해 기업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넘어, 외국 등에 대하여 이익이 될 것을 의도하였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가담의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4. 시사점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스파이가 외국에서의 단순 사용 가능성 뿐 아니라 사

350) 18 USC § 1831(a)(4).

351) 18 USC § 1831(a)(5).

352) 18 USC § 1831(a).

353) 18 USC § 1831(b).

용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산업스파이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은 산업기술의 지정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일반 산업스파이 처벌에 전부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산업스파이의 활동 대상이 기술로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이 산업기술 그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모든 영업비밀로 확대하는 것도 입법취지에 어긋날 것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관련 조문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규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아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해 적극적으로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미국 EEA와 같이 외국에 대해 이익이 될 것임을 알고 침해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처벌규정이 각 형량에 따라 다양한 처벌 대상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외국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알고 한 행위”를 기존의 조항에 단순히 삽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스파이 행위의 동기로서 외국에서의 사용가능성을 넘어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외국’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EEA와 같이 마련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현행법에서도 ‘외국’의 의미를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는 적어보인다. 아울러 행위의 유형도 EEA와 같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의 각 개념에 어렵지 않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량에 있어서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최소 3년의 징역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기관에 의해 지정된 기술에 대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형량은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산업스파이 행위유형의 처벌대상으로의 포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무를 담당할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법경찰직무법상의 조문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함께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안)
(없음)	(신설) ㉞ 영업비밀의 사용이 외국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산업스파이 행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여러 법령에 걸쳐있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단번에 집중하여 검토·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산업스파이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기에, 우리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현행법상의 개선점을 발견해야 한다. 이 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처벌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함으로써, 산업스파이 행위에 따른 처벌의 유형을 의도에 따라 구분하여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처벌규정을 근거로 하는 특허사법경찰의 수사 및 단속의 범위를 넓혀 산업스파이의 위협으로부터 상시적인 대비를 가능케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차단과 신속한 수사개시를 위하여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려는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1조³⁵⁴⁾에 유사한 규정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³⁵⁵⁾에도 현재 위조상품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동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54)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 정부는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55)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특허법상 간접침해의 형사처벌 규정 신설의 검토

1. 개관

특허권 ‘간접침해’란 직접침해에 대한 유도 또는 기여행위로서 직접침해가 일어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를 말한다. 현행 특허법에서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은 직접침해제도의 보충으로서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다. 간접침해 규정은 직접침해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침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고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침해의 발생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접침해 전 단계의 행위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즉 간접침해의 법리는 직접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특허권을 보호하고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통한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간접침해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입법정책상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 간접침해행위는 그 침해대상의 특허발명이 물건인지방법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의 간접침해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특허법 제127조 제1호), 둘째 유형의 간접침해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127조 제2호).

이러한 특허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형사적 구제수단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특히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직접침해의 미수범도 처벌하지 않음에도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따라서 간접침해행위는 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대법원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³⁵⁶⁾ 반면, 주요 국가의 특허법에 직접침해의 형벌 규정과 간접침해의 형벌규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직접침해의 형벌에 대해 특허법에 규정한 국가들은 많지만, 간접침해의 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 특허법과 브라질 특허법이 있다. 일본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직접침해의 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침해의 형벌은 실용신안법을 제외한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의 지식재산권법에

356)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는 특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에 관한 형벌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표〉특허법상 간접침해의 형벌(형사벌)규정에 관한 국제비교³⁵⁷⁾

국명	[특허법] 직접침해의 형벌규정	[특허법] 간접침해의 형벌규정
미국	특허법 (無) ·상표법(有)	간접침해 규정은 있지만, 간접침해 형벌규정은 없음
일본	직접침해의 형벌규정 ·실용신안법(有) ·의장법(有) ·상표법(有)	간접침해의 형벌규정 있음 ·특허법(有) ·의장법(有) ·상표법(有)
중국	특허법(有§68) 민법전(有§1169) 사법기준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전리권침해 에 관련한 분쟁사건의 시리에 있 어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기준(Ⅱ)]	특허법에는 간접침해 규정 없음
독일	형벌규정 있음(有§142)	간접침해(§10①②③ 및 §140a(2))규 정 있지만, 형벌규정은 없음
프랑스	지적재산법 ·특허(有§L615-14) ·디자인(有§L521-10, 11, 12) ·상표(有§L716-8-9, 9, 10)	지적재산법의 특허에는 간접침해 의 형벌규정 없음
영국	직접침해의 형벌규정 없음	간접침해 규정 있지만(§60②③), 형벌 규정은 없음
인도	직접침해의 형벌규정 없음	간접침해의 형벌규정 없음
브라질	지식재산권법에 직접침해의 형벌 규정 있음 ·특허(有§183, §184) ·디자인(有§187) ·상표(有§189)	지식재산권법에 간접침해의 형벌 규정 있음 ·특허(有§185) ·디자인(有§188) ·상표(有§190)
베트남	직접침해의 형벌규정 없음	간접침해의 형벌규정 없음

357) 日本技術貿易株式会社, 「主要各国における知的財産権侵害事案の 刑罰制度及びその運用に関する調査研究」, 平成28年度知的財産権ワーキンググループ等侵害対策強化事業, 2017. 2 및 熊谷 健一, 「知的財産権と刑事罰」, 特許庁・発明協会アジア太平洋工業所有権センター報告書, 2010; 윤선희 외, 「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제도 개정방안연구」, 특허청정책과제보고서, 2017. 2; 각국 특허법을 바탕으로 필자가 판단한 사항을 정리한 것임.

현재, 기술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부품별로 생산하여 간접침해에 해당함에도 전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서 처벌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 간접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일본의 간접침해 형벌제도

가. 간접침해의 형벌 규정과 도입 배경

1) 산업재산권법의 형벌규정

일본의 지적재산권법 중에서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상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형법규정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일본 산업재산권법의 형벌규정

법치행위	형량(징역, 벌금의 상한)				법인중과(벌금)	
	종전		현행 법규		현행법규	
특허법 특허권침해	§196	5년이하 징역 5백만엔 벌금	§196 (직접침해) §196의 2 (간접침해)	10년이하징역 1천만엔 벌금 5년이하 징역 5백만엔 벌금	§201	3억엔 이하
실용신안법 실용신안권침해	§56	3년이하 징역 3백만엔 벌금	§56 (직접침해) -	5년이하 징역 5백만엔 벌금 -	§61	3억엔 이하
의장법 의장권침해	§69	3년이하 징역 3백만엔 벌금	§69 (직접침해) §69의 2 (간접침해)	10년이하징역 1천만엔 벌금 5년이하 징역 5백만엔 벌금	§74	3억엔 이하
상표법 상표권침해	§78	5년이하 징역 5백만엔	§78 (직접침해) §78의 2 (간접침해)	10년이하징역 1천만엔 벌금 5년이하 징역 5백만엔 벌금	§82	3억엔 이하

		벌금				
--	--	----	--	--	--	--

특허법 및 의장법, 상표법에서 간접침해의 형벌을 5년으로 한 이유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법정형의 최고가 5년을 초과하는 형의 공소시효는 5년, 5년 미만의 형과 벌금형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징역형의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의 특허권 및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계속 생산하여 침해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생산의 행위를 중지하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간접침해의 형벌규정 도입배경

(1) 간접침해제도의 변경

일본 특허청은 종전 우리나라 특허법(제127조)의 간접침해 규정과 같은 일본 특허법 제101조가 있었으나,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지적재산정책부회)는 「네트워크화에 대응한 특허법·상표법 등에 개선방안에 대하여³⁵⁸⁾」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하여 제101조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일본특허청은 간접침해의 인정요건에 있어서 종전의 “전용품의 에만의 요건” 이외에도 “주관적 인식요건”을 도입하고, 동 “주관적 인식요건”을 근거로 당해 특허발명의 전용품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범용품”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101조를 개정하였다. 제101조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 산업구조심의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IT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SW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SW의 개발·유통의 실체에 대응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간접침해 규정(부품, 재료, 장치 등 유체물의 공급을 염두에 두고 제정)만으로는 특허발명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내각부(내각총리대신)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적재산추진계획2005³⁵⁹⁾」 및 「지적재산추진계획2006³⁶⁰⁾」의 제2장(지식재산권의 보호)에는 “1. 지식재산권의

358)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政策部会, 「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した特許法・商標法等の在り方について」, 2001. 12.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housei-s/hoi/h13houkokusho.html>》, 검색일 : 2022. 11. 7.

359) 内閣府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 2005」, 2005. 6. 10.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050926f.pdf>》, 검색일 : 2022. 11. 9.

보호를 강화한다.”, “5. 지식재산권제도를 강화한다.”라는 일본정부의 지식재산보호 정책방안이 수립되었다. 본 정책방안은 법무성, 문무과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상의 합의로 수립되었다. 「지적재산추진계획2006」에는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침해에 관한 형벌(징역)의 상한을 10년으로 한다.”등에 대하여 2005년도까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간접침해 규정 정비의 필요성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심의회 보고서)

(i) 프로그램의 부품(모듈)의 개발·공급·거래를 고려해보면, 프로그램을 복수의 모듈로 나누어 설계하고 각 모듈의 개발을 하도급을 발주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프로그램이 타인의 특허권 침해 제품이 될 경우, 하청업체의 모듈 개발 행위는 프로그램의 부품인 모듈 생산 등으로서 간접침해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그 모듈이 중요한 구성요소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모듈이 전용성(專用性)을 가지는 것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적다고 하는데, 현행 제101조 규정의 “에만의 요건” 및 “일본국내 범용품의 주관적 인식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침해의 구제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ii) 컴퓨터 시스템 제품군 판매·유통을 고려해보면, 컴퓨터 시스템의 제품군을 선택·조합하여 고객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구축된 시스템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축된 시스템의 부품인 제품군의 각 제품(SW)을 공급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하는가. 제품의 특정 조합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세트가 특허권침해시스템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각 제품을 개별적으로 본 경우에는 각각 다른 조합에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간접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구제제도가 필요하다.

한편, 일본 특허청은 내각부(내각총리대신)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 및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정책제언에 따라 직접침해의 징벌규정을 강화하면서 간접침해에 대해서도 벌금 증액 및 간접침해의 형벌제도를 특허법 및 의장법, 상표법

360) 内閣府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 2006」, 2006. 6. 8.

《file:///C:/Users/PC02/Downloads/060609keikaku.pdf》, 검색일 : 2022. 11. 9.

에 도입하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여, 제164회 국회에 제출하여 2006년 6월 1일 통과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침해 사범 중에서 특히 아래의 <표 3>과 같이, 상표권 침해사범이 많은 것을 우려하여, 상표법에 간접침해의 형벌규정을 도입하면서 특허법 및 의장법에 함께 같은 취지로 간접침해의 형벌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산업재산권법상 형벌의 별칙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면서 실용신안법에는 간접침해의 형벌규정을 도입하지 아니하였다. 즉 실용신안법 제56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였지만, 유독 실용신안법에는 간접침해의 형사법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에 대한 이유 등을 검색하여 보았으나 특별히 문언으로 제시된 내용이 없었다. 사건으로는 간접침해의 형벌제도의 도입취지가 단순한 장치나 부품 등의 발명이나 실용신안보다는 IT 등의 정보통신 발명 또는 IT를 활용한 의약품·화학물질 및 그 제조방법 발명에서 하나의 시스템에 복수의 프로세스·프로그램이 구성요소로 특정되고, 그 중에서 각각 또는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특정한 프로세스·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유통·전송하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보고, 이러한 간접침해 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에만 간접침해의 형벌규정을 도입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의 검거현황(2000-2004년)

법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특허법	1	2	3	7	2	2	2	4	0	0
실용법	1	1	1	2	0	0	1	2	0	0
의장법	0	0	7	10	2	3	0	0	1	1
상표법	504	252	417	253	476	287	524	271	910	479
저작권법	304	139	187	82	147	115	229	110	315	159
부경법	19	8	40	17	15	5	15	20	7	1
합계	829	399	655	371	642	412	789	407	1,233	640

(출처) 警察庁, 「平成17年 警察白書」, 文部科學, 「罰則の強化について」, 2005, 재인용.《https://www.mext.go.jp/b_menu/shingi/bunka/gijiroku/010/06082501/009/008.htm》, 검색일 : 2022. 11. 9.

나. 간접침해의 형사벌제도에 대한 일본의 견해

1) 긍정적인 견해

악질적이거나 의도적인 지적재산의 침해에 대해서는 형벌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간접침해의 형벌규정은 필요한 제도다. 특히, 특허법 등의 공업소유권 관계의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침해방법이 악질 교묘해지고, 또 폭력조직이 얹히는 등 형벌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행정 형벌은 적용되지 않는 것에 중대한 존재 의의가 있다고는 하나, 일률적으로 그 활용이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지식재산권침해(간접침해)의 형벌규정은 의의가 있다.³⁶¹⁾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거대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값싼 제품이 수출되어 경제마찰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반제품의 대량 수입도 우려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특허법 등에 간접침해의 형벌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형사벌침해죄의 활용으로 일본 산업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⁶²⁾

2) 부정적인 견해

직접침해의 벌칙규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종래의 학설은 사건처리에 전문적인 기술판단이 요구되는 산업재산권침해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견해다. 또한 범죄의 성립이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³⁶³⁾

특허권 침해의 형벌은 중요한 억제수단이 되고, 그 적절한 집행은 보호강화에 기여하며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특허권침해 범죄는 매년 건수가 많지 않고, 종전부터 직접침해에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형벌이 적용된 사례도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직접침해나 간접침해의 형벌을 상향 한다고 해도 기대할 만큼 많은 효과를 얻을

361) 田中良弘, “産業財産権の保護と罰則規定の役割”, 特許研究, No. 67, 2019, 52頁; 棚町祥吉, “知的財産の保護と刑事罰”, パテント, Vol.56 No.4, 2003, 85頁.

362) 棚町祥吉, “知的財産の保護と刑事罰”, パテント, Vol.56 No.4, 2003, 87-88頁.

363) 中山信弘, 小泉直樹編「新注解特許法(下巻 第2版)」, 青林書院, 2017, 345頁.

수 없으므로, 간접침해의 형벌규정 도입은 무의미하며, 형벌강화가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³⁶⁴⁾

산업재산권 4법에 대해 형사벌의 활용을 활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어려운 문제다. 또한 침해소송 사회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성은 미덕이고 소중히 여기고 싶으며, 특히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고소전의 진흙 시합이 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³⁶⁵⁾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권침해소송사건의 판결 및 항소심 중에서 당해 특허권이 무효로 판단된 것은 36%이다. 특허권은 매우 불안한 권리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권을 근거로 특허권침해(직접침해 및 간접침해)가 제기되어 승소하거나 형사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당해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허권의 직접침해죄 뿐만 아니라 간접침해죄의 적용에 극히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결국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침해죄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³⁶⁶⁾

4. 간접침해 형벌규정의 도입에 관한 시사점

가. 일본의 형벌 규정과 시사점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및 각 고등재판소의 판례집을 보더라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례는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는 특허권 위반사건이 거의 없고, 대부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다. 물론 판례집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식재산 형사사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어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다툼이 없는 벌금 상당의 사건으로서 약식명령(최고액 50만엔)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형벌의 활용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³⁶⁷⁾

364) 清川寛経, 「わが国における知的財産権を巡る動向とその評価(90年代後半以降のプロパテント化の評価 - 特に特許制度について) 」, 済産業研究所, 2006, 12頁.

《<https://www.rieti.go.jp/jp/publications/dp/06j060.pdf>》, 검색일: 2022. 11. 1.

365) 清川寛経, 「わが国における知的財産権を巡る動向とその評価(90年代後半以降のプロパテント化の評価 - 特に特許制度について) 」, 済産業研究所, 2006, 13-14頁.

366) 知的財産研究所, 「特許権等の紛争解決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26年度 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2015, 3, vi-viii頁.

《file:///C:/Users/PC02/Downloads/digidepo_11515282_po_2014_11.pdf》, 검색일: 2022. 11. 5.

367) 知的財産研究所, 「特許権等の紛争解決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26年度 特許庁産業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종전에 직접침해의 형벌규정이 있었음에도 간접침해의 형벌규정을 특허법 및 의장법, 상표법에 도입한 취지는 IT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이 결합된 초연결사회로 진화하고 있고, 그 발전과 진화의 원동력이 기술개발과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제품화·사업화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법에 간접침해의 형벌규정을 도입할 시에는 IT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나의 특허권에는 융복합기술,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 [S]에 복수의 SW [A, B, C]로 구성되는 특허발명이 있을 수 있다. 갑 및 을, 병은 [A제품, B제품, C제품]을 각각 생산하여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자(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이용자(사업자)는 [A, B, C, D, E 제품]을 시스템으로 결합한 “고객관리시스템(SW)”를 완성하여 본인의 사업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허권자는 갑 및 을 병에게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지만, 의도적으로 판매한 후에 사업을 정리(폐업)한다거나 배상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특허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별도로 형사적 구제도 가능하도록 형벌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 IT발명의 간접침해 행위와 형벌 적용



産權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2015, 3.

《file:///C:/Users/PC02/Downloads/digidepo_11515282_po_2014_11.pdf》, 검색일: 2022. 11. 5.

(출처)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政策部会, 「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した特許法・商標法等の在り方について」, 33면을 근거로 재작성.

최근 일본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제6차「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021. 4. 1 - 2026. 3. 31)」을 수립 및 추진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경제안보중요기술(2022. 5. 11. 제정, 「경제안전보장추진법」제7조의 특정중요물자(特定重要物資)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물의 지식재산 권리화, 그 실시(사업화, 상품화)의 혁신(이노베이션)을 통한 경제안보의 촉진을 위해서는 특허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 및 산업계에서는 간접침해의 형벌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우리 특허법상 간접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형벌제도는 민사소송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권리 침해 대책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복수의 구성으로 특정되는 발명의 권리화와 그에 따른 사업화 등의 실시화가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복수의 구성과 그 각각 구성의 개별 실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 문제는 더욱 더 복잡해지고, 일부의 구성요소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실제 간접침해로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예; AI기반 의약품생성모델)은 IT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발명에는 복수의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그 구성요소 각각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데이터의 수집방법 또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구조를 생성한다. 그 데이터구조를 근거로 AI학습(딥러닝학습)하여 최적의 “의약품생성모델(AI기반 의약품생성모델)”이 창출되고, 그 “의약품생성모델(AI기반 의약품생성모델)”에 특정성분의 소재나 물질 등의 데이터를 입력데이터로 하고, 그 입력데이터를 입력하여 최종 의약품(신약, 바이오의약품)을 생성할 수 있는 복수의 구성요소(장치, 물질, 수단, 단계 등)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는 복수의 침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민사구제만으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형사적 구제 수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특허권자 등의 실효적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개발촉진과 특허보호를 통하여 산업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보호와 그 활용(사업화, 제품화)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허법 등에 간접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접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의 권리행사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의 구성요소를 생산하거나 개발하여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명목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표

성	명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청의 위탁받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조직 및 제도에 대한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업무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보호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부연구위원 02-2189-2660, hjshim@kiip.re.kr



A.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조직의 SWOT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A-1. 조직의 강점 및 기회요인

1. 청 내 타 부서 또는 일반 경찰에 비하여 특사경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강점(Strength)과 미래의 기회요인(Opportunity)에 대하여 해당 내용의 동의 정도를 각각 표시해주시시오.

내 용	매우 부동 의	부동 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① 기술·디자인 침해행위에 대한 전문적 대응					
② 일반경찰업무 영역의 전문성을 보충					
③ 수사업무의 전문적 실행					
④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의 방지					
⑤ 지식재산 영역에 대한 전문성 확보					
⑥ 지식재산 전문영역의 확대 가능성					
⑦ 디지털 및 사이버 수사력 강화					
⑧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등과의 업무협력 증대					
⑨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확대 가능성					
⑩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상승					

A-2. 조직의 약점 및 위기요인

2. 청 내 타부서 또는 일반 경찰에 비하여 특사경 조직이 가지고 있는 약점(Weakness) 및 미래 위기요인(Threat)에 대하여 해당 내용의 동의 정도를 각각 표시해주시시오.

내 용	매우 부동 의	부동 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① 청 내 타부서에 비해 과도한 업무부담					
② 위험하고 번거로운 수사활동 기피					
③ 수사업무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④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					
⑤ 업무범위의 명확성 부족					
⑥ 인사상 불이익					
⑦ 유관기관(경찰청, 검찰 등)의 인식부족					
⑧ 국민의 인식부족					
⑨ 특사경 담당자의 사기저하					
⑩ 수사대상자(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등)의 반발					

B. 특사경 조직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특사경 업무를 중심으로 동의 정도를 표시해주시요.

내 용	매우 부동 의	부동 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① 특사경 업무가 도전적이라고 생각한다					
② 특사경 업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③ 업무가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④ 업무에 있어 상당한 자유와 독립성을 가진다					
⑤ 청 내 타부서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하다					
⑥ 특사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높은 편이다					
⑦ 특사경에 대한 청 내의 인식도가 높은 편이다					
⑧ 청 내 타부처와의 업무협력이 잘 되는 편이다					
⑨ 특사경 업무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다					
⑩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조직차원의 노력이 있다					

C. 다음은 귀하의 특사경 업무량 및 내부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특사경 업무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다음 각 업무에 현재 할애되는 시간을 현재 비율과 바람직한 비율로 나누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현재 비율 (%)	바람직한 비율 (%)
① 자료 수집 및 분석 - 권리분석/피의자 제품 특성 등		
② 임의·강제 수사활동 - 고소인,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신문 - 현장조사, 압수수색		
③ 판단 - 무효여부 판단 - 쟁점·법률요건별 침해여부 및 고의성 판단 -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 수사지휘 건의 및 송치서/의견서 작성		
합 계	100	100

2. 귀하가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3년 이상 5년 미만
-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

3. 귀 부서(과, 팀)이 수행하는 특사경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홍보, 언론보도 등)의 활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 특사경 업무에 대한 홍보 내지 인식의 부족이 귀하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D. 다음은 특사경 업무의 지원 및 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업무 수행상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누구의 도움을 자주 받으십니까?

- ① 직속 상관
- ② 동료
- ③ 외부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 ④ 경찰
- ⑤ 검찰
- ⑦ 기타()

2. 법률적 자문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3. 특별사법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한 보상
- 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 ③ 장기근속
- ④ 인력충원
- ⑤ 조직의 확대

E. 다음은 특사경의 업무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특사경으로 임명되기 전 특사경 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 특사경 업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몇 회의 전문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총 -----회

3. 귀하는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기법(디지털 포렌식 등)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4. 귀하는 지식재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주로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 ① 조직 내 상관이나 동료
- ② 전문 서적
- ③ 전문 교육
- ④ 실무 경험

F. 특별사법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 인력, 법제도, 대국민 인식제고 등 전반에 대하여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